

지정통계조사표집

1 9 7 2

006217

머 리 말

이 조사표집은 우리 나라에서 작성되고 있는 각종 통계에 대하여 어떤 통계가 어느 기관에서 어떻게 작성 발표되고 있는가를 집약적으로 수록 소개한 「한국통계조사현황」 보완편 입니다.

한국통계조사현황에서는 각종 통계의 작성방법과 결과 공표내용을 편리하게 볼 수 있도록 해설하여 통계자료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였으나 이들 조사에 사용되는 조사표 양식은 소개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들 각종 통계조사의 조사표를 수집 정리하여 한편의 책에 수록함으로써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이 조사되는가를 알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으나 각종 통계의 조사표 내용이 너무 방대하여 일차적으로 지정통계로 지정된 통계조사 25종의 조사표만을 수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해를 거듭함에 따라 주요일반통계의 조사표도 아울러 수록하여 내용을 보다 충실히 할 것을 다짐합니다.

아무쪼록 이 조사표집이 한국통계조사현황과 더불어 통계의 바른 이용에 널리 도움되기 바랍니다.

1972년 12월 일

경 제 기 획 원 조 사 통 계 국 장 최 선 래

1970년 인구 및 주택센서스 지점 통계 제 1호 및 제 2호

조사표 (가구수)

인구에 관한 사항

이름	가족과의 관계	성별	생년월일	혼인상태	학교		문맹여부
					취학여부	문맹여부	
이름	가족과의 관계	성별	생년월일	혼인상태	취학여부	문맹여부	
이름	가족과의 관계	성별	생년월일	혼인상태	취학여부	문맹여부	
이름	가족과의 관계	성별	생년월일	혼인상태	취학여부	문맹여부	
이름	가족과의 관계	성별	생년월일	혼인상태	취학여부	문맹여부	
이름	가족과의 관계	성별	생년월일	혼인상태	취학여부	문맹여부	
이름	가족과의 관계	성별	생년월일	혼인상태	취학여부	문맹여부	
이름	가족과의 관계	성별	생년월일	혼인상태	취학여부	문맹여부	
이름	가족과의 관계	성별	생년월일	혼인상태	취학여부	문맹여부	
이름	가족과의 관계	성별	생년월일	혼인상태	취학여부	문맹여부	
이름	가족과의 관계	성별	생년월일	혼인상태	취학여부	문맹여부	

주택에 관한 사항

모든 주택의 주거구에 대하여 조사할 사항 (항목 ①~⑦)

- 거처의 종류**
 1. 일반주택
 2. 비 거주용 건물내의 주택
 3. 호텔, 여관 등 숙박업소
 4. 병원, 기숙사, 수녀원, 영육아원, 양로원 등 공공공적용을 위한 집
 5. 토목공사 현장 등 사업목적용을 위하여 임시로 세운 집
 6. 기타 타 ()
- 건물의 종류**
 1. 독립주택
 2. 연립주택
 3. 공동주택 (아파트)
 4. 기타 타
- 건물의 건축시기**
 1. 1945년 이전 (25년전)
 2. 1950년 이전 (20년전)
 3. 1960년 이전 (10년전)
 4. 1961년 이후 → [19] 년
- 주택의 소유관계**
 1. 자기집
 2. 셋집
 3. 세입이 빌려든 집
- 주택의 총면적 및 주거구수**

1. 총면적..... 개 평

2. 주거구사용면적..... 개 평

3. 동거가구수..... 개

4. 동거가구사용면적..... 개 평
- 주택의 총건명수**

총건명..... 명
- 이 가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문화시설 및 가재**
 1. 책방..... 개
 2. 라디오..... 개
 3. 텔레비..... 개
 4. 전..... 개
 5. 전 화
 6. 냉장고
 7. 피아노 및 음계
- 이 가구는 어느종류의 거처에 살고 있는 동거가구 임니까?**
 1. 일반주택
 2. 비 거주용 건물내의 주택
 3. 호텔, 여관 등 숙박업소
 4. 병원, 기숙사, 수녀원, 영육아원, 양로원 등 공공공적용을 위한 집
 5. 토목공사 현장 등 사업목적용을 위하여 임시로 세운 집
 6. 기타 타 ()
- 동거가구의 사용법수**

..... 개 명
- 가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문화 시설 및 가재**
 1. 책방..... 개
 2. 라디오..... 개
 3. 텔레비..... 개
 4. 전..... 개
 5. 전 화
 6. 냉장고
 7. 피아노 및 음계

조사원 성명: []
 읍/면/동: []

조사물목록

구	원	수	가	구	구	구	구	구	구
계	남	남	남	남	남	남	남	남	남

경 제 기 관

경제기획원

인구센서스 (지정통계 제 1 호)	5
주택센서스 (지정통계 제 2 호)	5
인구동태조사 (지정통계 제 3 호)	12
경제활동인구조사 (지정통계 제 4 호)	19
광공업센서스 (지정통계 제 6 호)	21
가계조사 (지정통계 제 10 호)	24
전국소매물가조사 (지정통계 제 13 호)	32
상업센서스 (지정통계 제 14 호)	36
광공업통계조사 (지정통계 제 17 호)	39
국부통계조사 (가계자산부문조사) (지정통계 제 21 의 4)	42
광공업동태조사 (지정통계 제 23 호)	44

농림부

농업센서스 (지정통계 제 5 호)	51
농가경제조사 (지정통계 제 8 호)	54
농산물생산비조사 (지정통계 제 9 호)	60
식량작물생산량조사 (지정통계 제 15 호)	64
농업기본통계조사 (지정통계 제 16 회)	69

노동청

사업체노동실태조사 (지정통계 제 18 호)	74
노동이동조사 (지정통계 제 19 호)	75
직종별 임금조사 (지정통계 제 20 호)	76

수산청

어업센서스 (지정통계 제 22 호)	77
어업생산고조사 (지정통계 제 24 호)	79
어업기본통계조사 (지정통계 제 25 호)	85

상공부

생산동태조사 (지정통계 제 11 호)	86
----------------------	----

서울시·부산시·작도

상주인구조사 (지정통계 제 7 호) 87

한국은행

국부통계조사 (정부자산부문조사) (지정통계 제 21 의 1) 92

한국산업은행

국부통계조사 (법인자산부문조사) (지정통계 제 21 의 2) 100

중소기업은행

국부통계조사 (개인자산부문조사) (지정통계 제 21 의 3) 104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농촌물가 및 임료금조사 (지정통계 제 12 호) 112

주택에 관한 사항

거주형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 아파트 기타

 : 기타

모든 주택의 추가구에 대하여 조사할 사항(항목 ①~⑩)

● 거처의 종류

① 일반주택 ② 미거주용 건물내의 주택
③ 호텔, 여관 등 숙박업소 ④ 병원, 기숙사, 수녀원, 영육아원, 양모원 등 공공 목적을 위한 집
⑤ 토목공사 현장 등 사업목적용 위하여 임시로 세운 집
⑥ 기타 ()

● 주택의 종류

① 독립주택 ② 연립주택 ③ 공동주택 (아파트)
④ 기타 ()

● 건물의 건축시기

① 1945년 이전 (25년전) ② 1950년 이전 (20년전) ③ 1955년 이후 (10년전)
④ 1960년 이전 (20년전) ⑤ 1961년 이후 (19년전)

● 주택의 소유관계

① 자기집 ② 세입자 ③ 세 없이 빌려진 집

● 주택의 용법수 및 동거가구수

1. 용방수 개 평 평
2. 동거가구용방수 개 평 평
3. 동거가구수 개 평 평
4. 동거가구사용방수 개 평 평

● 주택의 용건형수

용건형 평

● 이 가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문화시설 및 가재

① 책상 ② 라디오 ③ 텔레비 ④ 전 ⑤ 전 ⑥ 전 ⑦ 전 ⑧ 전 ⑨ 전 ⑩ 전

● 이 가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민 취사시설

① 연 ② 연 ③ 연 ④ 연 ⑤ 연 ⑥ 연 ⑦ 연 ⑧ 연 ⑨ 연 ⑩ 연

● 이 가구는 어느종류의 거처에 살고 있는 동거 가구입니까?

① 일반주택 ② 미거주용 건물내의 주택
③ 호텔, 여관 등 숙박업소 ④ 병원, 기숙사, 수녀원, 영육아원, 양모원 등 공공목적용 위한 집
⑤ 토목공사 현장 등 사업목적용 위하여 임시로 세운 집
⑥ 기타

● 동거가구의 사용방수

개 평 평

● 이 동거가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문화시설 및 가재

① 책상 ② 라디오 ③ 텔레비 ④ 전 ⑤ 전 ⑥ 전 ⑦ 전 ⑧ 전 ⑨ 전 ⑩ 전

● 동거가구가 사용하고 있는 주민 취사시설

① 연 ② 연 ③ 연 ④ 연 ⑤ 연 ⑥ 연 ⑦ 연 ⑧ 연 ⑨ 연 ⑩ 연

모든 주택의 추가구에 대하여 조사할 사항(항목 ①~⑩)

● 거처의 종류

① 일반주택 ② 미거주용 건물내의 주택
③ 호텔, 여관 등 숙박업소 ④ 병원, 기숙사, 수녀원, 영육아원, 양모원 등 공공목적용 위한 집
⑤ 토목공사 현장 등 사업목적용 위하여 임시로 세운 집
⑥ 기타 ()

● 주택의 종류

① 독립주택 ② 연립주택 ③ 공동주택 (아파트)
④ 기타 ()

● 건물의 건축시기

① 1945년 이전 (25년전) ② 1950년 이전 (20년전) ③ 1955년 이후 (10년전)
④ 1960년 이전 (20년전) ⑤ 1961년 이후 (10년후) - 1965년

● 주택의 소유관계

① 자기집 ② 세입자 ③ 세 없이 빌려진 집

● 주택의 용방수 및 동거가구수

1. 용방수 개 평 평
2. 동거가구용방수 개 평 평
3. 동거가구수 개 평 평
4. 동거가구사용방수 개 평 평

● 주택의 용건형수

용건형 평

● 이 가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문화시설 및 가재

① 책상 ② 라디오 ③ 텔레비 ④ 전 ⑤ 전 ⑥ 전 ⑦ 전 ⑧ 전 ⑨ 전 ⑩ 전

● 이 가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민 취사시설

① 연 ② 연 ③ 연 ④ 연 ⑤ 연 ⑥ 연 ⑦ 연 ⑧ 연 ⑨ 연 ⑩ 연

모든 주택의 추가구에 대하여 조사할 사항(항목 ①~⑩)

구분	주택의 종류	건물의 건축시기	주택의 소유관계	주택의 용방수 및 동거가구수	주택의 용건형수	이 가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문화시설 및 가재	이 가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민 취사시설
1	1층 단독주택	1945년 이전	자기집	용방수 3개, 동거가구용방수 2개, 동거가구수 1가, 동거가구사용방수 1개	32.5평	① 책상, ② 라디오, ③ 텔레비, ④ 전, ⑤ 전, ⑥ 전, ⑦ 전, ⑧ 전, ⑨ 전, ⑩ 전	① 연, ② 연, ③ 연, ④ 연, ⑤ 연, ⑥ 연, ⑦ 연, ⑧ 연, ⑨ 연, ⑩ 연
2	2층 단독주택	1945년 이후	세입자	용방수 4개, 동거가구용방수 3개, 동거가구수 2가, 동거가구사용방수 2개	45.5평	① 책상, ② 라디오, ③ 텔레비, ④ 전, ⑤ 전, ⑥ 전, ⑦ 전, ⑧ 전, ⑨ 전, ⑩ 전	① 연, ② 연, ③ 연, ④ 연, ⑤ 연, ⑥ 연, ⑦ 연, ⑧ 연, ⑨ 연, ⑩ 연
3	3층 단독주택	1945년 이후	자기집	용방수 5개, 동거가구용방수 4개, 동거가구수 3가, 동거가구사용방수 3개	58.5평	① 책상, ② 라디오, ③ 텔레비, ④ 전, ⑤ 전, ⑥ 전, ⑦ 전, ⑧ 전, ⑨ 전, ⑩ 전	① 연, ② 연, ③ 연, ④ 연, ⑤ 연, ⑥ 연, ⑦ 연, ⑧ 연, ⑨ 연, ⑩ 연
4	4층 단독주택	1945년 이후	세입자	용방수 6개, 동거가구용방수 5개, 동거가구수 4가, 동거가구사용방수 4개	71.5평	① 책상, ② 라디오, ③ 텔레비, ④ 전, ⑤ 전, ⑥ 전, ⑦ 전, ⑧ 전, ⑨ 전, ⑩ 전	① 연, ② 연, ③ 연, ④ 연, ⑤ 연, ⑥ 연, ⑦ 연, ⑧ 연, ⑨ 연, ⑩ 연
5	5층 단독주택	1945년 이후	자기집	용방수 7개, 동거가구용방수 6개, 동거가구수 5가, 동거가구사용방수 5개	84.5평	① 책상, ② 라디오, ③ 텔레비, ④ 전, ⑤ 전, ⑥ 전, ⑦ 전, ⑧ 전, ⑨ 전, ⑩ 전	① 연, ② 연, ③ 연, ④ 연, ⑤ 연, ⑥ 연, ⑦ 연, ⑧ 연, ⑨ 연, ⑩ 연
6	6층 단독주택	1945년 이후	세입자	용방수 8개, 동거가구용방수 7개, 동거가구수 6가, 동거가구사용방수 6개	97.5평	① 책상, ② 라디오, ③ 텔레비, ④ 전, ⑤ 전, ⑥ 전, ⑦ 전, ⑧ 전, ⑨ 전, ⑩ 전	① 연, ② 연, ③ 연, ④ 연, ⑤ 연, ⑥ 연, ⑦ 연, ⑧ 연, ⑨ 연, ⑩ 연
7	7층 단독주택	1945년 이후	자기집	용방수 9개, 동거가구용방수 8개, 동거가구수 7가, 동거가구사용방수 7개	110.5평	① 책상, ② 라디오, ③ 텔레비, ④ 전, ⑤ 전, ⑥ 전, ⑦ 전, ⑧ 전, ⑨ 전, ⑩ 전	① 연, ② 연, ③ 연, ④ 연, ⑤ 연, ⑥ 연, ⑦ 연, ⑧ 연, ⑨ 연, ⑩ 연
8	8층 단독주택	1945년 이후	세입자	용방수 10개, 동거가구용방수 9개, 동거가구수 8가, 동거가구사용방수 8개	123.5평	① 책상, ② 라디오, ③ 텔레비, ④ 전, ⑤ 전, ⑥ 전, ⑦ 전, ⑧ 전, ⑨ 전, ⑩ 전	① 연, ② 연, ③ 연, ④ 연, ⑤ 연, ⑥ 연, ⑦ 연, ⑧ 연, ⑨ 연, ⑩ 연
9	9층 단독주택	1945년 이후	자기집	용방수 11개, 동거가구용방수 10개, 동거가구수 9가, 동거가구사용방수 9개	136.5평	① 책상, ② 라디오, ③ 텔레비, ④ 전, ⑤ 전, ⑥ 전, ⑦ 전, ⑧ 전, ⑨ 전, ⑩ 전	① 연, ② 연, ③ 연, ④ 연, ⑤ 연, ⑥ 연, ⑦ 연, ⑧ 연, ⑨ 연, ⑩ 연
10	10층 단독주택	1945년 이후	세입자	용방수 12개, 동거가구용방수 11개, 동거가구수 10가, 동거가구사용방수 10개	149.5평	① 책상, ② 라디오, ③ 텔레비, ④ 전, ⑤ 전, ⑥ 전, ⑦ 전, ⑧ 전, ⑨ 전, ⑩ 전	① 연, ② 연, ③ 연, ④ 연, ⑤ 연, ⑥ 연, ⑦ 연, ⑧ 연, ⑨ 연, ⑩ 연

조사표 (가구용) 최정길 미화수

8 인구 및 주택센서스(속)

1970년 인구 및 주택센서스

총 합 표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조사구번호			조사표매수	매	시 도	구 시 군	동 읍 면	가	농업조사구 번호	※											
1	2	3	5			6		7		8											
거처 번호	가구 번호	가구주또는 대표자성명	주소			가 구 원		거처의종류		입주여부		가구구분		농가 농 업 번호		가 련 호		어 가		비 고	
			계	남	여	주택	주택이 외의거 처	현주	공가	주가구	동거 가구										
합계																					

※ 농업조사원이 기입한다. (서식제 5호)

조사원

인

동 읍 면 장

인

경 제 기 획 원

조사원성명	인
응답자성명	인

조사구번호	거 처 번 호	가 구 번 호	매 중 매	가 구 원 수	
				계	남

(특별) 시 도	구 시 군	동 읍 면	가 리	번 지 번호 (전화)
----------------	-------------	-------------	--------	-----------------------

가	구	원	수	가 구 구 분	가 족 구 성 원 수
	계	남	여		

※ 통계국기입란

사 후 조 사 표

1970년 총인구 및 주택조사

인구에 관한 사항

이름 ①	가구주와의관계 ②	성별 ③	생년월일 ④	혼인상태 ⑤	교육 ⑥		1970년 10월 1일 거주지 ⑧		
					취학여부 ⑦	학력 ⑦	거주지 ⑧	이주전의거주지 ⑨	가구주의동일여부 ⑩
1970년 11월20일 현재 가구주와 가구원의 이름을 빠짐없이 말하여 주십시오. ※ 노인, 식도, 신생아는 빠뜨리기 위하니 유의하여 주십시오.	이분은 가구주와어떤관계입니까? (예) 가구주 처 장 남 동거인 등거인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예) 남 여	사실상의 나이와 생년월일을 말하여 주십시오. ※ 호적상의 연령과는 관계없이 사실상의 만세 나이와 생년월일을 기입하십시오.	사실상의배우관계를말씀하여주십시오 ※ 호적과는 관계없이 사실대로 말씀하여 주십시오 ※ 만14세이상상의가구원에게만 들습니다.	학교에다니십니까? 아니면 중퇴또는졸업하셨습니까? ※ 만5세이상 가구원에 제한됩니다. ※ 학교원정규 학교를말합니다.	다음중어디에 해당됩니까? 안다셨다면을 읽고 쓸수 있습니까? ※ ⑥란의 취학여부에서 안다졌음을 해당하는사람은본란에서는10세이상인사원에제한되며, ⑦항을본고10세미만인사람은「\」를합니다.	이분은 70년 10월 1일현재 어디서 살고 있었습니까?	지난10월 1일당시 이분의 정확한 주소는 어디입니까? ※ ⑧란의 ① 현재와 같은집에 해당하는사람은⑨란에「\」입니다 ※ ⑧란의 ② 1970. 10. 1일이후출생자는출생당시산모의상주지(출생지)를입하고만일산모의상주지가현재와같은집일때는본란은「\」입니다.	지난 10월 1일의 조사당시 이분은 현재와 같은 가구주와살았습니까? ※ ⑩란의 ④ 70년 10월 1일이후출생자의경우에는 가구주의동일여부를 묻지 않고, 이란은「\」을합니다. ※ 10월 1일조사되지 않은 사람도「\」을합니다.
1		남	나이 생년월일	① 유배우 ② 사별 ③ 이혼 ④ 미혼	① 재학 ② 졸업 ③ 중퇴 ④ 안다졌음	① 국민 ② 중학 ③ 고 ④ 초대전문 ⑤ 대학이상 ⑥ 관용안다 ⑦ 관용모른다	① 현재와 같은집 ② 같은조사구의다른집 ③ 다른조사구의 집 ④ 70년10월 1일이후 출생 ⑤ 의 국	시도 구시군 동읍면 리가 번지 호	① 같은가구주 ② 다른가구주 지난조사시의가구주의 이 분 관계
2		남	나이 생년월일	① 유배우 ② 사별 ③ 이혼 ④ 미혼	① 재학 ② 졸업 ③ 중퇴 ④ 안다졌음	① 국민 ② 중학 ③ 고 ④ 초대전문 ⑤ 대학이상 ⑥ 관용안다 ⑦ 관용모른다	① 현재와 같은집 ② 같은조사구의다른집 ③ 다른조사구의 집 ④ 70년10월 1일이후 출생 ⑤ 의 국	시도 구시군 동읍면 리가 번지 호	① 같은가구주 ② 다른가구주 지난조사시의가구주의 이 분 관계
3		남	나이 생년월일	① 유배우 ② 사별 ③ 이혼 ④ 미혼	① 재학 ② 졸업 ③ 중퇴 ④ 안다졌음	① 국민 ② 중학 ③ 고 ④ 초대전문 ⑤ 대학이상 ⑥ 관용안다 ⑦ 관용모른다	① 현재와 같은집 ② 같은조사구의다른집 ③ 다른조사구의 집 ④ 70년10월 1일이후 출생 ⑤ 의 국	시도 구시군 동읍면 리가 번지 호	① 같은가구주 ② 다른가구주 지난조사시의가구주의 이 분 관계
4		남	나이 생년월일	① 유배우 ② 사별 ③ 이혼 ④ 미혼	① 재학 ② 졸업 ③ 중퇴 ④ 안다졌음	① 국민 ② 중학 ③ 고 ④ 초대전문 ⑤ 대학이상 ⑥ 관용안다 ⑦ 관용모른다	① 현재와 같은집 ② 같은조사구의다른집 ③ 다른조사구의 집 ④ 70년10월 1일이후 출생 ⑤ 의 국	시도 구시군 동읍면 리가 번지 호	① 같은가구주 ② 다른가구주 지난조사시의가구주의 이 분 관계
5		남	나이 생년월일	① 유배우 ② 사별 ③ 이혼 ④ 미혼	① 재학 ② 졸업 ③ 중퇴 ④ 안다졌음	① 국민 ② 중학 ③ 고 ④ 초대전문 ⑤ 대학이상 ⑥ 관용안다 ⑦ 관용모른다	① 현재와 같은집 ② 같은조사구의다른집 ③ 다른조사구의 집 ④ 70년10월 1일이후 출생 ⑤ 의 국	시도 구시군 동읍면 리가 번지 호	① 같은가구주 ② 다른가구주 지난조사시의가구주의 이 분 관계
6		남	나이 생년월일	① 유배우 ② 사별 ③ 이혼 ④ 미혼	① 재학 ② 졸업 ③ 중퇴 ④ 안다졌음	① 국민 ② 중학 ③ 고 ④ 초대전문 ⑤ 대학이상 ⑥ 관용안다 ⑦ 관용모른다	① 현재와 같은집 ② 같은조사구의다른집 ③ 다른조사구의 집 ④ 70년10월 1일이후 출생 ⑤ 의 국	시도 구시군 동읍면 리가 번지 호	① 같은가구주 ② 다른가구주 지난조사시의가구주의 이 분 관계
7		남	나이 생년월일	① 유배우 ② 사별 ③ 이혼 ④ 미혼	① 재학 ② 졸업 ③ 중퇴 ④ 안다졌음	① 국민 ② 중학 ③ 고 ④ 초대전문 ⑤ 대학이상 ⑥ 관용안다 ⑦ 관용모른다	① 현재와 같은집 ② 같은조사구의다른집 ③ 다른조사구의 집 ④ 70년10월 1일이후 출생 ⑤ 의 국	시도 구시군 동읍면 리가 번지 호	① 같은가구주 ② 다른가구주 지난조사시의가구주의 이 분 관계
8		남	나이 생년월일	① 유배우 ② 사별 ③ 이혼 ④ 미혼	① 재학 ② 졸업 ③ 중퇴 ④ 안다졌음	① 국민 ② 중학 ③ 고 ④ 초대전문 ⑤ 대학이상 ⑥ 관용안다 ⑦ 관용모른다	① 현재와 같은집 ② 같은조사구의다른집 ③ 다른조사구의 집 ④ 70년10월 1일이후 출생 ⑤ 의 국	시도 구시군 동읍면 리가 번지 호	① 같은가구주 ② 다른가구주 지난조사시의가구주의 이 분 관계
9		남	나이 생년월일	① 유배우 ② 사별 ③ 이혼 ④ 미혼	① 재학 ② 졸업 ③ 중퇴 ④ 안다졌음	① 국민 ② 중학 ③ 고 ④ 초대전문 ⑤ 대학이상 ⑥ 관용안다 ⑦ 관용모른다	① 현재와 같은집 ② 같은조사구의다른집 ③ 다른조사구의 집 ④ 70년10월 1일이후 출생 ⑤ 의 국	시도 구시군 동읍면 리가 번지 호	① 같은가구주 ② 다른가구주 지난조사시의가구주의 이 분 관계
10		남	나이 생년월일	① 유배우 ② 사별 ③ 이혼 ④ 미혼	① 재학 ② 졸업 ③ 중퇴 ④ 안다졌음	① 국민 ② 중학 ③ 고 ④ 초대전문 ⑤ 대학이상 ⑥ 관용안다 ⑦ 관용모른다	① 현재와 같은집 ② 같은조사구의다른집 ③ 다른조사구의 집 ④ 70년10월 1일이후 출생 ⑤ 의 국	시도 구시군 동읍면 리가 번지 호	① 같은가구주 ② 다른가구주 지난조사시의가구주의 이 분 관계

조사 여부 ①	조사 장소 ②	이주년도 ③	이전거주지 ④	5년전의거주지 ⑤
이른바 지난 10월 1일의 조사때 조사되었습니까? * 70년10월 1일 이후의 출생자는 본란과 ②란은 불필요없이 \ 를 합니다.	지난 10월 1일의 조사때 조사된곳의 주소는 어디입니까? * ①란의 ①과 ②에 해당한 가구의 원본란은 \ 를 합니다.	이전에 이사한 년도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 ①부터 ⑤까지에 해당한 가구는 반드시 철필기입하십시오. * 이집에서 출생한 가구는 원본란은 \ 을 합니다.	이전이 헛거주지 이전에 사던 곳은 어디입니까?	1965년 10월 1일이후에 이 집으로 이사오셨다면 5년전 거주지는 어디입니까? * 이란은 ③란의 ①에서 ⑤에 해당하는 사람만 고 ②에서 ④에 해당하는 사람만 \ 를 합니다.
① 안되었음 ② 이집에서되었음 ③ 같은주소의 다른집 ④ 다른주소에서	시도 구시군 동읍면 리가 번지 호	① 1970년~월 ⑥ 1965년~월 ② 1969년~월 ⑦ 1960~1964년 ③ 1968년~월 ⑧ 1952~1959년 ④ 1967년~월 ⑨ 1946~1951년 ⑤ 1966년~월 ⑩ 1945년	① 출생 전 ② 같은구시군 ③ 다른구시군 ④ 외국 □국	① 출생 전 ② ③란과같은 ③ 기 타 시도 구시군 ④ 외국 □국
① 안되었음 ② 이집에서되었음 ③ 같은주소의 다른집 ④ 다른주소에서	시도 구시군 동읍면 리가 번지 호	① 1970년~월 ⑥ 1965년~월 ② 1969년~월 ⑦ 1960~1964년 ③ 1968년~월 ⑧ 1952~1959년 ④ 1967년~월 ⑨ 1946~1951년 ⑤ 1966년~월 ⑩ 1945년	① 출생 전 ② 같은구시군 ③ 다른구시군 ④ 외국 □국	① 출생 전 ② ③란과같은 ③ 기 타 시도 구시군 ④ 외국 □국
① 안되었음 ② 이집에서되었음 ③ 같은주소의 다른집 ④ 다른주소에서	시도 구시군 동읍면 리가 번지 호	① 1970년~월 ⑥ 1965년~월 ② 1969년~월 ⑦ 1960~1964년 ③ 1968년~월 ⑧ 1952~1959년 ④ 1967년~월 ⑨ 1946~1951년 ⑤ 1966년~월 ⑩ 1945년	① 출생 전 ② 같은구시군 ③ 다른구시군 ④ 외국 □국	① 출생 전 ② ③란과같은 ③ 기 타 시도 구시군 ④ 외국 □국
① 안되었음 ② 이집에서되었음 ③ 같은주소의 다른집 ④ 다른주소에서	시도 구시군 동읍면 리가 번지 호	① 1970년~월 ⑥ 1965년~월 ② 1969년~월 ⑦ 1960~1964년 ③ 1968년~월 ⑧ 1952~1959년 ④ 1967년~월 ⑨ 1946~1951년 ⑤ 1966년~월 ⑩ 1945년	① 출생 전 ② 같은구시군 ③ 다른구시군 ④ 외국 □국	① 출생 전 ② ③란과같은 ③ 기 타 시도 구시군 ④ 외국 □국
① 안되었음 ② 이집에서되었음 ③ 같은주소의 다른집 ④ 다른주소에서	시도 구시군 동읍면 리가 번지 호	① 1970년~월 ⑥ 1965년~월 ② 1969년~월 ⑦ 1960~1964년 ③ 1968년~월 ⑧ 1952~1959년 ④ 1967년~월 ⑨ 1946~1951년 ⑤ 1966년~월 ⑩ 1945년	① 출생 전 ② 같은구시군 ③ 다른구시군 ④ 외국 □국	① 출생 전 ② ③란과같은 ③ 기 타 시도 구시군 ④ 외국 □국
① 안되었음 ② 이집에서되었음 ③ 같은주소의 다른집 ④ 다른주소에서	시도 구시군 동읍면 리가 번지 호	① 1970년~월 ⑥ 1965년~월 ② 1969년~월 ⑦ 1960~1964년 ③ 1968년~월 ⑧ 1952~1959년 ④ 1967년~월 ⑨ 1946~1951년 ⑤ 1966년~월 ⑩ 1945년	① 출생 전 ② 같은구시군 ③ 다른구시군 ④ 외국 □국	① 출생 전 ② ③란과같은 ③ 기 타 시도 구시군 ④ 외국 □국
① 안되었음 ② 이집에서되었음 ③ 같은주소의 다른집 ④ 다른주소에서	시도 구시군 동읍면 리가 번지 호	① 1970년~월 ⑥ 1965년~월 ② 1969년~월 ⑦ 1960~1964년 ③ 1968년~월 ⑧ 1952~1959년 ④ 1967년~월 ⑨ 1946~1951년 ⑤ 1966년~월 ⑩ 1945년	① 출생 전 ② 같은구시군 ③ 다른구시군 ④ 외국 □국	① 출생 전 ② ③란과같은 ③ 기 타 시도 구시군 ④ 외국 □국
① 안되었음 ② 이집에서되었음 ③ 같은주소의 다른집 ④ 다른주소에서	시도 구시군 동읍면 리가 번지 호	① 1970년~월 ⑥ 1965년~월 ② 1969년~월 ⑦ 1960~1964년 ③ 1968년~월 ⑧ 1952~1959년 ④ 1967년~월 ⑨ 1946~1951년 ⑤ 1966년~월 ⑩ 1945년	① 출생 전 ② 같은구시군 ③ 다른구시군 ④ 외국 □국	① 출생 전 ② ③란과같은 ③ 기 타 시도 구시군 ④ 외국 □국
① 안되었음 ② 이집에서되었음 ③ 같은주소의 다른집 ④ 다른주소에서	시도 구시군 동읍면 리가 번지 호	① 1970년~월 ⑥ 1965년~월 ② 1969년~월 ⑦ 1960~1964년 ③ 1968년~월 ⑧ 1952~1959년 ④ 1967년~월 ⑨ 1946~1951년 ⑤ 1966년~월 ⑩ 1945년	① 출생 전 ② 같은구시군 ③ 다른구시군 ④ 외국 □국	① 출생 전 ② ③란과같은 ③ 기 타 시도 구시군 ④ 외국 □국
① 안되었음 ② 이집에서되었음 ③ 같은주소의 다른집 ④ 다른주소에서	시도 구시군 동읍면 리가 번지 호	① 1970년~월 ⑥ 1965년~월 ② 1969년~월 ⑦ 1960~1964년 ③ 1968년~월 ⑧ 1952~1959년 ④ 1967년~월 ⑨ 1946~1951년 ⑤ 1966년~월 ⑩ 1945년	① 출생 전 ② 같은구시군 ③ 다른구시군 ④ 외국 □국	① 출생 전 ② ③란과같은 ③ 기 타 시도 구시군 ④ 외국 □국
① 안되었음 ② 이집에서되었음 ③ 같은주소의 다른집 ④ 다른주소에서	시도 구시군 동읍면 리가 번지 호	① 1970년~월 ⑥ 1965년~월 ② 1969년~월 ⑦ 1960~1964년 ③ 1968년~월 ⑧ 1952~1959년 ④ 1967년~월 ⑨ 1946~1951년 ⑤ 1966년~월 ⑩ 1945년	① 출생 전 ② 같은구시군 ③ 다른구시군 ④ 외국 □국	① 출생 전 ② ③란과같은 ③ 기 타 시도 구시군 ④ 외국 □국
① 안되었음 ② 이집에서되었음 ③ 같은주소의 다른집 ④ 다른주소에서	시도 구시군 동읍면 리가 번지 호	① 1970년~월 ⑥ 1965년~월 ② 1969년~월 ⑦ 1960~1964년 ③ 1968년~월 ⑧ 1952~1959년 ④ 1967년~월 ⑨ 1946~1951년 ⑤ 1966년~월 ⑩ 1945년	① 출생 전 ② 같은구시군 ③ 다른구시군 ④ 외국 □국	① 출생 전 ② ③란과같은 ③ 기 타 시도 구시군 ④ 외국 □국

* 출생여부와 사망여부에서 「있음」에 해당할 경우에는 별지 출생기록표 또는 사망기록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출생 ⑩ 여부

1. 이택에 살고있는 부인으로서 작년부터 지금까지 어린애를 낳으신적이 있습니까?
① 없다 ② 있다

2. 작년부터 지금까지 출생아중 사망한 어린이는 없습니까?
① 없다 ② 있다

* 1. 2항중 「있다」에 해당하면 아래에 기입하시고 2항의 「있다」에 해당되면 아래 출생기입란뿐 아니라 사망기입란에도 기입합니다.

출생아 이름	성별	출생년월일
	남	출생년 월 일
	여	출생년 월 일
	남	출생년 월 일
	여	출생년 월 일

사망 ⑪ 여부

이택에 살았던 분으로 작년부터 지금까지 사망하신 분은 안계십니까?
① 없다 ② 있다

* 만일 1970년10월 1일 이후에 사망하신 분이 계시면 ①란에서 부터 ⑤란까지 기입하십시오.

① 없다

② 있다

사망자의 이름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남	출생년 월 일	사망년 월 일
	여	출생년 월 일	사망년 월 일
	남	출생년 월 일	사망년 월 일
	여	출생년 월 일	사망년 월 일

거 처 번 호	가 구 번 호

주택에 관한 사항

모든 주택의 주가구에 대하여 조사할 사항

① 주택의 종류

- ① 독립주택
- ② 연립주택
- ③ 공동주택(아파트)
- ④ 비거주용 건물의 주택

② 건축의 시기

- ① 1945년 이전(25년전)
- ② 1950년 이전(20년전)
- ③ 1960년 이전(10년전)
- ④ 1961년 이후→ 19 년

③ 주택의 소유관계

- ① 자기집
- ② 셋집
- ③ 세없이 빌려든집

④ 주택의 총 방수 및 동거가구수

- ① 총 방수..... 개 평
- ② 주가구의 사용방수..... 개 평
- ③ 동거가구수..... 가구
- ④ 동거가구 사용방수..... 개 평

⑤ 주택의 총 건평수

총건평 평

⑥ 이 가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문화시설 및 가재

- ① 재봉틀 ⑤ 전 화
- ② 라 디 오 ⑥ 냉 장 고
- ③ 테 레 비 ⑦ 피 아 노 및 울 건
- ④ 전 축

모든 주택의 동거가구와 주택이외의 거처에 사는 가구에 대하여 조사할 사항

⑦ 거처의 종류

1 주 택

- ① 독립주택
- ② 연립주택
- ③ 공동주택(아파트)
- ④ 비거주용 건물내의 주택

2 주택이외의 거처

- ⑤ 숙박업소
- ⑥ 공공건물
- ⑦ 임시 가막사
- ⑧ 기 타()

⑧ 이 가구의 사용방수

개 평

⑨ 이 가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문화시설 및 가재

- ① 재 봉 틀
- ② 라 디 오
- ③ 테 레 비
- ④ 전 축
- ⑤ 전 화
- ⑥ 냉 장 고
- ⑦ 피 아 노 및 울 건

혼인신고

장귀하년월일

1	구분	부(夫)	처
2	당분적	주(主) 호(戶) 관(管) 계(界)	주(主) 호(戶) 관(管) 계(界)
3	주소	세대주명	세대주명
4	자성명	서기	서기
5	부모성명 및 본적	부성명 본적	부성명 본적
6	양친성명 및 본적	양부성명 본적	양부성명 본적
7	혼인해소년월일		
8	신본적	성	성
9	수반입적자	명	명
10	기타사항		
11	증인	본적소	본적소

11	증인	서명날인	출생년월일
12	동 의 자	부(夫)의부 서명날인	출생년월일
		부(夫)의모 서명날인	출생년월일
		주(主)의부 서명날인	출생년월일
		주(主)의모 서명날인	출생년월일
13	신고인	부(夫) 서명날인	출생년월일
		처(妻) 서명날인	출생년월일

비고 1. 차가에 인적하는 혼인 또는 사망자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고명칭에 표시한다.
2. 제 8란에는 법정불가 장소를 기재한다.
3. 제 10란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가. 당사자가 동성동본일지라도 동일 혈통이 아닌 때에는 "혼인양자자는 시조를 달리함"이라 는 취지.
- 나. 당사자의 일방이 혼가로 부터 재혼하는 때에는, 친가의 호주성명, 호주와의 관계 및 그 본적.
- 다. 민법 제11조 단서 기타 호적법 제34조에 해당하는 사항.

인구동태 사항 (지정통계 제 3호)

14	실제상동거일	서기 19	년	월	일부터	동거
15	성혼과정	1. 자 유	2. 증 매	3. 절 총		
16	혼인장소	1. 자 택	2. 예 식 장	3. 기 타		
17	직업	부			취	
18	교육정도	부	1. 미취학	2. 국민학교	취	1. 미취학
			3. 중·고교	4. 대학교		2. 국민학교
19	혼인종류	부	1. 초 혼	2. 재 혼	취	1. 초 혼
						2. 재 혼

비고 성혼과정 혼인장소 교육정도 및 혼인종류란은 해당되는 곳에 [O]으로 표시 하십시오.

출생신고

장귀하

년월일

1 출생지	본점			주소	출생장소	
	주명	주소	출생지	출생년월일	출생장소	
		세대의 관계			출생년월일	출생장소
2 생년월일	성명	본		본		
		혼인중의자(남녀별) 혼인의의의지()				
	출생년월일		출생장소		출생장소	
3 부모성명	부	본	도	본	본	
						1. 차액 2. 병일 3. 기타
	출생년월일		출생장소		출생장소	
4 기타사항	본		본		본	
	출생년월일		출생장소		출생장소	
	출생년월일		출생장소		출생장소	

비고 1. 본자는 한글을 쓰지 못하는 자 또는 한글을 쓰지 못하는 자는 藍, 靑, 赤, 白, 綠의 문자를 써야 한다.

2. 출생자가 출생신고로 정당한 자의 본적을 제1회에 기재하고 부기 혼인의 출생지의 출생 신고를 하는 때에는 모의 본적을 기재한다.

3. 출생자가 출생지를 정할 때는 제1회에 기재할 위치가 아니라 제7회에 그 위치 및 출신지(본적)를 기재한다.

4. 제5인 출생장소의 구분 중 해당자에게는 〇임을 표시한다.

5. 본(附)가 혼인의 출생지에 대한 신고를 하는 때에는 제6인 중 부에 관한 부분의 기재를 하지 아니한다.

6. 호적법 제53조의 의하여 모가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6인 중 부의 성명란에만 부 미경이라 기재한다.

7. 제3인 중 혼인수 또는 혼인의의 지의 구별에 따라 남녀로 기재한다.

8. 제7회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무능력 기타 사유로 인하여 친권자가 신고할수 없는 경우에는 그사망의 성명, 출생년월일, 본적 및 무능력에 원인 또는 신고할수 있는 사유

나. 기타 호적법 제34조에 해당되는 사유.

9. 신고인의 자리는 부, 모, 호주, 동거자, 후견인, 본만관리외의자, 기타 해당자격을 기재한다

인구동태 사항

(지정통계 제3종)

9 출생년월일	부	출생년월일	출생년월일	출생년월일	출생년월일
	출생년월일		출생년월일		출생년월일
10 부모의 직업	부	본	도	본	본
11 부모의 교육정도	부	본	도	본	본
12 부모의 동거일	부	본	도	본	본
13 혼외 출생수	총출생	명	성준	명	사망
14 임신 및 산전 상태	임신	명	수	명	사망

비고 1. 부모의 출생년월일과 동거년월일은 사실상의 년월일로 기입하십시오.

2. 조산자, 부, 모의 교육정도 및 태수의 난은 해당되는 곳에 〇로 표시 하십시오.

3. 모의 출생지수는 실제로 이 아이를 낳은 어머니가 이제까지 낳은 수를 각각 기입하며 제1인 경우에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 낳은 자녀도 포함 하십시오.

사 망 신 고

장 귀 하 년 월 일

1	사	본	적	호	주	호주와
				성	명	의관계
2	망	주	소	세대주	세대주와	남
				성	명	
3	자	성	명	생년월일	사기 歲千 年 月 日	혼인중의자 () 혼인외의자 ()
4	사망	장	소	1. 자 택 2. 병 원 3. 기 타		
5	기 타 사 항					
6	신					
7	고	인	본	적	주	소
인			서명날인	출생	생년월일	

- 비고 1. 제6란에는 호적법 제34조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다.
 2. 신고인 자격은 호주, 동거하는 친족, 기타의 동거인, 건물 토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 등 해당 자격자를 기재한다.
 3. 제5란 해당 사항에는 숫자에 [O]으로 표시한다. (예 ①)
 4. 제3란중 혼인중 혼인외의자의 구별에 따라 남, 녀로 기재한다.

인 구 동 태 사 항

(지정통계 제3호)

8	사망	직업	직업
9	사망	진단지	1. 의 사 2. 환 의 사 3. 기 타
10	혼인	동태	1. 미 혼 2. 유 배 우 3. 이 별 4. 사 별
12	교육	정도	1. 미 취 학 2. 국민학교 3. 중·고 교 4. 대 학 교

- 비고 1. 사망원인상, 혼인상태, 교육정도란은 해당하는 곳에 [O]으로 표시 하십시오.
 2. 사망원인은 되도록 상세하게 기입하십시오.

이혼신고

장귀하

1	구분	부(夫)		년	월	일
2	본적	호주명	호주와의 의관계	호주명	호주와의 의관계	
		주명		주명		
3	주소	세대주명	세대주와의 의관계	세대주명	세대주와의 의관계	
		생년월일	본	생년월일	본	
4	자신명	서기	년	월	일	서기
		생년월일	본	생년월일	본	
5	부모성명 및 본적	부명	본적	부명	본적	
		모명	본적	모명	본적	
6	양친성명 및 본적	양부명	본적	양부명	본적	
		양모명	본적	양모명	본적	
7	복합가족	본적	혼주명	본적	혼주명	
8	신본적					
9	수반입적자	성명	본가자와의 의관계	성명	본가자와의 의관계	
		생년월일		생년월일		
10	기타사항					
11	재판확정일					
12	입기청립원인	장소				

13	부흥장소			서기	년	월	일	부터	동기
14	본적	호주명	호주와의 의관계	호주명	호주와의 의관계				
		주명		주명					
15	주소	세대주명	세대주와의 의관계	세대주명	세대주와의 의관계				
		생년월일	본	생년월일	본				
16	자신명	서기	년	월	일	서기	년	월	일
		생년월일	본	생년월일	본				

- 비고
- 제8항에는 법정불가장소를 기재한다.
 - 제10항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가. 혼가를 매년자가 입기청립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 나. 친가를 부흥하는 때에는 그 취지.
 - 다. 기타 호적법 제29조제2항, 제34조에 해당하는 사항.

인구동태사항

(지정통계 제3호)

17	실제상동거일	서기 19	년	월	일	부터	동기
18	실제상월이혼일	서기 19	년	월	일	에	이혼
19	성혼과정	자	유	2. 중	매	3. 결	총
20	이혼사유	1. 부부불화 2. 가족간불화 3. 건강상 4. 성격문제 5. 기타					
21	교육정도	학	1. 미취학	2. 국민학교	3. 중·고교	4. 대학교	
		취	1. 미취학	2. 국민학교	3. 중·고교	4. 대학교	

- 비고
- 성혼과정과 이혼 사유란은 해당하는 곳에 'O'로 표시 하십시오.
 - 17항과 18항은 사실상의 년월일을 기입하십시오.

지정통계 제3호
조사구
번호

인구동태 표본 조사표

조사년월 19. 년 월
(/ 4 분기)
조사원 인

1. 출 생

지난분기 조사이후 출생이 있으면 기입하고 지난조사시 누락된 출생도 발견되면 기입 하시오

1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번호	가구번호	가구주 이름	출생자 이름	성별	출생년월일	모의생년월일	출생의당시 의 나이	조산자	도 육 정 도	부 육 정 도	부의 직업	출생 신 고 부	신고년월	신 고 처
1			1 남 2 여	19년월일	19년월일	만세	1. 의조산자 2. 의조산자 3. 의조산자	1. 미 2. 미 3. 미 4. 미 5. 미	1. 했음 2. 안했음	19년월	시 도 구 시 군 출 장 소 읍 면			
2			1 남 2 여	19년월일	19년월일	만세	1. 의조산자 2. 의조산자 3. 의조산자	1. 미 2. 미 3. 미 4. 미 5. 미	1. 했음 2. 안했음	19년월	시 도 구 시 군 출 장 소 읍 면			
3			1 남 2 여	19년월일	19년월일	만세	1. 의조산자 2. 의조산자 3. 의조산자	1. 미 2. 미 3. 미 4. 미 5. 미	1. 했음 2. 안했음	19년월	시 도 구 시 군 출 장 소 읍 면			
4			1 남 2 여	19년월일	19년월일	만세	1. 의조산자 2. 의조산자 3. 의조산자	1. 미 2. 미 3. 미 4. 미 5. 미	1. 했음 2. 안했음	19년월	시 도 구 시 군 출 장 소 읍 면			
5			1 남 2 여	19년월일	19년월일	만세	1. 의조산자 2. 의조산자 3. 의조산자	1. 미 2. 미 3. 미 4. 미 5. 미	1. 했음 2. 안했음	19년월	시 도 구 시 군 출 장 소 읍 면			

2. 사 망

지난분기 조사이후 사망이 있으면 기입하고 지난조사시 누락된 사망도 발견되면 기입하시오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번호	가구번호	가구주 이름	사망자 이름	사망자 성별	사망년월일	사망 자 생 년 월 일	사망 당 시 의 나이	사망직업	사망 자 의 직 업	사망원인	사 망 단 자	사망신 고 부	신고년월	신 고 처
1				1 남 2 여	19년월일	19년월일	만세		1. 미 2. 미 3. 미 4. 미 5. 미		1. 의 2. 한 3. 기	1. 했음 2. 안했음	19년월	시 도 구 시 군 출 장 소 읍 면
2				1 남 2 여	19년월일	19년월일	만세		1. 미 2. 미 3. 미 4. 미 5. 미		1. 의 2. 한 3. 기	1. 했음 2. 안했음	19년월	시 도 구 시 군 출 장 소 읍 면
3				1 남 2 여	19년월일	19년월일	만세		1. 미 2. 미 3. 미 4. 미 5. 미		1. 의 2. 한 3. 기	1. 했음 2. 안했음	19년월	시 도 구 시 군 출 장 소 읍 면
4				1 남 2 여	19년월일	19년월일	만세		1. 미 2. 미 3. 미 4. 미 5. 미		1. 의 2. 한 3. 기	1. 했음 2. 안했음	19년월	시 도 구 시 군 출 장 소 읍 면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3. 이 동

지난분기 조사이후 전입이 있으면 기입하고 지난조사시 누락된 전입도 발견되면 기입하시오, (전출은 기입하지 않음)

1	2	3	4	5	6	7	8	9	10	11	12
번호	가구번호	가구주 이름	전입자 이름	성 별	전입년월일	전입자 생년월일	전입 당 시 의 나이	전입전거주지	출 생 지	직 업	이 동 사 유
1				1 남 2 여	19년월일	19년월일	만세	시 도 구 시 군	동 읍 면	시 도 구 시 군	
2				1 남 2 여	19년월일	19년월일	만세	시 도 구 시 군	동 읍 면	시 도 구 시 군	
3				1 남 2 여	19년월일	19년월일	만세	시 도 구 시 군	동 읍 면	시 도 구 시 군	
4				1 남 2 여	19년월일	19년월일	만세	시 도 구 시 군	동 읍 면	시 도 구 시 군	
5				1 남 2 여	19년월일	19년월일	만세	시 도 구 시 군	동 읍 면	시 도 구 시 군	
6				1 남 2 여	19년월일	19년월일	만세	시 도 구 시 군	동 읍 면	시 도 구 시 군	
7				1 남 2 여	19년월일	19년월일	만세	시 도 구 시 군	동 읍 면	시 도 구 시 군	
8				1 남 2 여	19년월일	19년월일	만세	시 도 구 시 군	동 읍 면	시 도 구 시 군	
9				1 남 2 여	19년월일	19년월일	만세	시 도 구 시 군	동 읍 면	시 도 구 시 군	
10				1 남 2 여	19년월일	19년월일	만세	시 도 구 시 군	동 읍 면	시 도 구 시 군	
11				1 남 2 여	19년월일	19년월일	만세	시 도 구 시 군	동 읍 면	시 도 구 시 군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가구원

행정 구역	조사구번호	매출 수
시 군 동읍면	가구 번호	매출 매

1	2	3	4	5
행 번호	이름	성별	가구원 관계	출생년월일
1		남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2		남		
3		남		
4		남		
5		남		
6		남		
7		남		
8		남		
9		남		
10		남		

표본조사표

인구동태특별조사

(지정통계 3호)

행정 구역	조사구번호	가구번호	매출 수	가구주의름	호주이름	조사원	지도원
시 군 동읍면	가구 번호	매출 매	가구주이름	호주이름	조사원	지도원	

1. 출생 (기간 1970년 1월 1일 (음력 1969. 11. 24. 띠타) 이후 지금까지 태어난 아이가 있을시에 기입하시오)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발생 연월일	성별	출생년월일	아버지의 출생년월일	초등년령	진출생아와	의사, 조산원	의비율	어머니의 교육정도	신고여부	신고년월	신고처	알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2												
3												

2. 사망

기간 1970년 1월 1일 (음력 1969. 11. 24. 띠타) 이후 지금까지 사망한 분이 있으면 기입하십시오

1	2	3	4	5	6	7	8	9	10	11
발생 연월일	사망자의 성별	사망년월일	사망자의 출생년월일	사망진직업	사망자의 교육정도	사망진단자	신고여부	신고년월	신고처	신고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2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계 외조사
 지정 통계계호
 통계법 제10조 (비밀의보)
 통계조사의 결과 양허된 개인법
 인 기타 단체의 비밀은 보호되어
 아 한다.

조사구번호	가구번호	비중
		매

가구구분	1. 농가	2. 비농가
------	-------	--------

농가구분	1. 논	2. 밭	3. 과수원	4. 특수경제
농가구분	5. 논	6. 밭	7. 과수원	8. 기타
농가구분	9. 논	10. 밭	11. 과수원	12. 기타

연령별	14세 이상	14세 미만	계
성별	남	여	계

인	사		경		활		동		사		항	
	이	성	업	업	위	정	도	전	회	부	이	항
01	1남자	1남자	1. 1차 2. 2차	1. 1차 2. 2차	1. 2차 2. 2차							
02	1남자	1남자	1. 1차 2. 2차	1. 1차 2. 2차	1. 2차 2. 2차							
03	1남자	1남자	1. 1차 2. 2차	1. 1차 2. 2차	1. 2차 2. 2차							
04	1남자	1남자	1. 1차 2. 2차	1. 1차 2. 2차	1. 2차 2. 2차							
05	1남자	1남자	1. 1차 2. 2차	1. 1차 2. 2차	1. 2차 2. 2차							
06	1남자	1남자	1. 1차 2. 2차	1. 1차 2. 2차	1. 2차 2. 2차							
07	1남자	1남자	1. 1차 2. 2차	1. 1차 2. 2차	1. 2차 2. 2차							

경제기획원 조사 통계국

경제활동인구조사
중 합 표

1. 조사구번호
2. 조사표번호

Table with columns for household count (가구원수), gender (남/여), and age groups (11-19, 20-29, etc.). Includes a '총 계' (Total) row at the bottom.

서식 제6호

취업 시간기입표

1. 조사구번호
2. 조사표번호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Main table for recording working hours by day (1-7) and by hour (1-7). Includes columns for '성명' (Name), '가구주와의 관계' (Relationship), and '취업형태' (Working type). Includes a note: '※ 주로 한 일의 명칭을 구체적으로 기입하십시오'.

취업 시간 기입상의 주의

- 1. 취업 시간 기입표에는 매일 일체로 일한 시간을 기입하여 주십시오.
2. "취업 시간표의 기입 방법"
3. 취업 시간 결정 방법
가) 쉬는, 휴식, 또는 통근에 소요된 시간은 취업 시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나) 일하는 시간이 고정된 사람중 휴식, 고정된 시간 이외에 특별히 일한 시간은 취업 시간에 포함합니다.
다) 작기의 가족이 경영하는 농업, 상업 등의 일을 돌보았을때도 동일한 시간은 취업 시간에 포함합니다.
라) 정한 일에만 종사한 시간, 무모수 봉사 작업과 같은 활동에 종사한 시간은 취업 시간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예) 가) 농수인 경우.....농업경영을 위하여 소비된 모든 시간으로서 경작은 물론 밭갈, 조형 및 비료의 운반, 농사 기구의 손질, 등에 요한 시간은 취업 시간에 포함합니다.
나) 이직인 경우.....이직인 경우와 같이 이직경영에 소비한 모든 시간을 기입 할것이며(兼)나 그(兼)의(兼)의 손질에 소비한 시간도 취업 시간에 포함합니다.
다) 도매업 또는 소매업인 경우.....상점의 문을 열때로부터 일과가 끝나서 문을 닫을때까지의 시간에서 업무에 관계 없는 시간은 제외하고 시간을 취업 시간에 기입합니다.
단(但). 문을 닫더라도 청소 경영에 관계있는 상품의 배입, 장부의 정리(等)에 소요한 시간은 취업 시간에 포함합니다.
라) 자유업인 경우.....전날을 뜻한 개인의사의 경우에는 위의 도매업 또는 소매업의 경우에 준하여 기입한것이며 일정한 장소(職場)를 가지지 않는 조산원(助産員)의 경우에는 직접 조산(助産)에 요(要)한 시간과 왕진(往診)에 요한 시간을 취업 시간으로 기입합니다.
마) 기타인 경우.....앞의 예에 준하여 취업 시간을 결정 기입합니다.
4. 취업 시간을 결정하는 방법과 기입 방법에 있어서 의문되는 점이 있을때는 조사원에게 문의하여 정확히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 지정통계 제 6 호

1969년 광공업 센서스 조사표

설시기관 경제기획원 한국산업은행

통계법에 따라 귀 사업체는 신고의무가 있으며 신고된 내용은 통계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지역번호	조사구번호	조사표번호	산업분류	조직형태	규모	사업체번호	사업체번호
※	※	※	※	※	※	※	※

일반적 유의사항

1. 반드시 정적 또는 동적의 「링크」나 「브랜치」로 연결되고 있다(「연계」는 「연계」로 표시한다).
2. 숫자는 반드시 1, 2, 3, ...과 같은 「아라비아」 숫자로 사용한다.
3. 모든 금액은 원단위로 기입하여 주십시오. 다만 서지원의 단위에 맞추어 기입하여 주십시오.
4. 해당사항이 없는 단은 반드시 「-」로 표시하십시오.
5. ※표가 있는 단은 기입하지 마십시오.

1. 사업체명 및 소재지 2. 인사(근원)명 및 소재지
1. 영업상 형태로 사용하고 있는 명칭을 구체적으로 기입하고 일정한 명칭이 없을 때는 대표자명 또는 사업주명만을 기입한다.
2. 소재지는 시, 도명부터 번지까지 상세히 기입하여 자세한 행정단위 명칭에 반드시 「O」표로 하여 주십시오.

3. 조직형태

기타법인()란 주식회사 이외의 모든 형태의 법인을 말한다.

5. 주요생산품명 및 생산공정

(1) 등 중부 이상의 품목을 생산할 때에는 1968년년의 제품명 또는 수공업의 가장 많았던 품목에 대하여 기입한다.

(2) 생산공정은 주요생산품의 생산공정을 최종의 투입물 명부의 최종적으로 산출되는 품목까지 순서에 따라 단계를 기입하여 주십시오.

(예) 점토(粘土) → 성형(成型) → 소성(燒成) → 벽돌 원반(原盤) → 정반(精粉) → 직조(織造) → 원포(原布)

1. 사업체명 및 소재지
1. 영업상 형태로 사용하고 있는 명칭을 구체적으로 기입하고 일정한 명칭이 없을 때는 대표자명 또는 사업주명만을 기입한다.
2. 소재지는 시, 도명부터 번지까지 상세히 기입하여 자세한 행정단위 명칭에 반드시 「O」표로 하여 주십시오.

3. 조직형태

해당 번호의 () 안에 O표로 하여 주십시오.

4. 자본금 또는 출자금액 (법인에 한함)

1968년 12월 31일현재로 남성이 원포원자 본금 또는 출자금액을 기입하여 주십시오.

5. 주요생산품명 및 생산공정

주요생산품명 생산공정

1. 사업체명 및 소재지
1. 영업상 형태로 사용하고 있는 명칭을 구체적으로 기입하고 일정한 명칭이 없을 때는 대표자명 또는 사업주명만을 기입한다.
2. 소재지는 시, 도명부터 번지까지 상세히 기입하여 자세한 행정단위 명칭에 반드시 「O」표로 하여 주십시오.

3. 조직형태

해당 번호의 () 안에 O표로 하여 주십시오.

4. 자본금 또는 출자금액 (법인에 한함)

1968년 12월 31일현재로 남성이 원포원자 본금 또는 출자금액을 기입하여 주십시오.

5. 주요생산품명 및 생산공정

주요생산품명 생산공정

1. 사업체명 및 소재지
1. 영업상 형태로 사용하고 있는 명칭을 구체적으로 기입하고 일정한 명칭이 없을 때는 대표자명 또는 사업주명만을 기입한다.
2. 소재지는 시, 도명부터 번지까지 상세히 기입하여 자세한 행정단위 명칭에 반드시 「O」표로 하여 주십시오.

3. 조직형태

해당 번호의 () 안에 O표로 하여 주십시오.

4. 자본금 또는 출자금액 (법인에 한함)

1968년 12월 31일현재로 남성이 원포원자 본금 또는 출자금액을 기입하여 주십시오.

5. 주요생산품명 및 생산공정

주요생산품명 생산공정

1. 사업체명 및 소재지
1. 영업상 형태로 사용하고 있는 명칭을 구체적으로 기입하고 일정한 명칭이 없을 때는 대표자명 또는 사업주명만을 기입한다.
2. 소재지는 시, 도명부터 번지까지 상세히 기입하여 자세한 행정단위 명칭에 반드시 「O」표로 하여 주십시오.

3. 조직형태

해당 번호의 () 안에 O표로 하여 주십시오.

4. 자본금 또는 출자금액 (법인에 한함)

1968년 12월 31일현재로 남성이 원포원자 본금 또는 출자금액을 기입하여 주십시오.

5. 주요생산품명 및 생산공정

주요생산품명 생산공정

7. 연건금액 및 부리후생비

1. 연건금액은 연간 피고용자에게 노무의 대가로 지급된 모든 금액에 해당한다(근로복지법 제 11조 제 1항 참조).
2. 부리후생비는 종업원에 대한 급여에 포함하여 주십시오.

(1) 생산종업원	(2) 사무 및 기타종업원	(3) 임시종업원	(4) 급여액	(5) 부리후생비
명	명	명	원	원
※	※	※	※	※

8. 월별조업일수

(1) 1968년 배정받은 그 월의 조업일수를 기입하여 주십시오.

(2) 조업일이란 원포원자 사업체의 본래의 생산이나 「서비스」를 위하여 실제로 작업한 날을 말하며 휴업일이 아니더라도 기계고장, 정전등으로 실제로 작업을 하지 않은 날은 제외하여야 합니다.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
일	일	일	일	일	일	일	일	일	일	일	일	일

9. 연건금액 및 부리후생비

(1) 연건금액은 연간 피고용자에게 노무의 대가로 지급된 모든 금액에 해당한다(근로복지법 제 11조 제 1항 참조).

(2) 부리후생비는 종업원에 대한 급여에 포함하여 주십시오.

(3) 연건금액은 연간 피고용자에게 노무의 대가로 지급된 모든 금액에 해당한다(근로복지법 제 11조 제 1항 참조).

(4) 부리후생비는 종업원에 대한 급여에 포함하여 주십시오.

(5) 연건금액은 연간 피고용자에게 노무의 대가로 지급된 모든 금액에 해당한다(근로복지법 제 11조 제 1항 참조).

(6) 부리후생비는 종업원에 대한 급여에 포함하여 주십시오.

(7) 연건금액은 연간 피고용자에게 노무의 대가로 지급된 모든 금액에 해당한다(근로복지법 제 11조 제 1항 참조).

(8) 부리후생비는 종업원에 대한 급여에 포함하여 주십시오.

(9) 연건금액은 연간 피고용자에게 노무의 대가로 지급된 모든 금액에 해당한다(근로복지법 제 11조 제 1항 참조).

(10) 부리후생비는 종업원에 대한 급여에 포함하여 주십시오.

원재료비합계

연료비	322	0.3	1	단	류	7	1	단	류	7	1
연료비	321	11	2	단	류	7	1	단	류	7	1
연료비	0.22	99	3	단	류	7	1	단	류	7	1

(3) 구입전력비

1,000 Kwh

(4) 구입용수비

지급한 수도요금(미분류포함)

(5) 위탁생산비

위탁생산을 위하여 공구한 원재료비는 제외

(6) 수리 및 유지비

차액, 소모품, 부속품등의 구입비용 포함

(7) 합

[(1)+(2)+(3)+(4)+(5)-(6)]

(비) 지정통계 제 6 호 1968년 광공업센서스 조사표 (본사·본점 조사용) 실시기관 경제기획원 한국산업은행

지역번호	조사구번호	조사표번호	산업분류	조직형태	규모	사업체번호
※	※	※	※	☆	☆	
1. 본사(본점)명 및 소재지				2. 조직형태		
대표자명	주소	전화	주	단	종	업
서울특별시 부 산 도	구 시 군	로 동 읍 면	가 동 번	지	호	
4. 종업원수 (본사·본점만에 한함)				5. 연간급여액 (본사·본점만에 한함)		
(1) 피고용자 유업원에는 피고용자수 앞에 △표를 하여 주십시오.				본사(본점)의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용자에게 1968년간 본사의 피가로 지급한 총액(미분에도 포함)을 기입하여 주십시오.		
① 3월말	② 6월말	③ 9월말	④ 12월말	⑤계	①+②+③+④	⑥주업기간중 월평균
명	명	명	명	명	명	명
(2) 사업주 및 무급종업원 (연말 현재)				6. 연간복지(복지비) (본사·본점만에 한함)		
(3) 합 계 ①+②				급여 이외의 위생, 보전, 위안, 휴양 등 종업원의 사회부지와 복지를 위하여 연간 원액으로 지급한 제비용불기입하여 주십시오.		
				액 천 만 원 단 만 원 천 원		
7. 유형고정자산						
본사(본점)계정에 속하는 유형고정자산에 대하여 1968년 연말총액과 연간취득액, 처분액 및 감가상각액을 각각 기입하여 주십시오.						
구분	(1) 연 말 총 액	(2) 연 간 취 득 액		(3) 연 간 처 분 액		(4) 연 간 감 가 상 각 액
		신규취득액 및 증개축액	증고취득액	연간처분액 및 손해액	상각액	
① 토 지						
② 건 물						
③ 구 축 물						
④ 기계 및 장비						
⑤ 대용물기						
⑥ 차량, 선박 등 운반수						
⑦ 합계 ①+②+③+④+⑤+⑥						
8. 관할사업체명부						
귀사(당)에 속하는 광업 및 제조사업체를 기입하여 주십시오. 조업, 휴업은 해당년에 ○표로 하여 주십시오.						
사업체명	대표자명	소재지	주요생산품명	종업원수	조업유업	
비고						

※ 기입용시가 전에 뒷면의 기입요령을 반드시 읽어 보아 주십시오.

(비) 지정통계 제 6 호 1968년 광공업센서스 조사표 (본사·본점 조사용) 실시기관 경제기획원 한국산업은행

지역번호	조사구번호	조사표번호	산업분류	조직형태	규모	사업체번호
※	※	※	※	☆	☆	
사업체명	소재지	대표자명	주	단	종	업
서울특별시 부 산 도	구 시 군	로 동 읍 면	가 동 번	지	호	
① 수입원재료의 사용량의 금액						
품목명 및 수량단위 등의 기입에 있어서는 별개 「상품분류표」에 의하여 주십시오.						
분류번호	☆	사용원재료명	단위	수	량	금 액
※						백만원 이하 천만원 미만 만 원 천 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⑯						
⑰						
⑱						
⑲						
⑳						
㉑						
㉒						
㉓						
㉔						
㉕						
수입원재료합계						

※ 기입용시가 전에 뒷면의 기입요령을 반드시 읽어 보아 주십시오.

제 2 호 서 식

본 기재내용은 통계법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통계 목적 이외에는 원리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조사기	조사원번호	조사구	표본가정	가구원수	가구의 범위							

가계 조사 면접 조사표

지 정 등 계 계 10 호

경 제 기 획 원

조사원인	지도원인

주 의 사 항

1. 조사표의 기입은 흑색 또는 청색잉크로 기입할것.
2. 해당란에 기입 수락이 없도록 할것.
3. 숫자는 전부 아라비아 숫자 (1, 2, 3, ...)로 북쪽하게 기입할것.
4. 품목별 지출조사는 대상가구의 생활정도를 고려하여 질문할것.
5. 품목의 계절성을 고려하여 질문할것.
6. 집계 오산이 없도록 감산을 철저히 할것.
7. *표시는 중앙에서 기입함.

1. 가 구 실 태

가. 가구주 (수입이 제일 많은 가구원) 및 임주 형태에 대하여

구분	가 구 주	주	에	관	관	관	관	관	관	관	관	관
성 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년 령	0~13	14~19	20~24	25~29	30~34	35~39	40~44	45~49	50~54	55~59	60세 이상	
1.남												
2.여												

나. 가구원 전체에 대하여 (년령 계급별 및 성별)

구분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3	미	만	만	만	만	만	만	만	만	만	만	만
미 만												

다. 가구원이 모두 직업이 없는 가구의 생계유지 방법:

2. 생 계

구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보	조	조	조	조	조	조	조	조	조	조	조	조
조												

3. 용 도 별 지 출 조 사

(가) 교재비로 지출된 일체의 상품 (부조상품포함)

구분	부	부	부	부	부	부	부	부	부	부
총										

(나) 관공상체비 (의복·의류·화장·의사·장비)로 지출된 일체의 상품

구분	부	부	부	부	부	부	부	부	부	부
총										

주: 1. 비가구의 관공상체비로 인한 부조상품 및 교재비

주: 2. 가구의 관공상체비로 인한 일체의 비용

4. 항목별 집계표

부호	항	품목	금액	부호	항	품목	금액	부호	항	품목	금액
01	500	소액		06	000	비용지출	143	143	피타공일		
	510	근로소득		100	100	소득품비	150	150	의복비		
	511	가구주소득		110	110	식품비	151	151	의류비		
	512	가타가주원소득		111	111	숙박비	152	152	의약품비		
	520	기타소득		112	112	유아비	153	153	양식비		
	521	수입이자소득		113	113	취소및해소실	154	154	장식비		
	522	수입양분소득		114	114	취소및해소실	155	155	장기투자비		
	523	부업소득		115	115	과다비	160	160	잔비		
	524	수증및보조		116	116	가공식품	161	161	의류비		
	525	기타		117	117	과다및정당품	162	162	미용위생		
	526	취업가생가액		118	118	과다및정당품	163	163	문방구		
				119	119	알콜음료	164	164	교양오락		
				120	120	의류	165	165	교양오락		
				130	130	주거비	166	166	교양오락		
				131	131	의류	167	167	교양오락		
				132	132	의류	168	168	교양오락		
				133	133	과다및정당품	200	200	비소비지출		
				134	134	수액수리	210	210	조세및징부금		
				135	135	가구정기	12	12	기타		
				140	140	광열비	230	230	기타		
				141	141	전기비	400	400	※원물지출총액		
				142	142	의류					

5. 저축상항

부호	항	품목	금액	부호	항	품목	금액	부호	항	품목	금액
03	600	기타저축	300	03	600	기타저축	300	17	750	원금	
	610	저축인출	310	03	610	저축인출	310	710	의복비		
	611	수출	311	03	611	수출	311	720	의류비		
	612	수출	312	03	612	수출	312	721	의약품비		
	613	생업보통인출	313	03	613	생업보통인출	313	722	의약품비		
	614	의업생업	314	03	614	의업생업	314	723	의약품비		
	615	유가증권매각	315	03	615	유가증권매각	315	724	의약품비		
	616	유가증권매각	316	03	616	유가증권매각	316	725	의약품비		
	617	유가증권매각	317	03	617	유가증권매각	317	730	관공상제비		
	618	유가증권매각	318	03	618	유가증권매각	318	740	원금		
	619	유가증권매각	319	03	619	유가증권매각	319	750	원금		
	620	유가증권매각	320	03	620	유가증권매각	320	751	의복비		
	621	유가증권매각	321	03	621	유가증권매각	321	752	의류비		
	622	유가증권매각	322	03	622	유가증권매각	322	753	의약품비		
	623	유가증권매각	323	03	623	유가증권매각	323	754	의약품비		
	624	유가증권매각	324	03	624	유가증권매각	324	755	의약품비		
	625	유가증권매각	325	03	625	유가증권매각	325				
	630	부채의지출	330	03	630	부채의지출	330				
	631	부채의지출	331	03	631	부채의지출	331				
	632	부채의지출	332	03	632	부채의지출	332				
	633	부채의지출	333	03	633	부채의지출	333				
	634	부채의지출	334	03	634	부채의지출	334				
	650	수입기입누란	350	03	650	수입기입누란	350				

※ 소액

(1) 식품품비 집계표

부호	항	품목	금액	부호	항	품목	금액
19	1000	식품품비		19	1000	식품품비	
	1100	곡물			1100	곡물	
	1101	쌀			1101	쌀	
	1102	참깨			1102	참깨	
	1103	쌀보리			1103	쌀보리	
	1104	보리			1104	보리	
	1105	밀			1105	밀	
	1106	콩			1106	콩	
	1107	팥			1107	팥	
	1108	녹두			1108	녹두	
	1109	조			1109	조	
	1110	수수			1110	수수	
	1111	밀가루			1111	밀가루	
	1112	기타			1112	기타	
	1120	유			1120	유	
	1121	의유			1121	의유	
	1122	계란			1122	계란	
	1123	돼지고기			1123	돼지고기	
	1124	닭고기			1124	닭고기	
	1125	소고기			1125	소고기	
	1126	생선			1126	생선	
	1127	계란			1127	계란	
	1128	유제품			1128	유제품	
	1129	과자			1129	과자	
	1130	음료			1130	음료	
	1131	기타			1131	기타	
	1132	조식			1132	조식	
	1133	조식			1133	조식	
	1134	조식			1134	조식	
	1135	조식			1135	조식	
	1136	조식			1136	조식	
	1137	조식			1137	조식	
	1138	조식			1138	조식	
	1139	조식			1139	조식	
	1140	조식			1140	조식	
	1141	조식			1141	조식	
	1142	조식			1142	조식	
	1143	조식			1143	조식	
	1144	조식			1144	조식	
	1145	조식			1145	조식	
	1146	조식			1146	조식	
	1147	조식			1147	조식	
	1148	조식			1148	조식	
	1149	조식			1149	조식	
	1150	조식			1150	조식	
	1151	조식			1151	조식	
	1152	조식			1152	조식	
	1153	조식			1153	조식	
	1154	조식			1154	조식	
	1155	조식			1155	조식	
	1156	조식			1156	조식	
	1157	조식			1157	조식	
	1158	조식			1158	조식	
	1159	조식			1159	조식	
	1160	조식			1160	조식	
	1161	조식			1161	조식	
	1162	조식			1162	조식	
	1163	조식			1163	조식	
	1164	조식			1164	조식	
	1165	조식			1165	조식	

(2) 식료품비 집계표

Table with 15 columns: No, Item, Unit, Price, Total, etc. Rows 30-35. Items include: 계곡물, 과일, 견과류, 곡물, 식용유, 계곡물, 과일, 견과류, 곡물, 식용유, 계곡물, 과일, 견과류, 곡물, 식용유.

(3) 식료품비의 집계표

Table with 15 columns: No, Item, Unit, Price, Total, etc. Rows 36-49. Items include: 우유, 계곡물, 과일, 견과류, 곡물, 식용유, 계곡물, 과일, 견과류, 곡물, 식용유, 계곡물, 과일, 견과류, 곡물, 식용유.

(4) 식료품비의 집계표

부호	종	목	수량	합계	원액	원율	원율	원율	원율
15108	부	맛음신자취	원						
15109	부	맛음숙터북	원						
15110	부	맛음오바	원						
15111	부	맛음코프	원						
15112	부	기타맛음복	원						
15113	부	원, 배, 의	원						
15114	부	화학사제의	원						
15115	부	원, 냉, 사즈	원						
15116	부	와이, 사즈	원						
15117	부	원, 배, 타	원						
15118	부	부타우스	원						
15119	부	스, 커피	원						
15120	부	파, 차, 마	원						
15121	부	반, 수, 마	원						
15122	부	수, 마, 마	원						
15123	부	세, 마, 마	원						
15124	부	의, 부, 수, 신, 임	원						
15125	부	기, 타, 내, 의	원						
15200	부	지, 물, 연, 임, 사	원						
15201	부	물	원						
15202	부	프, 로, 연	원						
15203	부	용	원						
15204	부	기, 타, 연, 적	원						
15205	부	양	원						
15206	부	물	원						
15207	부	물	원						
15208	부	기, 타, 연, 적	원						
15209	부	물	원						
15210	부	수, 의	원						
15211	부	기, 타, 마, 적	원						
15212	부	나, 이, 의	원						
15213	부	네, 르, 물	원						
15214	부	비, 니, 물	원						
15215	부	기, 타, 화, 적	원						
15216	부	제, 물, 신	원						
15217	부	제, 물, 신	원						
15218	부	화, 학, 사	원						
15219	부	기, 타, 신	원						
15220	부	물	원						
15300	부	양, 말, 류	원						
15301	부	남, 자, 양, 말	원						
15302	부	여, 자, 양, 말	원						
15303	부	스, 타, 양, 말	원						
15304	부	어, 린, 이, 양, 말	원						
15305	부	비, 신, 의	원						
15306	부	신, 말, 류	원						
15401	부	맛음남자취	원						
15402	부	맛음여자취	원						
15403	부	맛음고부신	원						
15404	부	군, 물, 화	원						
15405	부	군, 물, 화	원						
15406	부	군, 물, 화	원						

(5) 식료품비의 집계표

부호	종	목	수량	합계	원액	원율	원율	원율	원율
15407	부	미, 빌, 의	원						
15408	부	신, 반, 수, 선	원						
15409	부	기	원						
15500	부	장, 신, 구	원						
15501	부	원, 드, 목	원						
15502	부	반, 목, 시, 계	원						
15503	부	반, 목, 시, 계	원						
15504	부	부, 목, 시, 계	원						
15505	부	라, 이, 마	원						
15506	부	드, 목, 장	원						
15507	부	안	원						
15508	부	네, 타, 이	원						
15509	부	데, 타, 이	원						
15510	부	강, 마, 후, 타	원						
15511	부	드, 목, 카, 류	원						
15512	부	스, 카, 류	원						
15513	부	장, 신, 수, 신, 임	원						
15514	부	기, 타, 피, 별	원						
15515	부	기, 타, 피, 별	원						
15601	부	이	원						
15602	부	드, 목, 장	원						
15603	부	수, 양, 신, 신	원						
15604	부	수, 양, 신, 신	원						
15605	부	가, 계, 물, 보, 보	원						
15606	부	계, 물, 보, 보	원						
15607	부	계, 물, 보, 보	원						
15608	부	계, 물, 보, 보	원						
15609	부	계, 물, 보, 보	원						
15610	부	계, 물, 보, 보	원						
15611	부	계, 물, 보, 보	원						
15612	부	계, 물, 보, 보	원						
15613	부	계, 물, 보, 보	원						
15614	부	계, 물, 보, 보	원						
15615	부	계, 물, 보, 보	원						
15616	부	계, 물, 보, 보	원						
15617	부	계, 물, 보, 보	원						
15618	부	계, 물, 보, 보	원						
15619	부	계, 물, 보, 보	원						
15620	부	계, 물, 보, 보	원						
15621	부	계, 물, 보, 보	원						
15622	부	계, 물, 보, 보	원						
15623	부	계, 물, 보, 보	원						
15624	부	계, 물, 보, 보	원						
15625	부	계, 물, 보, 보	원						
15626	부	계, 물, 보, 보	원						
15627	부	계, 물, 보, 보	원						
15628	부	계, 물, 보, 보	원						
15629	부	계, 물, 보, 보	원						
15630	부	계, 물, 보, 보	원						
15631	부	계, 물, 보, 보	원						
15632	부	계, 물, 보, 보	원						
15633	부	계, 물, 보, 보	원						
15634	부	계, 물, 보, 보	원						
15635	부	계, 물, 보, 보	원						
15636	부	계, 물, 보, 보	원						
15637	부	계, 물, 보, 보	원						
15638	부	계, 물, 보, 보	원						
15639	부	계, 물, 보, 보	원						
15640	부	계, 물, 보, 보	원						
15641	부	계, 물, 보, 보	원						
15642	부	계, 물, 보, 보	원						
15643	부	계, 물, 보, 보	원						
15644	부	계, 물, 보, 보	원						
15645	부	계, 물, 보, 보	원						
15646	부	계, 물, 보, 보	원						
15647	부	계, 물, 보, 보	원						
15648	부	계, 물, 보, 보	원						
15649	부	계, 물, 보, 보	원						
15650	부	계, 물, 보, 보	원						
15651	부	계, 물, 보, 보	원						
15652	부	계, 물, 보, 보	원						
15653	부	계, 물, 보, 보	원						
15654	부	계, 물, 보, 보	원						

(6) 김 장 조 사 집 계 표

제 3 호 서 지
 통계법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본 기재 내용은 통계 목적 이외에는 철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사기	조사일	조사처	표본자료	가구구분

가 계 조 사
 식 료 품 비 조 사 표

197 년 월 일 부터 일 까지
 지경통계 제10호 가계조사

경 제 기 회 원

조사원인	지도원결인

※부호	품 목 계	수	량	단 가	구입금액	자가생산	원물수증	구입일자
	채소(해초)및과실류							
◎	무	가마	단	원				월 일
◎	배추	포기	단	원				월 일
	파	g	관	원				월 일
	갓	g	관	원				월 일
	미나리	g	관	원				월 일
	청각	g	관(문배)	원				월 일
	배기	g	관(문배)	원				월 일
	기타	개		원				월 일
	조미료류							
◎	고추	g	관	원				월 일
◎	고추가루	g	관(문배)	원				월 일
◎	마늘	개	관(문배)	원				월 일
	생강	g	관(문배)	원				월 일
	깨	g	관(문배)	원				월 일
◎	소금	g	관(문배)	원				월 일
	설탕	g	관(문배)	원				월 일
	맛나	g	관(문배)	원				월 일
	기타	g		원				월 일
	육·어개류							
	쇠고기	g	관(문배)	원				월 일
	생명테	마리		원				월 일
	칼치	마리		원				월 일
	생선채우	g	관	원				월 일
◎	술	g	관(문배)	원				월 일
◎	세우	g	관(문배)	원				월 일
◎	벌치	g	관(문배)	원				월 일
◎	황새	g	관(문배)	원				월 일
	조끼	마리		원				월 일
	기타			원				월 일

기 입 요 평

1. 기업기간은 월 일부터 월 일까지입니다.
2. 판매 품목은 식료품비 경제포에 속하는 품목에 한정하여 작성하였으며, 단위 및 수량을 하에 주십시오.
3. 조사표기업은 매일 하루분을 1메이저에 기업하여 주십시오.
4. 「원계」란은 현금 및 외상+원물지출+자가생산
5. 「원금및외상」란에는 현금 및 외상으로 구입한 물품을 자기집에서 소비한 물건의 구입한 금액을 기입하여 원금 및 외상으로 구입한 물품을 자기집에서 구입한 금액을 기입하십시오.
6. 「원물지출」란은 현금 및 외상으로 구입한 물품을 자기집에서 소비한 물건의 구입한 금액을 기입하십시오.
7. 「자가생산」란에는 식료품을 직접 생산 또는 채취한 기입합니다.
8. 「취급수」란에는 매일 원재료 식사한 인원 표시합니다. 지출한 가구원도 원재료 식사한 인원으로 표시합니다.
9. ※표시는 조사원이 기입합니다.

※주요품목소비 및 재고량										
품목	명	조사계시월	전월	간월	종량	조사기	조사기	조사기	조사기	단위
쌀										kg
보리										kg
밀										kg
콩										kg
팥										kg
연탄										개

부호	종목	수량	단위	합계	정액	원가	정률	비율
11665	가타장류	1	개					
11667	가타장류	1	개					
11668	가타장류	1	개					
11669	가타장류	1	개					
11670	가타장류	1	개					
11671	가타장류	1	개					
11672	가타장류	1	개					
11673	가타장류	1	개					
11674	가타장류	1	개					
11675	가타장류	1	개					
11676	가타장류	1	개					
11677	가타장류	1	개					
11678	가타장류	1	개					
11679	가타장류	1	개					
11680	가타장류	1	개					
11681	가타장류	1	개					
11682	가타장류	1	개					
11683	가타장류	1	개					
11684	가타장류	1	개					
11700	가타장류	1	개					
11701	가타장류	1	개					
11702	가타장류	1	개					
11703	가타장류	1	개					
11704	가타장류	1	개					
11705	가타장류	1	개					
11706	가타장류	1	개					
11707	가타장류	1	개					
11708	가타장류	1	개					
11709	가타장류	1	개					
11710	가타장류	1	개					
11711	가타장류	1	개					
11712	가타장류	1	개					
11713	가타장류	1	개					
11714	가타장류	1	개					
11715	가타장류	1	개					
11716	가타장류	1	개					
11800	가타장류	1	개					
11801	가타장류	1	개					
11802	가타장류	1	개					
11803	가타장류	1	개					
11804	가타장류	1	개					
11805	가타장류	1	개					
11806	가타장류	1	개					
11807	가타장류	1	개					
11808	가타장류	1	개					
11809	가타장류	1	개					
11810	가타장류	1	개					
11811	가타장류	1	개					
11812	가타장류	1	개					
11813	가타장류	1	개					
11814	가타장류	1	개					
11815	가타장류	1	개					
11816	가타장류	1	개					

별지 제4호 서식

가계조사 보고서

보조조사표

지정통계 제 10호

조사기간 1977년 월

조사구

경제기획원

조사월: 월
 조사년: 년

조사 항목 일람표

부호	종목	수량	단위	합계	정액	원가	정률	비율
13000	주거비							
13100	지출법세							
13200	지출법세							
13300	지출법세							
13400	주거비							
13500	주거비							
13600	주거비							
13700	주거비							
13800	주거비							
13900	주거비							
14000	주거비							
14100	주거비							
14200	주거비							
14300	주거비							
14400	주거비							
14500	주거비							
14600	주거비							
14700	주거비							
14800	주거비							
14900	주거비							
15000	주거비							
15100	주거비							

15101	환	아동유아복합	(15204)	기타 면적 단	15104	여과고무신	15006	가	15006	가
15102	아동유아복합	15205	양	15406	15406	우동	15607	◎	15607	◎
15103	장학	15206	옷	15407	15407	우미	15608	◎	15608	◎
15104	남방의복	15207	가타면적	15408	15408	신발	15609	◎	15609	◎
15105	가타면적	(15208)	모	(15409)	(15409)	구	16000	◎	16000	◎
15106	가타면적	15209	상	15501	15501	행드	16100	◎	16100	◎
15107	가타면적	15210	가타면적	15502	15502	벨	16101	◎	16101	◎
15108	가타면적	15211	나	15503	15503	발부	16102	◎	16102	◎
15109	가타면적	15212	노	15504	15504	로이	16103	◎	16103	◎
15110	가타면적	15213	비	15505	15505	도	16104	◎	16104	◎
15111	가타면적	15214	가타면적	15506	15506	구	16105	◎	16105	◎
15112	가타면적	(15215)	제	15507	15507	항	16106	◎	16106	◎
15113	가타면적	15216	모	15508	15508	안	16107	◎	16107	◎
15114	가타면적	15217	화	15509	15509	장	16108	◎	16108	◎
15115	가타면적	15218	학	15510	15510	타	16109	◎	16109	◎
15116	가타면적	(15219)	가	15511	15511	탈	16110	◎	16110	◎
15117	가타면적	15220	가	15512	15512	가	16111	◎	16111	◎
15118	가타면적	(15221)	가	15513	15513	스	16112	◎	16112	◎
15119	가타면적	15300	◎	15514	15514	경	16113	◎	16113	◎
15120	가타면적	15301	◎	15515	15515	이	16114	◎	16114	◎
15121	가타면적	15302	◎	15601	15601	기	16115	◎	16115	◎
15122	가타면적	15303	◎	15602	15602	미	16117	◎	16117	◎
15123	가타면적	15304	◎	15603	15603	용	16200	◎	16200	◎
15124	가타면적	15305	◎	15604	15604	위	16201	◎	16201	◎
(15125)	가타면적	15306	◎	15605	15605	비	16202	◎	16202	◎
15200	◎	15400	◎			비				
15201	◎	15401	◎			비				
15202	◎	15402	◎			비				
15203	◎	15403	◎			비				

16203	화	분	16309	도	16309	◎	16606	◎	16606	◎
16204	화	수	16310	화	16310	◎	16607	◎	16607	◎
16205	화	수	16311	화	16311	◎	16608	◎	16608	◎
16206	화	수	16312	화	16312	◎	16609	◎	16609	◎
16207	화	수	16313	화	16313	◎	16610	◎	16610	◎
16208	화	수	16314	화	16314	◎	16611	◎	16611	◎
16209	화	수	(16315)	화	(16315)	◎	16612	◎	16612	◎
16210	화	수	(16400)	화	(16400)	◎	16613	◎	16613	◎
16211	화	수	16401	화	16401	◎	16614	◎	16614	◎
16212	화	수	16402	화	16402	◎	16615	◎	16615	◎
(16213)	화	수	16403	화	16403	◎	16616	◎	16616	◎
16214	화	수	16404	화	16404	◎	16617	◎	16617	◎
16215	화	수	16405	화	16405	◎	16618	◎	16618	◎
16216	화	수	16406	화	16406	◎	16619	◎	16619	◎
16217	화	수	16407	화	16407	◎	16620	◎	16620	◎
16218	화	수	16408	화	16408	◎	16621	◎	16621	◎
16219	화	수	16409	화	16409	◎	16622	◎	16622	◎
(16220)	화	수	16410	화	16410	◎	16623	◎	16623	◎
16300	◎	16500	◎	16411	16411	◎	16624	◎	16624	◎
16301	◎	16501	◎	16412	16412	◎	16625	◎	16625	◎
16302	◎	16502	◎	16413	16413	◎	16600	◎	16600	◎
16303	◎	16503	◎	16501	16501	◎	21000	◎	21000	◎
16304	◎	16504	◎	16502	16502	◎	22000	◎	22000	◎
16305	◎	16505	◎	16503	16503	◎	23000	◎	23000	◎
16306	◎	16506	◎	16504	16504	◎				
16307	◎	16507	◎	16505	16505	◎				
16308	◎	16508	◎							

◎표가 있는 품목은 반드시 검토하여야 하며 나머지 품목에 대하여는 구입한 품목이 없는지를 확인하여 기입할 것.

가구 번호	조사원인	부호	품명	수량	합계	월의중	월의중	조사원인	부호	품명	수량	합계	월의중	월의중	조사원

구분	원금	기타지출	원기타수입	원기타수입의중간
수입				
지출				
잔액				

2. 소 득

4. 저 축

3. 비 소 비 지 출

기타수입의중간

조세 및 기부금	기타수입의중간
지출	기타수입의중간
기타	기타수입의중간

품목번호	품목명	단위	전기가격			금기가격			차			등락사유
			상월	전월	전년동월	상월	전월	전년동월	상월	전월	전년동월	
50202	비누(세탁)	1개										
50203	비누(가루)	1포										
50204	치약	1개										
50205	칫솔	1개										
50206	화장크림	1갑										
50207	화장분	1갑										
50208	화장수	1병										
50209	포마드	1갑										
50210	화장지	1개										
50211	살충제	1통										
50212	미용료	1회										
50213	미용료(고데)	1회										
50214	미용료(파마)	1회										
50215	목욕료(성인)	1회										
50216	목욕료(아동)	1회										
50301	비스표(좌석)	1회										
50302	비스표(일반)	1회										
50303	비스표(고속)	1회										
50304	택시표(기본)	1회										
50305	택시표(초파)	1회										
50306	기차표(완행)	1회										
50307	기차표(급행)	1회										
50308	항공료	1회										
50309	선박료	1회										
50310	비스표(일반학생)	1회										

품목번호	품목명	단위	전기가격			금기가격			차			등락사유
			상월	전월	전년동월	상월	전월	전년동월	상월	전월	전년동월	
50311	비스표(좌석학생)	1회										
50401	전화료(기본)	1개월										
50402	전화료(도수)	1개월										
50403	우편료	1통										
50404	전보료	1회										
50405	소포료	1개										
50501	교과서(국민학교)	4권										
50502	교과서(중학교)	2권										
50503	교과서(고등학교)	2권										
50504	국민학교교과서	1분기										
50505	남입급(공중)	1분기										
50506	남입급(사중)	1분기										
50507	남입급(공고)	1분기										
50508	남입급(사고)	1분기										
50509	남입급(국배)	1학기										
50510	남입급(사배)	1학기										
50511	남입급(전문)	1학기										
50512	유치원비	1개월										
50513	참고서	1권										
50514	학원비(입시)	1개월										
50515	학원비(자동차)	1개월										
50516	학원비(양재)	1개월										
50517	도서관비(국공립)	1회										
50518	도서관비(사립)	1회										
50601	불편	1개										

품목번호	품목명	단위	전기가격			금기가격			차			등락사유
			상월	전월	전년동월	상월	전월	전년동월	상월	전월	전년동월	
50602	연필	1다스										
50603	만년필	1개										
50604	노트(대)	1권										
50605	노트(소)	1권										
50606	도화지	1장										
50607	시험지	20매										
50608	봉투	10장										
50609	크레파스	1갑										
50610	잉크	1병										
50701	신문구독료	1개월										
50702	주간지	1부										
50703	월간지(여성지)	1권										
50704	월간지(애중지)	1권										
50705	월간지(아동지)	1권										
50706	월간지(종합지)	1권										
50707	월간지(문예지)	1권										
50708	영화관람료(영화)	1회										
50709	영화관람료(외화)	1회										
50710	텔레비전시청료	1개월										
50711	고공임장료	1회										
50712	사전	1조										
50713	필름	1통										
50714	장난감	1개										
50715	삼륜자전거	1대										
50716	운동기구	1개										

품목번호	품목명	단위	전기가격			금기가격			차			등락사유
			상월	전월	전년동월	상월	전월	전년동월	상월	전월	전년동월	
50717	에코드판	1장										
50801	담배(한강)	1갑										
50802	담배(청자)	1갑										
50803	담배(신탄진)	1갑										
50804	담배(마고더)	1갑										
50805	담배(스포츠)	1갑										
50806	담배(금관)	1갑										
50807	담배(아리랑)	1갑										
50808	담배(희망)	1갑										
50809	담배(백조)	1갑										
50810	담배(금잔니)	1갑										
50901	행정수수료(주민등록증분)	1통										
50902	행정수수료(호적초본)	1통										
50903	행정수수료(인감증명)	1통										
50904	행정수수료(별적증명서)	1통										
물가동향 :												

지도 번호	구시군번호	동읍·면명 및 번호	조사구번호	조사표인면번호
*	*	*	*	*

지정통계
제 14호
1971 도 소매업 센서스
조사표 (가)
(상용고용원이 있는 도 소매업 사업체용)

*	산업 분류	차분규모도	가점년월구분	매장면적규모	종업원규모
*	*	*	*	*	*

1. **법적조직형태 및 자본금** 혹은 **가. 법외조직형태**는 무엇입니까?
나. <법인인 경우> 자본금 또는 **자본**은 얼마나 됩니까?

1. 개 인	2. 법 인
정액의 액	정액의 액

2. **사업체의 본지점별** 이 사업체의 본지점별 구분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1. 지점이 없는 사업체이다.
2. 지점이 있는 사업체이다.
3. 지점이다.

3. **개점년월** 언제 개점했습니까?
1. 1945년 8월
2. 19__년__월

4. **영업종업원기간** 몇년 이상 영업한 기간은 몇개 월입니까?
1. 12개월
2. 12개월 미만 → __개월

5. **매장면적** 매장면적은 몇평입니까?
__평 __간 __정

6. **영업형태** 영업형태는 다음중 어디에 해당 됩니까?
1. 무역업
2. 중계업 및 대리업
3. 일반도매업
4. 소매업

7. **종업원수** 7월 1일 현재 종업원은 몇명입니까?
가. 자영업주 및 주무가족중서
나. 상용고용원
다. 임시 및 일일고용원
라. 계

남	여	계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8. **구입가격차별** 백분비
지난 1년간 구입한 상품은 다음의 가격차별도 몇%나 됩니까?
(각으로 부러는 5항 1 무역업에 표시된 경우에 한한다.)

가. 국외로부터	나. 생산업으로부터
라. 도매업으로부터	마. 계
1.0	1.0
0	0
%	%

지 도 인 (이 들) ㉞ 조 사 인 (이 들) ㉟

9. **판매액** (수수로 및 수신로 포함) 가. 지난 1년 중 판매가 가장 많은 판매액이 어느 판매액에 해당하십니까?
나. 지난 1년 중 판매가 가장 적은 판매액이 어느 판매액에 해당하십니까?
다. 지난 1년 중 판매액의 편차는? 라. 지난 1년간의 총판매액은?

정액의 액	정액의 액	정액의 액	정액의 액
정액의 액	정액의 액	정액의 액	정액의 액

10. **재고액** 7월 1일 현재 가지고 있는 상품용액으로 표시하면 얼마나 됩니까?

정액의 액	정액의 액	정액의 액	정액의 액
-------	-------	-------	-------

11. **도매업의 가격차별** 백분비
정액의 액에 관계없이 지난 1년간의 판매액 중 도매업은 가격차별도 몇%나 됩니까?
(각으로 부러는 5항 1 무역업에 표시된 경우에 한한다.)

가. 국외로부터	나. 도매업자에게	다. 소매업자에게	라. 공장 공장가 판매가	마. 계
1.0	1.0	1.0	1.0	1.0
%	%	%	%	%

12. **판매방법별** 백분비
지난 1년간의 판매는 판매방법별로 몇%나 됩니까?

가. 원금판매	나. 외상판매 및 기타
1.0	1.0
%	%

13. **의상판매액** 7월 1일 현재 의상으로 판매한 의상판매액은 얼마나 됩니까?

정액의 액	정액의 액	정액의 액	정액의 액
-------	-------	-------	-------

14. **영업건비** 지난 1년 중 영업에는 얼마나 됩니까?
가. 인건비
나. 기타경비
다. 계

정액의 액	정액의 액	정액의 액	정액의 액
-------	-------	-------	-------

지 도 인 (이 들) ㉞ 조 사 인 (이 들) ㉟

15. **품목군별** 백분비
지난 1년간 판매한 상품의 백분비를 품목군별로는 몇%나 됩니까?

도매 상품군	%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계	비 고
00 곡 물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계	비 고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시도번호	구시군번호	동읍면리번호	조사구번호	조사표일련번호
*	*	동읍면		

지정동계
제 14호

1971 도소매업 센서스
조사표(나)
(상용고용원이 없는 도소매업 사업체용)

산업분류	계정년월	매장면적	종업원규모
*	*	*	*

1. **개점년월**
이사업체는 언제 개점하였습니까?
1. 1945년 8월
2. 19__년__월

2. **연중 영업기간**
지난 1년중 영업을 한 기간은 몇개월
이나 됩니까?
1. 12개월
2. 12개월 미만 → __개월

3. **매장 면적**
매장면적은 몇평이나 됩니까?
→ 백 십 평

4. **영업형태**
영업형태는 다음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1. 무 영업
2. 중개업 및 대리업
3. 일관도매업
4. 소매업

5. **종업원수**
7월 1일 현재 종업원은 몇명이나 됩니까?
가. 자영업주 및 무급가족 종사자
나. 임시 및 일일고용원
다. 계-----

남	여	계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6. **판매액 (수수로 및 수선로 포함)**
지난 1년중 하루평균 판매액은 얼마
나 됩니까?
천만 백만 십만 만 백만

7. **재고액**
7월 1일 현재 가지고 있는 상품금액
액으로 표시하면 얼마나 됩니까?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천

지 도 원 (이름) (인)
조 사 원 (이름) (인)

8. 주요취급 상품군 가장 많이 취급하는 상품군은 무엇입니까? (하나만 표시한다)		24 칠구류	54 도로, 안료	85 판유리
00 곡물	31 수송용기계기구	55 염료	86 연료유류	87 주유소
01 야채 및 과일	32 정밀기계기구	56 인쇄잉크	57 비료	88 연탄
02 기타 농산물	33 전기 통신기계기구	57 석탄	58 기타 화학제품	89 기타 연료
03 가축가금의 고기 (해산물 제외)	34 건축재료	28 금속광물재료	59 납액·의의제조	90 울동용구
04 원피, 원모	35 가구, 전구 및 전기	29 비금속광물재료	60 납액·의의	91 오락용품
05 가축 및 가금	36 종이 및 종이제품	30 일반기계기구	61 납액·의의	92 장난감
06 수산물	37 철물	31 수송용기계기구	62 직물	93 사진기 및 부속품
07 선량	38 기타 (종모, 종자, 문방구, 서적, 미술품, 골동품, 악기, 보석류등)	32 정밀기계기구	63 가죽신제조	94 시계
08 밀가루	39 기타 (종모, 종자, 문방구, 서적, 미술품, 골동품, 악기, 보석류등)	33 전기 통신기계기구	64 가죽신	95 안경 및 부분품
09 장류(조미료 및 향신료포함)	40 기타 (종모, 종자, 문방구, 서적, 미술품, 골동품, 악기, 보석류등)	34 건축재료	65 고무신	96 약기
10 과자, 빵, 실타파자	41 곡물	35 가구, 전구 및 전기	66 가방	97 서적
11 기타 식료품	42 야채 및 과일	36 종이 및 종이제품	67 철구	98 문방구
12 술	43 기타 농산물	37 철물	68 기타의류 및 장신품	99 귀금속
13 청량음료	44 쇠고기 및 돼지고기	38 기타 (종모, 종자, 문방구, 서적, 미술품, 골동품, 악기, 보석류등)	69 가구제조	XX기타
14 의약품	45 가금육류	39 기타 (종모, 종자, 문방구, 서적, 미술품, 골동품, 악기, 보석류등)	70 가구	비고
15 화학제품	46 가축	40 기타 (종모, 종자, 문방구, 서적, 미술품, 골동품, 악기, 보석류등)	71 건축구	
16 화학제품	47 기타 축산물	41 곡물	72 고무품	
17 섬유원료	48 수산물	42 야채 및 과일	73 철물	
18 선	49 음료품 (술 및 청량음료)	43 기타 농산물	74 도자기 및 유리용기	
19 직물	50 식료품	44 쇠고기 및 돼지고기	75 가정용 전기기계기구	
20 신발	51 기타 음식료품	45 가금육류	76 가정용 기계기구	
21 가방	52 의약품	46 가축	77 농기구	
22 기타류	53 화장품	47 기타 축산물	78 자동차 및 부속품	
23 우산, 양산		48 수산물	79 모터사이클 및 부속품	
		49 음료품 (술 및 청량음료)	80 차전자 및 부속품	
		50 식료품	81 기타 수송용기계기구	
		51 기타 음식료품	82 전기 및 통신기계기구	
		52 의약품	83 기타기계기구	
		53 화장품	84 일반건축재료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시도 번호	구시군 번호	동읍면명 및 번호
※	※	동읍면
		※

1971 도소매업센서스
조사표 (다)
(음식숙박업용)

지정통계
제 14 호

조사구 번호	조사표 일련 번호
산 업 분 류	개점년월 구분
※	※
	종업원 규모
	※

1. 법적조직 형태
법적조직형태는 무엇입니까?

1. 개 인
2. 법 인

2. 개점 년월
이 사업체는 언제 개점 하였습니까?

1. 1945년 8월 전
2. 19__년__월

3. 연중 영업기간
지난 1년중 영업을 한 기간은 몇개월입니까?

1. 12개월
2. 12개월미만 → _____개월

4. 종업원 수
7월 1일 현재 종업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가. 자영업주 및 무급가족 종사자 →

나. 상용 고용원 →

다. 임시 및 일일 고용원 →

마. 무급 고용원 →

남	여	계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지 도 원 (이 름)	조 사 원 (이 름)
①	①

5. 판매액 또는 수입액

가. 지난 1년중 판매 또는 수입이 가장 부진한 달은 언제이며 또 그때의 판매액은?

나. 지난 1년중 판매 또는 수입이 가장 활발한 달은 언제이며 또 그때의 판매액은?

다. 지난 6월 한달동안의 판매액 또는 수입액은?

라. 지난 1년간의 판매액 또는 수입액은?

월		월		월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6. 연간 인건비
(4의 나와 다의 경우에 한하여)
지난 1년간 고용한 상용 및 임시, 일일 고용원에게 지급한 인건비는 얼마나 됩니까?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원

7. 업 종
다음 업종중 어디에 해당 됩니까?

- 한식 식당
- 중국 식당
- 일식 점
- 양식 점
- 기타 식당
- 한식 요정
- 카바레, 뽀, 비어홀, 싸롱, 나이트클럽

8. 기타 주점

- 빵, 생과자, 떡집
- 다 호 방
- 여 관
- 하숙 및 여인숙

비 고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1971 광공업통계조사표 (I)

조사구번호	조사표번호	사업체번호	산업분류	
※	※	※		

1. 사업체명 및 소재지: 사업체명 _____
 대표자명 _____ 전화 _____
 시 구 로·동 가
 시 구 동 번지 호
 도 군 면·읍 리

2. 분사명 및 소재지: 사업체명 _____
 대표자명 _____ 전화 _____
 시 구 로·동 가
 시 구 동 번지 호
 도 군 면·읍 리

3. 창 설 년: 19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4. 조 직 형 태: (가)주식회사() (나)기타법인() (다)개인()

5. 자본금 또는 출자금액 (법인에 한함)
 1971. 12. 31일 현재 불입완료된 자본금을
 기입 하시오.

백	십	억	천	만	십	만	만	천

6. 주요생산품 및 생산공정
 주요생산품: (가) _____ (나) _____ (다) _____
 생산공정: _____

7. 사업체 부지면적 (광업 및 채석업 제외) _____ 평(坪)

8. 동력시설 용량
 ※ 사업체가 소유하는 모든 전동기 및 원동기의
 규격표에 표시된 마력수를 기입하여 주시오.

(1)원동기	HP						
(2)전동기	HP						
합 계	HP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조 사

1. 조 사 표 작성년월일	2. 응 답 자 소 속	3. 응 답 자 성 명	4. 조 사 원 기 명 날	5. 지 도 원
19 년 월 일	과			
	전화	인	인	인

심 사

심 사 구 분	1 차	2 차	3 차
중분류담당자인			
심 사 자			
천공 및 검공자			

지정 통계 제 17 호 1970년 광공업 통계조사표 (Ⅱ)

(본사·본점 조사용)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조사구번호 ※	사업체 번호 ☆	산업 분류 ☆	조직 형태 ☆	규모 ☆	자본계층 ☆	창설년 구분 ☆
조사표번호 ※						
1. 본사(본점)명 및 소재지 본사명 _____ 대표자명 _____ 전화 _____ 구 _____ 번 _____ 서울특별시 _____ 구 _____ 동 _____ 가 _____ 번지 _____ 호 _____ 부산직할시 _____ 시 _____ 군 _____ 읍 _____ 동 _____ 리 _____ 도 _____ 군 _____				2. 조직형태 해당번호()안에 ○표 (1)주식회사() (2)기타법인() (3)개인()		
3. 자본금 또는 출자금액(법인에 한함) 1970년 12월 31일 현재로 불입이 완료된 자본금 또는 출자금액(출자금액)을 기입하여 주십시오.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원				6. 연간급여액(본사·본점분에 한함) 본사(본점)의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용자에게 1970년간 노무의 대가로 지급한 총액(불급, 임금, 수당 및 상여금과 그 비환액도 포함)을 기입하여 주십시오.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원		
4. 창 설 년 19 년 월				7. 원재료 및 연료 재고액 (본사·본점분에 한함) 본사(본점)계정에 속하는 원재료 및 연료의 재고액을 장부가격에 의하여 기입하여 주십시오. 구 분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원 연초(年初) _____ 연말(年末) _____		
5. 종업원수 (본사 또는 본점 종업원에 한함) 가) 피고용자 (휴업한 월에는 피고용자수 앞에 △표) ① 3월말 ② 6월말 ③ 9월말 ④ 12월말 ⑤ 계(①+②+③+④) ⑥ 조업기간중 평균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나) 사업주 및 무급 종업원 (연말 현재) 명 다) 합 계 (⑥ + 나) 명				8. 유형고정자산의 연간 취득액 및 처분액 (본사·본점분에 한함) 본사(본점)계정에 속하는 유형고정자산에 대하여 1970년 취득설치 및 증축, 개축을 위하여 지출된 총비용과 매각, 양도, 재해 등에 의한 유형고정자산의 처분액 또는 손해액을 각각 해당란에 기입하여 주십시오. 구 분 가) 연 간 취 득 액 나) 연간처분액 및 손 해 액 신규취득액 및 증개축액 중 고취득액 손 해 액 십억 천백 십만 천원 십억 천백 십만 천원 십억 천백 십만 천원 1차 2차 3차		
9. 조사표 작성근거 해당 ()안에 ○표 가) 재 고 액 나) 유형고정자산 ① 장 부 () ① 장 부 () ② 일부기액 () ② 일부추정 () ③ 기 액 () ③ 추 정 () ☆ 심 사 자 탈 인 1차 2차 3차				10. 관할사업체 명부 귀사(점)에 속하는 광업 및 제조업 사업체를 기입하여 주십시오. (조업, 휴업은 해당란에 ○표) 사 업 체 명 대표자명 소재지 주요생산품명 종업원수 조업 휴업 ① _____ ② _____ ③ _____ ④ _____ ⑤ _____ ⑥ _____		
비 고 _____				실 일 사 자 _____ 응 답 자 명 _____ 조 사 원 기명날인 _____ 인		

주(註) 1. ※란은 조사원이 기입하시요.
2. ☆란은 기입하지 마십시오.
3. 5의 ⑥은 휴업한달(△표란)을 제외한 나머지 란의 수(4-△표란의 수)로 평균합(=조업월의 종업원수 합계÷(4-△표란의 수))

국 부 통 계 조 사

1. 조사실시기관

지정번호	의정통계의명칭	
제21호	국부통계조사	
제21호의1	정부자산부문조사	한국은행
제21호의2	법인자산부문조사	한국산업은행
제21호의3	개인기업자산부문조사	중소기업은행
제21호의4	가계자산부문조사	경제기획원

2. 조사시점 및 실사기간

부분별	조사시점	실사기간
정법개개	1968.12.31	1969.4~9
법인체	"	"
가	1968.10.31	1968.11~12
대	1968.12.31	1970.1~8

3. 조사방법

구분	조사대상	조사방법	조사대상
A. 일반정부	전수조사	가	계
B. 정부기업	"	●	계
C. 정부관리기업체	"	"	계
D. 법인자산	"	"	계
E. 개인기업 및 비법인단체자산	표본조사 및 전수조사	"	계
F. 일반가구	표본조사	"	계
G. 대외순자산	기준통계이용추계	"	계

指定統計 第21-4号

經濟企劃院

秘

家 計 部 門 調 査 票

1968年 國家統計調查員 위원

-1968年 10月 31日 現在-

調 査 家 口 所 在 地 址	調 査 區 番 号
特別市 區 洞(路) 街 號	
道 市 郡 區 洞 番 地 統 號 號 號	

家口一連番号	管轄区分	家口主産業	家口人員	居住種別

作成年月日 및 申告者区分	1968.11. .作成 申告
---------------	-----------------

※	担当者
内容検査	①
符号記入	①
筆 孔	①
捺 孔	①
	①
	①

指導員名	①
調査員名	①

I 建 物

棟數	建築 ² 的造	層數 ³ 及 層數坪	建築, 修 改, 移入時 期	附入 ⁵ 區分 의 總年數	6 ※	7 ※	8 ※	※
1		幾 坪	年	年				
2		幾 坪	年	年				
3		幾 坪	年	年				
4		幾 坪	年	年				
5		幾 坪	年	年				
	# I							

II 耐 久 消 費 財

品 目	品 種	新古 ³ 區分	數 ⁴	時 ⁵ 價	※
① (옷장·장롱·이불장·세탁기)의 장					
② (식탁·의자·의탁물)의 화					
③ (의자)의 의자					
④ (의자·의탁물·의탁물)의 의자					
⑤ 의자					
⑥ 의자					
⑦ (男女紳士服女用) 의자					
⑧ (男女紳士服女用, 草履)의 의자					
⑨ (男女紳士服女用, 스킨)의 의자					
⑩ 의자					
⑪ (의자·의탁물·의탁물)의 의자					
⑫ (의탁물)의 의자					
⑬ (의탁물)의 의자					
⑭ (의탁물)의 의자					
⑮ (의탁물)의 의자					
⑯ (의탁물)의 의자					
⑰ (의탁물)의 의자					
⑱ (의탁물)의 의자					
⑲ (의탁물)의 의자					
⑳ (의탁물)의 의자					
㉑ (의탁물)의 의자					
㉒ (의탁물)의 의자					
㉓ (의탁물)의 의자					
㉔ (의탁물)의 의자					
㉕ (의탁물)의 의자					
㉖ (의탁물)의 의자					
㉗ (의탁물)의 의자					
㉘ (의탁물)의 의자					
㉙ (의탁물)의 의자					
㉚ (의탁물)의 의자					
㉛ (의탁물)의 의자					
㉜ (의탁물)의 의자					
㉝ (의탁물)의 의자					
㉞ (의탁물)의 의자					
㉟ (의탁물)의 의자					
㊱ (의탁물)의 의자					
㊲ (의탁물)의 의자					
㊳ (의탁물)의 의자					
㊴ (의탁물)의 의자					
㊵ (의탁물)의 의자					
㊶ (의탁물)의 의자					
㊷ (의탁물)의 의자					
㊸ (의탁물)의 의자					
㊹ (의탁물)의 의자					
㊺ (의탁물)의 의자					
㊻ (의탁물)의 의자					
㊼ (의탁물)의 의자					
㊽ (의탁물)의 의자					
㊾ (의탁물)의 의자					
㊿ (의탁물)의 의자					

I, ※ 欄에 記入하지 않겠

4

品 目	品 種	新古 ³ 區分	數 ⁴	時 ⁵ 價	※
① (의탁물)의 의자					
② (의탁물)의 의자					
③ (의탁물)의 의자					
④ (의탁물)의 의자					
⑤ (의탁물)의 의자					
⑥ (의탁물)의 의자					
⑦ (의탁물)의 의자					
⑧ (의탁물)의 의자					
⑨ (의탁물)의 의자					
⑩ (의탁물)의 의자					
⑪ (의탁물)의 의자					
⑫ (의탁물)의 의자					
⑬ (의탁물)의 의자					
⑭ (의탁물)의 의자					
⑮ (의탁물)의 의자					
⑯ (의탁물)의 의자					
⑰ (의탁물)의 의자					
⑱ (의탁물)의 의자					
⑲ (의탁물)의 의자					
⑳ (의탁물)의 의자					
㉑ (의탁물)의 의자					
㉒ (의탁물)의 의자					
㉓ (의탁물)의 의자					
㉔ (의탁물)의 의자					
㉕ (의탁물)의 의자					
㉖ (의탁물)의 의자					
㉗ (의탁물)의 의자					
㉘ (의탁물)의 의자					
㉙ (의탁물)의 의자					
㉚ (의탁물)의 의자					
㉛ (의탁물)의 의자					
㉜ (의탁물)의 의자					
㉝ (의탁물)의 의자					
㉞ (의탁물)의 의자					
㉟ (의탁물)의 의자					
㊱ (의탁물)의 의자					
㊲ (의탁물)의 의자					
㊳ (의탁물)의 의자					
㊴ (의탁물)의 의자					
㊵ (의탁물)의 의자					
㊶ (의탁물)의 의자					
㊷ (의탁물)의 의자					
㊸ (의탁물)의 의자					
㊹ (의탁물)의 의자					
㊺ (의탁물)의 의자					
㊻ (의탁물)의 의자					
㊼ (의탁물)의 의자					
㊽ (의탁물)의 의자					
㊾ (의탁물)의 의자					
㊿ (의탁물)의 의자					

III. 耐 久 生 產 財

品 目	品 種	新古 ³ 區分	數 ⁴	時 ⁵ 價	※
① 原 助 機					
② 織 水 機					
③ 噴 霧 機					
④ 推 粉 機					
⑤ 製 麵 機					
⑥ 製 麵 機					
⑦ (牛馬馬房)의 製 麵 機					
⑧ 製 麵 機					
⑨ 製 麵 機					
⑩ 製 麵 機					
⑪ 製 麵 機					
⑫ 製 麵 機					
⑬ 製 麵 機					
⑭ 製 麵 機					
⑮ 製 麵 機					
⑯ 製 麵 機					
⑰ 製 麵 機					
⑱ 製 麵 機					
⑲ 製 麵 機					
⑳ 製 麵 機					
㉑ 製 麵 機					
㉒ 製 麵 機					
㉓ 製 麵 機					
㉔ 製 麵 機					
㉕ 製 麵 機					
㉖ 製 麵 機					
㉗ 製 麵 機					
㉘ 製 麵 機					
㉙ 製 麵 機					
㉚ 製 麵 機					
㉛ 製 麵 機					
㉜ 製 麵 機					
㉝ 製 麵 機					
㉞ 製 麵 機					
㉟ 製 麵 機					
㊱ 製 麵 機					
㊲ 製 麵 機					
㊳ 製 麵 機					
㊴ 製 麵 機					
㊵ 製 麵 機					
㊶ 製 麵 機					
㊷ 製 麵 機					
㊸ 製 麵 機					
㊹ 製 麵 機					
㊺ 製 麵 機					
㊻ 製 麵 機					
㊼ 製 麵 機					
㊽ 製 麵 機					
㊾ 製 麵 機					
㊿ 製 麵 機					

IV. 動 産 物

品 目	品 種	新古 ³ 區分	數 ⁴	時 ⁵ 價	7※	※
① 乳 牛						
② 乳 牛						
③ 乳 牛						
④ 乳 牛						
⑤ 乳 牛						
⑥ 乳 牛						
⑦ 乳 牛						
⑧ 乳 牛						
⑨ 乳 牛						
⑩ 乳 牛						
⑪ 乳 牛						
⑫ 乳 牛						
⑬ 乳 牛						
⑭ 乳 牛						
⑮ 乳 牛						
⑯ 乳 牛						
⑰ 乳 牛						
⑱ 乳 牛						
⑲ 乳 牛						
⑳ 乳 牛						
㉑ 乳 牛						
㉒ 乳 牛						
㉓ 乳 牛						
㉔ 乳 牛						
㉕ 乳 牛						
㉖ 乳 牛						
㉗ 乳 牛						
㉘ 乳 牛						
㉙ 乳 牛						
㉚ 乳 牛						
㉛ 乳 牛						
㉜ 乳 牛						
㉝ 乳 牛						
㉞ 乳 牛						
㉟ 乳 牛						
㊱ 乳 牛						
㊲ 乳 牛						
㊳ 乳 牛						
㊴ 乳 牛						
㊵ 乳 牛						
㊶ 乳 牛						
㊷ 乳 牛						
㊸ 乳 牛						
㊹ 乳 牛						
㊺ 乳 牛						
㊻ 乳 牛						
㊼ 乳 牛						
㊽ 乳 牛						
㊾ 乳 牛						
㊿ 乳 牛						

I, I # II, V

통계법의 규정에 따라 이 조사표에
기재되는 내용은 통계목적에만 사용
하며 그 비밀은 절대 보장됩니다.

광공업동태조사표 (I-A)

197 년 월분

사업체명 및 소재지	사업체명	전화	구	번
	대표자명	로·동	가	번지의
	시	읍	리	호
	도	면		
본사명 및 소재지	본사명	전화	구	번
	대표자명	로·동	가	번지의
	시	읍	리	호
	도	면		

일반적인 유의 사항

- (1) 반드시 폭쇄 또는 청쇄의 「링크」나「블렌」으로 기입하시고 사업체명, 대표자명 등은 한자로써 주십시오.
- (2) 숫자는 반드시 1, 2, 3...과 같은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 (3) 모든 수량은 지정된 단위를 사용하여 자리를 맞추고 단위 미만은 4사 5입 하여 주십시오.
- (4) ※ 표가 있는 곳은 기입하지 마십시오.

제출기한	매월 15일	까지
제출기관	경제기획원조사통계국	

조사사

조사표 작성년월일	2. 응답자소속	3. 응답자성명	4. 조사원기명	5. 지도구책임자
197년 월 일	과	인	인	인
	전화()			

실사

실사구분	1차	2차	3차
중분류담당자별인			
실사자			
원문 및 검공자			

전기업동태통계조사표 (I-B)

(19 년 월조)

경제기획원

1. 이 조사표에 기재된 내용은 통계목적에만 사용하고자 하며 과세나 수사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2. 이 조사표는 늦어도 매월 20일까지 통계기획원 조사통계국에 발송하여야 합니다.
3. 이면의 기입요령을 참조하십시오.

조사구	산업분류
—	51110

사업체명 대표자명

소재지 전화 (-)

도	총발전량 (KWH)	자가소비전량 (KWH)	순발전량 (KWH)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제주도			
계			

총합순발전량 (KWH)		수용전력량	
(수) 1차	2차(송전손실 및 배전손실) 합계	분	부
		가	수용전력량(KWH)
		농림수산업	
		제조업	
		서비스업	
		기타	
		계	

고용 및 급여

1. 생산종업원: 생산에 직접 관련이 있는 원장직업에 주로 종사하는 종업원
 2. 사무직종업원: 생산종업원 이외의 모든 종업원
 3. 월평균종업원: 월평균 근무인원수
 4. 월평균근로액: 월평균 근무자에게 근무 몇 개월로 지급한 임금, 봉급, 상여금 등의 총액

생산종업원 월평균종업원 월평균근로액	월평균종업원수	월평균근로액 (천원)
사무직종업원 월평균종업원 월평균근로액	월평균종업원수	월평균근로액 (천원)
기타종업원 월평균종업원 월평균근로액	월평균종업원수	월평균근로액 (천원)
계	월평균종업원수	월평균근로액 (천원)

작성년월일 응답자성명 및 날인

19 년 월 일

(이면참조)

기 입 요 령

I 일반사항

1. 청색 또는 흑색인크로 명료하게 기입하여 주십시오.
2. 숫자는 아라비아숫자로 기입하여 주십시오.
3. 각수량의 단위미만과 금액의 천원미만은 4사 5입하여 주십시오.
4. 기타 상세한 것은 조사원에게 문의하여 주십시오.

II 주요항목의 정의

발전량

1. 총발전량: 해당 시 도에 위치한 각종발전소의 월중 발전량(수전분포합)
2. 자가소비전력량: 발전소가 월중에 발전을 위하여 소비한 전력량(발전소내 전력량)
3. 순발전량: 총발전량-자가소비전력량

총합순발전량

1. 총합순발전량: 송전과 배전과정에서 생긴 월중의 순발전량

수용전력량

1. 가정용: 일반가정에 공급한 전력량
2. 산업용: 각산업에 대하여 공급한 전력량으로서 농림수산업, 광업, 제조업과 기타 사업(상업, 서비스, 전철 등)으로 분류합니다.
3. 기타: 가정용, 산업용을 제외한 공급전력량(관, 군, UN군, 사업자용등)

지정통계
제 23 호

통계법의 규정에 따라 이 조사표에
기재되는 내용은 통계목적에만 사용
하며 그 비밀은 철대 보장됩니다.

광공업동태조사표 (II-A)

197 년 월분

사업체명및소재지	사업체명	전화	국	번
	대표자명	시	구·동	번지의 호
본사명 및 소재지	본사명	로·동	가	번지의 호
	대표자명	시	구·동	번지의 호
		전화	국	번

일반적인 유의 사항

- 반드시 품목 또는 청색의 「링크」나「블렌」으로 기입하시고 사업체명, 대표자명 등은 한자로 써 주십시오.
- 숫자는 반드시 1,2,3...과 같은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 모든 금액은 지정된 단위를 사용하여 자리를 맞추고 단위 미만은 4사 5입하여 주십시오.
- ※ 표가 있는 곳은 기입하지 마십시오.

제출기한 매월 15일 까지

제출기관 경제기획원조사통계국

조사사

1. 작성년월일	2. 응답자소속	3. 응답자성명	4. 조사원기명 날인	5. 지도구책임자확인
197 년 월 일	과	인	인	인

실사

실사구분	1 차	2 차	3 차
중분류담당자날인			
실사자			
원공 및 검공자			

조사구번호	사업체번호	산업분류	종업원규모 ※	유고사항 ※	사업체명	(전화:)
-------	-------	------	---------	--------	------	--------

- 제품**
1. 출하액(판매액) : 생산에 사용(의상판매 포함), 수출, 타공장의 반출, 교환 또는 선물용 그리고 사무용 또는 급여용 등으로 출고한 제품출하가격(판매가격)으로 계산한 금액.
 2. 원초제조액 : 원초에 사업체가 보유하였던 제품의 제조액(장부가액 또는 생산원가 기준)
 당월초제조액=전월말잔제조액 + 당월말제조액-이익원초제조액
 3. 수탁제조 또는 수리수입액 : 수탁제조수입액은 원재료 또는 반제품을 타사업체로부터 공급받아 가공해 주고 그 월중 기성고분에 대하여 받은 수입액을 말한다. 수리수입액은 타인의 소유물을 수리해 주고 받은 수입액을 말한다.
 4. 과부족보정액 : 일중 회계, 도난등의 계산에 의하여 전산처분된 금액과 재물조사시 발견된 증감액 및 판매한 제품중 반송 등에 의해 발생한 증감액.
 5. 기타 : 제조과정에서 생긴 부산물

※ 추출 간격	구 분	월초제품제조액 (전월말제조액)												출하액 (판매액)												월말제품제조액												과부족보정액												※ 생 산 액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완 제 품	수탁제조 및 수리수입액																																																												
기 타																																																													
합 계 ※																																																													

**※
추출
간격**

고용및급여

1. 생산종업원 : 생산에 직접 관련이 있는 현장직업에 주로 종사하는 종업원
2. 사무및기타 : 생산종업원을 제외할 모든 종업원
3. 일반종업원수 : 일반원채 피고용인수
4. 원종업원근무인원수 : 일반 근무인원의 월중누계
5. 급여액 : 월중에 피고용자에게 근무및가르 지급한 임금, 봉급, 상여금등의 총액

월말 종업원수	월중근무인원수	월중 급여액															
피고용 생산 종업원	간	천	백	십	일	천	백	십	일	천	백	십	일	천	백	십	일
사무및기타종업원	간	천	백	십	일	천	백	십	일	천	백	십	일	천	백	십	일
합	간	천	백	십	일	천	백	십	일	천	백	십	일	천	백	십	일

적	출하액												증감액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요																								
기 타																								

지정통계 제 23호

광공업동태조사표 (II-B)

(1971년 월분)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조사구 및 사업체번호	—	산업분류	규모	※ 유고	※ 타당부여	※ 제출기한	※ 매월 20일까지	※ 제출기관	※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	---	------	----	------	--------	--------	------------	--------	---------------

구분	명칭	칭	소	소재지	대표자명	전화번호
사업체						
본사						

제품번호	품목명	월초제품재고액 (전월말제품재고액) (천원)	출액액 (천원)	월말제품재고액 (천원)	※ 구분 금액
315001	신경계용약				
315002	해열진통제				
315003	소화기계용약				
315004	비타민제				
315005	홀몬제				
315006	자양강장제				
315007	혈액및체액용약				
315008	항생물질제				
315009	의약품				

(주) 제품번호는 정부가격 또는 생산원가, 출액은 판매가격으로 평가하여 주십시오

구분	고용인원		※	
	상용	중용	임시	합계
월말종업원수 (1)	생산	사무및기타	임시	합계
월중연근무원수 (2)				
급여액 (천원)				

※	중요인	증가율
1.	수요사정	
2.	자금사정	
3.	기계시설	
4.	원료사정	
5.	동력사정	
6.	기후사정	
7.	노동사정	
8.	기타사정	

월중종업원수	인
적요	작성 및 표출하여 수치의 증감요인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

작성년월일	1971년 월 일
응답자성명	고 인

(이면참조)

기입요령

I 일방사항

1. 통계법의 규정에 따라 이 조사표에 기재되는 내용은 통계목적에만 사용되며 그 밖은 전혀 보관됩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파세나 복사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2. 형제 또는 가족인크로 발표하게 기입하여 주십시오.
3.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로 기입하여 주십시오.
4. 각 수량의 단위미만은 4.15이하 주십시오.
5. 기타 상세한것은 조사원에게 문의하십시오.
6. ※표가 있는 곳은 기입하지 마십시오.

II 주요품목의 정의

계 품

1. 출하액(판매액등) : 월중에 시판(의상판매 포함) 수출 마중정의의 반출 건본 또는 원물용 그외도 사무용 또는 군이용 등으로 출고한 제품을 출하가격(판매가격)으로 계산한 금액.
2. 월초제품재고액 : 월초에 귀사업체가 보유하고 있던 제품의 재고액(장부가격 또는 생산원가 기준) 당월말제품재고액=이월초제품재고액
3. 파부품금액 : 그 월중에 파제 도난 등의 재난에 의하여 결손처분된 원재료 제품조사시 발견된 증감액을 말하며 판매한 제품은 반출통에 의하여 발생한 증감액도 이에 포함된 증감은 「+」 기호로 표시한 금액을 기재하시고 적요한데 그 사유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특히 반출통중 폐기안제품은 「-」 제출할 수 있는것은 「+」 표시로 하여 폐기안제품은 재고액에서 제외시켜 주십시오.

고용 및 급여

1. 상용종업원 : 일정한 산정기준에 의하여 급여를 받고 있는 모든 종업원을 말하며 비록 임시직원이더라도 하더라도 구 달에 종사하여 작업인수의 반수 이상을 귀사업체에서 근무한 자는 여기에 포함됨.
2. 생산종업원 : 제품의 생산에 직접 관련된 원장직업에 주로 종사하는 종업원.
3. 사무 및 기타종업원 : 생산종업원을 제외한 모든 상용종업원.
4. 임시종업원 : 일용 종업원으로서 그 월중의 작업인수의 반수 이하를 근무한 종업원.
5. 월말종업원 : 월말현재의 피고용자수를 말하며 그 월의 금액제정일 현재로 기입하여도 무방함.
6. 월중연근무원수 : 일별 근무인원의 월중누계.
7. 급여액 : 월중에 피고용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한 임금 부급 상여금등의 총액 (퇴직금, 공상수당등 수반적인 지급액 제외)

생산증가요인

제품의 생산량이 전월과 비교하여 변동이 있을 때에는 주된 요인 2개를 택하여 O표하시고 그 요인에 구체적으로 기입하여 주십시오.

*카드 배수

1970년 농업조사
전수조사표 12. 1
 농업센서스
 농림부
 (서식제-1호)

시	도	구	시	군	동	읍	면	농업조사구번호	농가번호

조사대상구분 (하나만○표)				
농	학	정	종	기
가	교	부	교	타
1	2	3	4	5

0 농가인구 (농가만 조사함)

① 가구원수 (3개월이상 동거 및 동거할 사람)

총 수	만 14세 이상 남	만 14세 미만 여	그 중 농업고용인 남	여

지난 1년간 (1969. 12. 1 ~ 1970. 11. 30)												최종학력은 어디에 속합니까? (하나만 ○표)	어업 (관련한 것에 한함) (해당번호에 ○표)									
농사에 종사한일이 있습니까? (하나만 ○표)				농사 이외에 종사한일이 있습니까? (하나만 ○표)				종사한 분야는 어느 것입니까? (하나만 ○표)														
1개월 미만	1개월 ~ 2개월	2개월 ~ 3개월	3개월 이상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자기집일	6개월 이상 남의 집일	농업 이외의 일	가사	학	기타 (활동자 무직자)	국졸	중졸	고졸	전문 초급대졸	대졸 이상	무학	민물고기 양식	바다고기잡이					
1	2	3	4	1	2	3	4	1	2	3	4	5	1	2	3	4	5	6	7	1	2	3

만 14세 이상 가구원의 이름 (고용인 포함)	경영주와의 관계	연령 (만)	성별 (하나만 ○표)
1	2	3	4
1	2	3	4
2	3	4	5
3	4	5	6
4	5	6	7
5	6	7	8
6	7	8	9
7	8	9	10
8	9	10	11

② 결업 (●의 1~4중 ○표는 농가만조사)

농사이외의 일종 (점업) 수입이 가장 많았던 것은 어느것입니까? (하나만 ○표)

100 00 1 2 3 4 ⇨ ○표가 있으면
 농업수입이 많다 ⇨ 1
 점업수입이 많다 ⇨ 2 (하나만 ○표)

1 토지(농업용)

만령 이상인 경우는 천 단위에 함께 기입한다. → 23,560
 천 백 십 평
 23 5 6 0

① 논

종류	없다 V표	천	백	십	평
경작한 논의 총면적 (102+...+106)	101				
목화 논 또는 재래로 수확 못한 논	102				
벼를 심지 않고 밭작물만 심었던 논	103				
미나리 왕골 연근 인조등을 심었던 논	104				
이모작 논	105				
일모작 논	106				
논 소유관계					
자기 소유 논	107				
남의 개인 논	108				
국 공유지 논 (하천부지등)	109				
논의 물대기					
농지개량조합 구역안에 들어 있는 논	110				
관정 양수장 하천 보 생판등을 이용하여 모내기용에 지장이 없는 논	111				
관정 양수장 하천 보 생판등을 이용해도 물사정이 나쁜 논	112				
천 수 답	113				
합 계 (101과 같음)	114				
경지 정리가 되어 있는 논	115				

② 밭 (과수원 풍합 묘포 기타 나무심은 밭 제외)

종류	없다 V표	천	백	십	평
경작한 밭의 총면적 (117+...+120)	116				
모시 인삼 도라지등을 심었던 밭	117				
일년간 계속하여 사료작물만 심었던 밭	118				
일년간 계속하여 채소만 심었던 밭	119				
기타 일반 밭작물만 심었던 밭	120				
밭 소유관계					
자기 소유 밭	121				
남의 개인 밭	122				
국 공유지 밭 (하천부지등)	123				

③ 과수원 병발 묘포 기타 나무를 심은 밭

(30평이상 집단제한한 것만조사)

종류	없다 V표	천	백	십	평
과수원 병발	124				
묘포					
과수	126				
밭 나무	127				
산 림	128				
관상용	129				
기타나무 심은 밭	130				
합 계 (124+...+130)	131				
소유관계					
자기 소유의 것	132				
남의 개인의 것	133				
국 공유지	134				

④ 목초지

종류	없다 V표	천	백	십	평
목초지 총면적 (136+137)	135				
그 중					
집약초지	136				
간이초지	137				

2 작물

* 표는 재배면적

① 일반작물

종류	없다 V표	천	백	십	평
논 벼	201				
밭 벼	202				
보리	203				
쌀보리	204				
밀	205				
호밀	206				

수확면적
 * 표는 재배면적

종류	없다 V표	천	백	십	평
조	207				
옥수수	208				
기장 수수 콩 메밀	209				
콩	210				
팥	211				
땅콩	212				
녹두 채두 완두 등	213				
고구마	214				
감자	215				
삼	216				
*모시	217				
아마	218				
*인초	219				
왕골	220				
면화	221				
담배	222				
*인삼	223				
기타약초	224				
참깨	225				
들깨	226				
유채	227				
배추	228				
양배추	229				
무우	230				
마늘	231				
파	232				
양파	233				
고추	234				
사료작물	235				

3 가축가금

(가축 가금 양봉은 12.1 현재 사육수 및 봉수)

한우총마리수 (302+305)	없다 V표	301	천	백	십	마리
만 2 세 미 만		302				
그 암 컷		303				
중 수 컷		304				
만 2 세 이 상		305				
그 암 컷		306				
중 수 컷		307				

젖소...1에 O표
고기소...2에 O표

젖소·고기소 (309+312)	없다 V표	308	1	2	천	백	십	마리
만 2 세 미 만		309	1	2				
그 암 컷		310	1	2				
중 수 컷		311	1	2				
만 2 세 이 상		312	1	2				
그 암 컷		313	1	2				
중 수 컷		314	1	2				

하루에 젖 짜는 량	없다 V표	315	kg			
돼 지 (317+318)	없다 V표	316	천	백	십	마리
6 개 월 미 만		317				
6 개 월 이 상		318				
그 중 돈 (번식용)		319				
중 육 돈 (육용)		320				

산 양 (322+323)	없다 V표	321	천	백	십	마리
그 젖 산 양		322				
중 육 용 산 양		323				
하루에 젖 짜는 량		324	kg			

만수이상인 경우는 천 단위에 합쳐 기입한다
→ 23,900

닭	없다 V표	23	5	6	0	천	백	십	마리
50수 미만 사육 수		325							
하루 총 산란 량		326							

50수 이상 사육 수	없다 V표	327							
육 계 용		328							
그 순수 육 계 용		329							
중 기타 육 계 용		330							
산 란 용		331							
그 6 개 월 미 만		332							
중 6 개 월 이 상		333							
하루 총 산란 량		334							

지난 1년간 판매한 육계수	없다 V표	335							
그 순수 육 계 용		336							
중 기타 육 계 용		337							

조사원 성명

인

토끼	없다 V표	338	천	백	십	마리
그 양 고 라		339				
중 기 타		340				

면양	없다 V표	341				
----	-------	-----	--	--	--	--

양봉봉수	없다 V표	342				
------	-------	-----	--	--	--	--

양잠	없다 V표	(지난 1년간 사육실적)				
봄 누에	소잠 량	343				
	누에고치	344				
가을 누에 및 여름 누에	소잠 량	345				
	누에고치	346				

4 농기구

총대수와 인력 동력으로 구분함

자기소유
공통소유인 경우 12.1 현재 보유자 앞으로 기입한다

분무기 (살분기경용포함)	없다 V표	401	대	대	대
살 분 기		402			
탈 곡 기		403			
양 수 기		404			
소형 경운기		405			
대형 경운기		406			
우 마 차		407			
손 수 레		408			
새 끼 기 계		409			
가 마 니 기 계		410			
제 초 기		411			
사료절단기 (동력에 의한)		412			
고구마 절간기		413			

발 동 기	없다 V표	대 수	414	천	백	십	대 마 력
		마 력	415				
전 동 기 (전기모-타)		대 수	416				
		마 력	417				

5 농산물판매

1969. 12. 1 ~ 1970. 11. 30까지 판매한 총금액을 기입 (농가만 조사함)

쌀	없다 V표	501	백만원	천	백	십	원
백.유 (백의 명목이 없음)		502					
기타곡류		503					
채 소 (식용외 목적)		504					
축 산 농		505					
양 식		506					
과 식		507					
농 용 사 농		508					
시 설 사 농		509					
총 액		510					

시총 읍면 지도원 성명

인

② 과 수 (전문 124 없으면 조사안함)

사 과	총 면 적	236	천	백	십	평
	총 나무 수	237				
	그 열매 못 따는 나무 수	238				
배	총 면 적	240				
	총 나무 수	241				
	그 열매 못 따는 나무 수	242				
복숭아	총 면 적	244				
	총 나무 수	245				
	그 열매 못 따는 나무 수	246				
포 도	총 면 적	248				
	총 나무 수	249				
	그 열매 못 따는 나무 수	250				
감	총 면 적	252				
	총 나무 수	253				
	그 열매 못 따는 나무 수	254				
밤	총 면 적	256				
	총 나무 수	257				
	그 열매 못 따는 나무 수	258				
물	총 면 적	260				
	총 나무 수	261				
	그 열매 못 따는 나무 수	262				
기타 과 수 (전문 상주 과수)	총 면 적	263				
과수면적합계 (124와 같음)	264					
과수면적합계 (124와 같음)	265					

③ 시설작물 (사람이 서서 일할 수 있는 시설에 한함)

비닐하우스	총 면 적	없다 V표	266	천	백	십	평
	일 시 적		267				
은 실	영구적		267				

있으면 O항 조사

④ 재배면적

도 마 도	없다 V표	268	천	백	십	평
오 이		269				
참 의		270				
수 박		271				
상 추		272				
고 추		273				
축 간		274				
꽃		275				
기 타 원 예		276				
양종이 (재배면적)		277				

6 농가확인

종합표에 의하여 확인된 농가의 구분은
나우 해당번호에 O표한다 (하나만 O표)

경 고 특 대 중 가 양 양	농
지 동 작 가 가 양 양	업
지 예 실 추 추 금 봉 감	회
	용
600 000 1 2 3 4 5 6 7 8 9	

시 동 읍 면 장 인

인

1970년 농업조사 표

12.1

작성총괄책임자 : 농업센서스
작성 : 농업센서스
작성기간 : 7.28

시도 : 구시군 : 읍면 : 농어조사구번호 : 농가번호 :

경영주성명 :

7 농작물생산량

공년 수확량을 항목으로 조사함

종류	면적	수량	비율
논	701		
밭	702		
밭	703		
밭	704		
밭	705		
조	706		
우수수	707		
콩	708		
팥	709		
고구마	710		
감	711		

8 농업고용

1969.12.1 ~ 1970.11.30

① 상용고 (6개월 이상)

종류	면적	수량	비율
상용고 총인수	801		
남	802		
여	803		

② 임시고 (1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종류	면적	수량	비율
임시고 총인수	804		
남	805		
여	806		

조사원 성명 :

(3) 날품 및 품앗이 (연인원수)

종류	면적	수량	비율
모내기	807		
남	808		
여	809		
밭갈기	810		
남	811		
여	812		
수확타작	813		
남	814		
여	815		
배변리기	816		
남	817		
여	818		
총수	819		
남	820		
여	821		
총수	822		
남	823		
여	824		

9 비닐

종류	면적	수량	비율
요수	901		
밭	902		
요수	903		
밭	904		
요수	905		
밭	906		
요수	907		
밭	908		
요수	909		
밭	910		
요수	911		
밭	912		
요수	913		
밭	914		
요수	915		
밭	916		
요수	917		
밭	918		
요수	919		
밭	920		
요수	921		
밭	922		

시동읍면 지도원 성명 :

시동읍면 :

2 과수

3개월 이상 전년제반 전만 표시

과목	면적	수량	비율
사과	236		
배	237		
복숭아	240		
포도	241		
감	244		
귤	245		
딸기	248		
과수	249		
과수	252		
과수	253		
과수	256		
과수	257		
과수	260		
과수	261		
과수	264		
과수	265		

3 가축, 가금

사육, 가금은 12.1 현재 사육수

종류	면적	수량	비율
한우	301		
우	302		
우	303		
우	304		
우	305		
우	306		
우	307		
돼지	316		
돼지	317		
돼지	318		
돼지	319		
돼지	320		
닭	326		
닭	327		
닭	328		
닭	329		
닭	330		
닭	331		
닭	332		
닭	325		

비고란

출발일자 : 도착일자 :

조사원 성명 :

지도원 성명 :

구시군 : 읍면 :

4 총의구분

총의 크기	401
A	402
총의 크기	403
B	404
총의 크기	405
조사원인원	500

5 조사원인원조사항

종류	면적	수량	비율
조사원	1		
조사원	2		
조사원	3		
조사원	4		

지 대 별

(하나만 O표)

지대	면적	수량	비율
1			
2			
3			
4			
5			

지난1년간 (1969.12.1 ~ 1970.11.30)

종류	면적	수량	비율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100 00 1 2 3 4

1 2

③ 수원지

종류	면적	수량	비율
수원지	132		
수원지	133		
수원지	134		
수원지	131		

1970년 농업조사

작성총괄책임자 : 농업센서스
작성 : 농업센서스
작성기간 : 4.10

1 토지(농업용)

1956.11.30 이전 출생자

면적	수량	비율
1		
2		
3		
4		
5		
6		
7		
8		

② 밭

면적	수량	비율
1		
2		
3		
4		
5		
6		
7		
8		
9		
10		
11		
총계	107	
총계	108	
총계	109	
합계	101	

① 가구원

3개월 이상 동거 및 동거할 사람

나이	성별	면적	수량	비율
만14세 이상	남			
만14세 이상	여			

② 결업

면적	수량	비율
1		
2		
3		
4		
5		
6		
7		
8		
9		
10		
11		
총계	121	
총계	122	
총계	123	
합계	116	

일계부

농림부

농가경제조사

지경통계 제8호
(1962. 12. 8)

경고

이 일계부는 통계법 제10조, 제11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담당 통계요원이나 이 조사를 담당할 공무원 이외의 사람으로부터 제공됩니다.

인도	일부	조사	
	지구	항목	
		경구	
70			

기업요령

- 기업요령
1. 기업조사시 기업조사요령을 미리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기업조사요령을 미리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기업조사시 기업조사요령을 미리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기업조사요령을 미리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기업조사시 기업조사요령을 미리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기업조사요령을 미리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기업조사시 기업조사요령을 미리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기업조사요령을 미리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기업조사시 기업조사요령을 미리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기업조사요령을 미리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기업조사시 기업조사요령을 미리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기업조사요령을 미리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요령
1. 기업조사시 기업조사요령을 미리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기업조사요령을 미리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기업조사시 기업조사요령을 미리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기업조사요령을 미리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기업조사시 기업조사요령을 미리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기업조사요령을 미리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기업조사시 기업조사요령을 미리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기업조사요령을 미리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본의 선택 방법에 관한 설명

1. 이 일계부에 적어 넣은 내용은 통계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이 사무를 담당하는 사람 이외에는 보지 못함(단, 이 일계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통계법을 작성하는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법에 어긋나는 일이라도 안 신하고 사생활로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2. 수입표나 지출표에 그날 돈을 다 적을 수 없을 때에는 앞의 날은 부분이나 또는 수고스럽지만 다른 장이를 붙여서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3. 돈을 풀어서 적을 수 없는 것은 적기만 할 수 있는 "부호"로 그려 두었다가 통계요원으로 하여금 정리하여 적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필수 있는대로 표준별로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표준일이 잘 생기지 않으면 사투리로 적었다가 통계요원으로 하여금 표준으로 정리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잘 모르는 것이 있으면 '통계요원에게 묻어서 적어 주시기'나 통계요원으로 하여금 적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다른 곳으로 이사할 때에는 미리 통계요원에게 그것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구원표

구분	성명	성별	생년월일	직업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주 1) 연월일은 관으로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주 2) 이 일계부에는 필요하지 않은 것을 기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농실태표

구분	장기	중기	단기	계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구분	영농실태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자가생산물의 자가소비비표

(1) 1일부터 15일까지분

(2) 15일부터 말일까지분

품명	용도	수량	평가액	판매가격	판매수량	판매가격

품명	용도	수량	평가액	판매가격	판매수량	판매가격

참고 1) 사과가 생산물은 작을 가정하지 않습니다.
 2) 돼스물, 돼머, 말에게 조골용 및 일반 용은 제철로 수확하여 부적으로 하는 것도 예외 비고로 처리하십시오.
 3) 쌀(현미)은 보통, 동화, 신, 경회, 중화(중화) 같이 자세한 것이 있습니다.

4) 용도(소입)의 수량은 취락까지 처리하십시오.
물건의원의 집적현황의 표시
 양곡소비량 및 부식비는 생활료도 및 가축사료 등용 취락하여 별도로 표시.

이 달의 육류 소비량

종목	단위	수량	액	비고
돼지고기	kg			

참고 : (1) 16월중 1은=600g (2) 10월중 1은=375g
 (3) 돼지고기 배(중량) = 2kg~2.5kg 이상
 소(중량) = 1.8~2kg 소(중량) = 0.5kg~1kg

(4) 분유 1봉=450g (5) 시유(물우유) (6) 1봉=2봉
 (7) 1봉=1봉

우리들의 생활을 보다 낮게 하기위한 차도를 수립하는데 협조하여 주시기 간사합니다.

통계요원 경력 주소
 도 군 읍 면 동 리
 연락처

농가방문기록표

1 일	2 일	3 일	4 일	5 일	6 일	7 일	8 일	9 일	10 일	11 일	12 일	13 일	14 일	15 일	16 일	17 일	18 일	19 일	20 일	21 일	22 일	23 일	24 일	25 일	26 일	27 일	28 일	29 일	30 일	31 일

이 기록표에는 통계요원의 방문하는 날 도장이나 서인을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 원

농가수지표(보조표) (1970년 월분)

조사지구 및
농가번호
경지규모

91 의 식 비

원	금	91	91-1	91-2	91-3	91-4
		계	현 금	노 임	표 제	관 혼 상 제
현	금					
현	물					

주: 91은 농가수지표의 분류부호 91의 액수와 같아야함

104 교제 및 증여

원	금	104	104-1	104-2	104-3	104-4	105-5
		계	현 금	음 식 물	가 구 가 재	피 복	기 타 제 비
현	금						
현	물						

주: 104는 농가수지표의 분류부호 104의 액수와 같아야함

106 관 혼 상 제 비

원	금	106	106-1	106-2	106-3	106-4	106-5
		계	음 식 물	가 구 가 재	피 복	중 증 답	기 타 제 비
현	금						
현	물						

주: 106은 농가수지표의 분류부호 106의 액수와 같아야함

농가열량표 (1970년 월분)

조사지구
및농가번호
경지규모

52 영 농 광 열 비					95 가 제 광 열 비				
종	별	단	수	평	종	별	단	수	평
		위	량	가			위	량	가
				액					액
			※ 환 산				※ 환 산		
52-1	벼	질	kg		95-1	벼	질	kg	
52-2	보리	질	"		95-2	보리	질	"	
52-3	기타	질	"		95-3	기타	질	"	
52-4	왕	겨	"		95-4	왕	겨	"	
52-5	산	야	초	"	95-5	산	야	초	"
52-6	장	작	"		95-6	장	작	"	
52-7	지	엽	"		95-7	지	엽	"	
52-8	숫	"	"		95-8	숫	"	"	
52-9	연	탄	"		95-9	연	탄	"	
52-10	토	탄	"		95-10	토	탄	"	
52-11	석	유	ℓ		95-11	석	유	ℓ	
52-12	경	유	"		95-12	경	유	"	
52-13	기	타	유	"	95-13	기	타	유	"
52-14	전	기	kw		95-14	전	기	kw	
52-15	양	초	개		95-15	양	초	개	
52-16	까	스	류	kg	95-16	까	스	류	kg
52-17	기	타	"		95-17	기	타	"	
52	합	계			95	합	계		

주: ① 52 및 95의 평가액 합치는 각각 농가수지표의 분류부호 52 및 95의 각각 액수가 같아야함

② 수량은 kg으로 표시하고 ※ 환산값은 기입하지 않는다

농산물(곡류)재고량및소비량표 (1970년 월분)

조사지구 및 농가번호		경지규모																											
구	분	단	월 초 재 고 량			월 중 량 이 동 상 황												월 말 재 고 량											
			수	단	평	합	생	도	구	작	실	기	자	합	도	판	중	사	실	보	조	공	기	간	연	수	단	평	
			량	가	가	계	산	정	입	용	물	타	증	계	정	매	자	량	물	종	공	타	소	소	량	량	가	액	
미	메	벼																											
	밀	쌀																											
	찰	벼																											
곡	잡	쌀																											
맥	보	리																											
	쌀	보																											
	보	리																											
	밀																												
류	밀	가																											
	기	타																											
	(조	곡)																											
잡	조																												
	종	쌀																											
	수	수																											
	수	수																											
곡	옥	수																											
	기	타																											
	(정	곡)																											
두	콩																												
	팥																												
	녹	두																											
류	기	타																											
서	고	구	마	kg																									
	감	자																											

농업생산지체투하량조사표 (197 년 월분)

Table with multiple columns: 조사구별 농가번호, 구, 면, 리, 동, 방, 지, 읍, 군, 시, 구, 면, 군, 도, 총생산량, 기타, 합계. Sub-headers include 원소, 인산, 질소, 유기질, 기타, 비율 등.

농 립 부

기업체

농가수지표 (197 년11월분)

조사구별 농가번호: 707-15, 경지규모: 4

1). 수입

Table for '1). 수입' with columns for months 1-12, total, and number of households.

기업체

Table for '기업체' with columns for months 1-12, total, and number of households.

고정자산매각

Table for '고정자산매각' with columns for months 1-12, total, and number of households.

2) 지출

Table for '2) 지출' with columns for months 1-12, total, and number of households.

Table for '부식물비' with columns for months 1-12, total, and number of households.

Table for '기계용립비' with columns for months 1-12, total, and number of households.

Table for '실지출계' with columns for months 1-12, total, and number of households.

60 농산물생산비조사

지정통계제9호
생산비조사표
 농가성명: _____
 동계요원: _____

1. 가구원개황 (단위: 원)

가구원	영농가	농업관련업	인고	농업관련업
남				
여				
계				

2. 경영경지개황 (단위: 제)

경지	은	발	수원지	계
작용지				
자작지				
계				

3. 조사작물식부지개황

작물	면적(제)	가액	면적(제)	가액	면적(제)	가액
작용지						
자작지						
계						

4. 생산량

작물	수량(포구) (kg)	단량 (kg)	가액 (원)
주산물			
부산물			
계			

5. 생산비 (단위: 원)

종목	경영비			생산비
	순작비	비구입·지불	자급소계	
비료비				
방제비				
수리비				
조세공과금				
농구비				
축력비				
비목합계				
부산물가액				
기초생산비				
토지용역비				
차분용역비				
생산비				
비타				

2-1-3

농림부

6. 주요물량 (단위: kg)

종목	사용량	금액	비고	사용량	금액	비고
주요물량	외구비					
	유농비					
	기산야초					
	인분류					
	박류					
	비강류					
	토니					
	소토					
	기타					
	고남자					
동용의자						
자남자						
가의자						
축력(시강)						
차용금						
동력(시강)						
차용금						
주						
기타						

가구원개황 (단위: 원)

구분	남	여	계
인고			
농업관련업			
계			

경영경지개황 (단위: 제)

구분	은	발	수원지	계
작용지				
자작지				
계				

지정통계제9호
 '71
 주요물량 (단위: 원)

종목	수량	단가	가액	수량	단가	가액	수량	가액	비고
외구비									
유농비									
기산야초									
인분류									
박류									
비강류									
토니									
소토									
기타									
합계									

식부지개황 (단위: 원)

구분	수량	단가	가액	수량	단가	가액	수량	단가	가액	비고
외구비										
유농비										
기산야초										
인분류										
박류										
비강류										
토니										
소토										
기타										
합계										

2-2-2

농림부

지정통계제 9호

지정통계제 9호										농가성명	
'71										통계요원	
		비		료		비					
수량:kg 가액:원											
구	입		자		급		내		가액계		
	단가	수량	가액	단가	수량	가액	단가	수량			
부											
기											
진											
(화)											
비											
(토)											
합 계											
단 보 당											
유											
가											
선											
차											
입											
(비)											
합 계											
단 보 당											
식											
부											
편											
적											
평											
비											
고											

2-2-3 농 립 부

지정통계제 9호

지정통계제 9호										농가성명		
'71										통계요원		
노력 및 축력비												
작업명												
구분	자	남										계
	여	역										
	가	계										
	고	남										
	용	역										
노	입	합										계
	단	보										
	당	당										
수	차	급										계
	라	일										
	일	계										
소	차	급										계
	라	일										
장	차	급										계
	라	일										
비	단	보										계
	보	당										
평												
노력의 사용요급은 자가는 대농구로서 감가상각하고 차용은 대농구비의 입차료에 계상한다												

2-2-6 농 립 부

지정통계제 9호

지정통계제 9호				농가성명	
'71				통계요원	
농 가 조 수 입					
연월일		내	역	금	액
합 계		(3)			
조사작물		(4)=(3) P ₁			
부담금					
단 보 당					
제 부 담 금					
연월일		내	역	금	액
합 계		(5)			
조사작물		(6)=(5) P ₁ ×(5)			
부담금					
단 보 당					
농 가 조 수 입					
수량단위				금	액
				Ⓛ	(1)
논	벼			Ⓛ	
밭	벼			Ⓛ	
	리			Ⓛ	
밭	보			Ⓛ	
	리			Ⓛ	
	밀			Ⓛ	
	콩			Ⓛ	
	팥			Ⓛ	
	기타			Ⓛ	
	수수			Ⓛ	
	기타			Ⓛ	
	잡곡			Ⓛ	
	교구			kg	
	마			kg	
	감			kg	
	자			kg	
	채			kg	
	소			kg	
합 계					(2)
조사작물부담비율				P ₁ =(1)/(2)	
조사작물식부편적				평	

2-2-4 농 립 부

지정통계제 9호

방 제 비											
약제·재료·공동부담금등의명칭	사용면적	구 입 · 지 부		자		급		가액계	비 고		
		수량	단가	가액	수량	단가	가액				
합 계											
		식부편적		평		단 보 당					
제 재 료 비											
재료명	용도	구 입		자		급		가액계	비 고		
		수량	단가	가액	수량	단가	가액				
합 계											
		식부편적		평		단 보 당					

2-2-4 농 립 부

62 농산물생산비조사(속)

지정 통계 제 9호

지정 통계 제 9호

지구·야로 농가번호 71 농가성명
 대 농 구 비 통계요원
 (1) 감가할라비

소 농 구 비

공 용 농 구					조 사 작 물 전 용 농 구				
평 농 구 면	신 조 가	내 용 년 수 경 좌	꽃 개	연 장 가 액	평 농 구 면	신 조 가	내 용 년 수 경 좌	꽃 개	연 장 가 액
	(1)	(2)	(3)	(5)=(1)×(4) (2)+(3)		(6)	(7)	(8)	(10)=(6)×(9) (7)+(8)
소 계 (11)=Σ(5)					소 계 (13)=Σ(10)				
부 담 액 (12)=11×P ₁					상 각 비 합 계 (14)=(12)+(13)				
					평 단 보 당				

소 농 구 면	신 조 구 분	구 수	일 단 가	지 분 가 액	자 분 가 액	합 가 액	비 고
합	계						
부 담 액							

주: P₁는 농구, 농사비부담비를 산출표에 있음

농구, 농사비부담비 산출표

(2) 입차료, 수리유지비

평 농 구 면	입 차 수 리 노 령 등의 명 칭	구 수	일 단 가	지 분 가 액	자 분 가 액	합 가 액
소 계 Σ(3)						
부 담 액 (8)=Σ(3)×P ₂						
소 계 (10)						
합 계 (12)=(8)+(10)						
단 보 당						

작 물 명	식 부 면 적	식 부 단 율	작 물 명	식 부 면 적	식 부 단 율	작 물 명	식 부 면 적
조사작물@							
는 비							
보 리							
찰 보 리							
밀							
합 계 Σ(9)							
부 담 액 P ₂ =⑧/⑨							

2-2-5 농 필 부

2-2-5 농 필 부

지구·야로 농가번호 71 농가성명
 대 농 구 비 통계요원
 (1) 감가할라비

평 농 구 면	작 용 지	작 작 지	합 계	조사작물 이외의 작물 수인	조사작물 수인					
소 계										
부 담 액										
소 계										
합 계										
단 보 당										

2-2-7 농 필 부

작 물 명	식 부 면 적	식 부 단 율	작 물 명	식 부 면 적	식 부 단 율	작 물 명	식 부 면 적
조사작물@							
는 비							
보 리							
찰 보 리							
밀							
합 계 Σ(9)							
부 담 액 P ₂ =⑧/⑨							

2-2-7 농 필 부

지정 통계 제 9호
토지용역비
(식부지이외)

지정 통계 제 9 호

생 산 량

자가 차용 별	지 번	지 목	주 산 물		부 산 물		가 액 계	
			수확량 단가	가 액	수확량 단가	가 액		
				원		kg	원	
작 량 개 요 (○표함것)			20ℓ (백) 증량		기 타			
	작년에 비하여	이년에 비하여		조 1회	1. 맥에서 수확한 부산물은 모두 몇 단이나 됩니까? () 단 2. 수도일경우 벼가마니 10장을 짜는데 밧집 몇 단이나 됩니까? () 단			
				조 2회				
				조 3회				
				조 4회				
				평 균				
				정 1회				
				정 2회				
				정 3회				
				평 균				
1. 3할이상증수								
2. 2~3할증수								
3. 1할내의증수								
4. 거의같다								
5. 1할내의감수								
6. 2~3할감수								
7. 3할이상감수								

2-2-8 농 립 부

지정 통계 제 9 호

농 사 비

리구약물농가면포 '71	원 산 목 록	농가성명 통계요원				
(1) 감가상각비						
농 사 명	구조	평 수	신 조 가	내용년수 과거 장래	상 각 액	비 고
합 계						
부 담 액	식부면적		평	단보당		

(2) 입차료 수리유지비

입 차 · 수 리 · 수 보	제 목 · 노 역 · 요 구	구 입 · 지 불	차 량	가 액	단 가	가 액	비 고
합 계							
부 담 액	식부면적		평	단보당			

2-2-8 농 립 부

지정 통계 제 9 호

수 리 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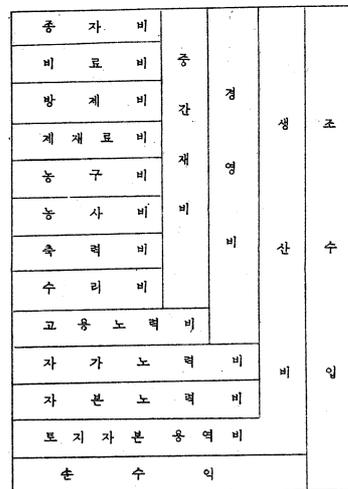
리구약물농가면포 '71	원 산 목 록	농가성명 통계요원					
(1) 감가상각비							
구 축 물 명	구조	신 조 가	내용년수 경과 장래	년상가액 (1) (4)-(2)+(3)	문 (%)	조사능가분 (6)-(4)×(5)	비 고
		(1)	(2) (3)				
합 계							
식부면적		평	단 보 당				

(2) 입차료 및 수리유지비

수리구축물명	제 목 · 노 역 · 요 구	원 수 면 적	구 입 · 지 불	차 량	가 액	단 가	가 액	비 고
토지개발조합비								
합 계								
식부면적		평	단 보 당					

2-2-9 농 립 부

생산비의 구성요소



작황조사표

지번	경작작물		조사년	조사월	조사일
	종류	품종			

외종면적표본조사표

지번	종류	품종	1m ² 당 수	수															
				1	2	3	4	5	6	7	8	9	10						
	A																		

지정통계 제 15 호

수도표본구조조사수치보고

농림부 농정국
조사통계과장 김학

작
물
조
사
수
치
보
고

71.

도 관 대표직원

① 조사원성명					② 조사원성명						
지번	포구	1m ² 당	수당평	생 수	조	지	포구	1m ² 당	수당평	생 수	조
		포기	수	입				포기	수	입	
A							A				
B							B				
A							A				
B							B				
A							A				
B							B				
A							A				
B							B				
A							A				
B							B				
A							A				
B							B				
A							A				
B							B				
A							A				
B							B				
A							A				
B							B				
A							A				
B							B				
A							A				
B							B				
A							A				
B							B				

지번	종류	품종	1m ² 당 수	수										계	평균			
				1	2	3	4	5	6	7	8	9	10					
	A																	

수도생산량시험조사표

구분	조사원성명	조사표 번호	경작자 성명	경나	품종	작형	면적	조사일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계	평균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계	평균		

예상수확량조사표

지방총계 15호

육도표본구조사수치보고

농림부 농림국 제1회 육도표본구조사수치보고 1971.

조사통제과장 귀하 도 군 대표지원

① () 조사원성명										② () 조사원성명									
지번	포구	구경	구경	작형	작형	1회 예상량 (조목)	1회 예상량 (조목)	생수 (3m ²)	조제인	지번	포구	구경	구경	작형	작형	1회 예상량 (조목)	1회 예상량 (조목)	생수	조제인
	A	cm	cm	kg	kg	g	g	g			A	cm	cm	kg	kg	g	g	g	
	B										B								
	A										A								
	B										B								
	A										A								
	B										B								
	A										A								
	B										B								
	A										A								
	B										B								
	A										A								
	B										B								
	A										A								
	B										B								
	A										A								
	B										B								
	계										계								

비고:

미곡생산량조사표

조사원성명	조사표 번호	경작자 성명	경나	품종	작형	면적	조사일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계	평균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계	평균				

육도생산량조사표

조사원성명	조사표 번호	경작자 성명	경나	품종	작형	면적	조사일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계	평균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계	평균				

조사원성명

맥류 직송 보고 (예상량) 71.

조사		맥		군		면	
지번	전답별	포구별	규장	생수	조제비	조사구	비고
		정량 (cm)	정량 (cm)				
	전	A					
	답	B					
	답	C					
	전	A					
	답	B					
	답	C					
	전	A					
	답	B					
	답	C					
	전	A					
	답	B					
	답	C					
	전	A					
	답	B					
	답	C					
	전	A					
	답	B					
	답	C					
	전	A					
	답	B					
	답	C					
계							

군 대표조사원 ㉠

맥류 직송 보고 (5.5작형) 71.

조사		맥		군		면	
지번	전답별	포구별	규장	파출량 (조수)	생수	조제비	조사구
		정량 (cm)	정량 (cm)				
	전	A					
	답	B					
	답	C					
	전	A					
	답	B					
	답	C					
	전	A					
	답	B					
	답	C					
	전	A					
	답	B					
	답	C					
	전	A					
	답	B					
	답	C					
	전	A					
	답	B					
	답	C					
	전	A					
	답	B					
	답	C					
	전	A					
	답	B					
	답	C					
계							

군 대표조사원 ㉡

맥류 생산량 시험조사표

조사		맥		군		면	
조사구	전답별	포구별	규장	생수	조제비	조사구	비고
		정량 (cm)	정량 (cm)				
	전	A					
	답	B					
	답	C					
	전	A					
	답	B					
	답	C					
	전	A					
	답	B					
	답	C					
	전	A					
	답	B					
	답	C					
	전	A					
	답	B					
	답	C					
	전	A					
	답	B					
	답	C					
	전	A					
	답	B					
	답	C					
	전	A					
	답	B					
	답	C					
계							

맥류 생산량 조사표 (총번호)

조사		맥		군		면	
지번	전답별	포구별	규장	파출량	생수	조제비	조사구
		정량 (cm)	정량 (cm)				
	전	A					
	답	B					
	답	C					
	전	A					
	답	B					
	답	C					
	전	A					
	답	B					
	답	C					
	전	A					
	답	B					
	답	C					
	전	A					
	답	B					
	답	C					
	전	A					
	답	B					
	답	C					
	전	A					
	답	B					
	답	C					
계							

지정통계 제 15 호

고구마표본구조조사수치 보고

농림부 농정국
조사통계과장 귀하

(예상량)
(실수확량)

71.

도 군 대표지원

지번	조사원 명				지번	조사원 명				지번	조사원 명			
	포구	규장	3m ² 당 포기수	조사수치 (40g 이상)		포구	규장	3m ² 당 포기수	조사수치 (40g 이상)		포구	규장	3m ² 당 포기수	조사수치 (40g 이상)
A	cm	cm	포기	g	A	cm	cm	포기	g	A	cm	cm	포기	g
B					B					B				
A					A					A				
B					B					B				
A					A					A				
B					B					B				
A					A					A				
B					B					B				
A					A					A				
B					B					B				
A					A					A				
B					B					B				
A					A					A				
B					B					B				
A					A					A				
B					B					B				
A					A					A				
B					B					B				
A					A					A				
B					B					B				
A					A					A				
B					B					B				
A					A					A				
B					B					B				
A					A					A				
B					B					B				
A					A					A				
B					B					B				
A					A					A				
B					B					B				
A					A					A				
B					B					B				
A					A					A				
B					B					B				
A					A					A				
B					B					B				
A					A					A				
B					B					B				
A					A					A				
B					B					B				
A					A					A				
B					B					B				
A					A					A				
B					B					B				
A					A					A				
B					B					B				
A					A					A				
B					B					B				
A					A					A				
B					B					B				
A					A					A				
B					B					B				
A					A					A				
B					B					B				
A					A					A				
B					B					B				
A					A					A				
B					B					B				
A					A					A				
B					B					B				
A					A					A				
B					B					B				
A					A					A				
B					B					B				
A					A					A				
B					B					B				
A					A					A				
B					B					B				
A					A					A				
B					B					B				
A					A					A				
B					B					B				
A					A					A				
B					B					B				
A					A					A				
B					B					B				
A					A					A				
B					B					B				
A					A					A				
B					B					B				
A					A					A				
B					B					B				
A					A					A				
B					B					B				
A					A					A				
B					B					B				
A					A					A				
B					B					B				
A					A					A				
B					B					B				
A					A					A				
B					B					B				
A					A					A				
B					B					B				
A					A					A				
B					B					B				
A					A					A				
B					B					B				
A					A					A				
B					B					B				
A					A					A				
B					B					B				
A					A					A				
B					B					B				
A					A					A				
B					B					B				
A					A					A				
B					B					B				
A					A					A				
B					B					B				
A					A					A				
B					B					B				
A					A					A				
B					B					B				
A					A					A				
B					B					B				
A					A					A				
B					B					B				
A					A					A				
B					B					B				
A					A					A				
B					B					B				
A					A					A				
B					B					B				
A					A					A				
B					B					B				
A					A					A				
B					B					B				
A					A					A				
B					B					B				
A					A					A				
B					B					B				
A					A					A				
B					B					B				
A					A					A				
B					B					B				
A					A					A				
B					B					B				
A					A					A				
B					B					B				
A					A					A				
B					B					B				
A					A					A				
B					B					B				
A					A					A				
B					B					B				
A					A					A				
B					B					B				
A					A					A				
B					B					B				
A					A					A				
B					B					B				
A					A					A				
B					B					B				
A					A					A				
B					B					B				
A					A					A				
B					B					B				
A					A					A				
B					B					B				
A					A					A				
B					B					B				
A					A					A				
B					B					B				
A					A					A				
B					B					B				
A					A					A				
B					B					B				
A					A					A				
B					B					B				
A					A					A				
B					B					B				
A					A					A				

농업기본통계보고서 작성상 주의사항

1. 총괄사항

가. 각종 용지 하단의 주의사항을 숙독할 것
 나. 서울특별시·부산시는 구청장, 각 도는 시장(대구는 구청장) 및 읍·면장이 최초보고서 작성자이며 관하 법정(法定)리·동 및 출장소본(법정(法定)리·동 별로 기입 하고 출장소본은 소계)을 집계함.

다. 면적의 조사단위는 아래와 같음.

- (1) 농업기본 통계표와 각종 집계표의 농가 및 필지단위조사에서는 *경.으로 하나 리·동 및 출장소본은 집계한후 「단보」로 환산할 것 (소수점 이하의 수는 첫 자리에서 반올림함)
- (2) 각종 보고서는 「단보」로 함. (소수점 이하의 수는 첫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할 것) 시·도는 제외.

라. 계수의 배열을 정확히 하여 계산시 단위의 착오가 없도록 하고 해당사항이 없는 *난.에는 반드시 -로 표시할 것

마. 계수상 전년과 대비하여 0.5% 이상 변동있는 항목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규명(糾明)주기(註記)할 것.

바. 숫자처리에 있어 아래 각항에 유의할 것.

- (1) 가로, 세로의 합계수를 확인할 것.
- (2) 혼동되기 쉬운 숫자 (예: 2와0, 1과7, 3과5 등)를 더욱 정확히 기재할 것.
- (3) 해당 항목란 밖으로 넘기지 말 것.

2. 각종 보고서에 대하여

가. 농기본 1 (국적별, 형태별 농업가구 보고서) 상호 관련있는 지표간의 계수상 일치여부를 확인할 것. (농기본 2, 3, 4)

나. 농기본 2 (업태별 농가호수 보고서)

1 농가 1업태별로 당해 농가의 주수입원(主收入源)에 의하여 구분함.

다. 농기본 3 (경작 규모별, 농가호수 및 면적보고서)

- (1) 각 계층별의 머리수는 이상에 포함됨
(예: 1단보이상 3단보 미만의 경우: 300명 이상 899명 까지를 말함. 이하 각 계층 같음)
- (2) 계층구분의 확인요령은 각 계층의 상.하 한수(限數)에 조사된 농가수를 곱한 수치와 당해 계층의 실면적을 비교하여 파부족 여부를 확인함.

라. 농기본-4 (연령별 농가인구 보고서)

계층구분(제, 남, 여)을 계산하고 총계(제, 남, 여)가로, 세로의 계수를 재 계산할 것.

마. 농기본-5 (경지면적 보고서)

농기본-3 (경작 규모별 농가호수 및 경지면적 보고서)에는 준농가 경작면적이 제외되나 본표는 대지조사인 까닭에 준농가 경작본도 포함되므로 양자의 계수는 일치하지 않음.

바. 보고서의 편철방법

집계 시열 순으로 정리하여 좌단을 본본란 노끈으로 철함 것. (서류의 손상을 피하고 위급상 편리하도록 부피 3cm를 넘지 않겠) 시, 도에서는 읍·면본과 시·군 구분용 별철 할 것.

사. 경기도·강원도는 보고서 최초기관부터 귀농원 북방 소재경지를 ()로 표시하고 원수(元數)에 포함시킬 것.

기본통계 양식 제 1호

지정통계 제 16호
1968. 4. 18

담당자	계장	장	결	재
				월 일

농업기본통계조사표

조사구역 _____ 읍 면 리 동 _____

조사원 직위 _____ 성명 _____ 인

통 계 조 사 표

농기분-4 연령별 농가 인구 보고서 (인)												농기분-6 농가 사유별 등감 보고서													
합 계			13세 이하			14세 이상 19세 이하			20세 이상 49세 이하			50세 이상 59세 이하			60세 이상			중 가 사 유 (호) (해당 농가에 해당 "○" 으로 표시)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본가	전임	전임	기타	전임	이농	전출	기타

수신 업태별 농가구수 보고서 (농기분-2) 발신 인

행정구역별 구분	총 수	경 작 파 수 채 소					중 특 용 작 물 고 동 원 예			축 산 양			화	전 임	입 급	농 업	노 동	기 타		
		답 작 호	전 작 호	파 수 호	채 소 호	특 용 작 물 호	고 동 원 예 호	축 산 호	양 호	감 호										

주의 1. 업태별은 주요수입원에 의거하여 구분하고 1농가 1항목에 한 함. 2. 기타는 전가각항에 해당치 않은 농가 중 농가수공업 직분업종을 말함.
 3. 본 보고서의 수치는 국지별 농가구수의 수치와 동일함. 4. 비숙련은 수시로 내시 함. 5. 조사 기일 10월 1일 현재.

사업체노동실태조사표

지역번호	사업체 고유번호	산업분류	규모분류
		※	

지정통계 제18호
 조사기준일 : 1971. 4. 30
 조사실시기관 : 노동청

통계법 제10조(비밀의 보호)
 통계조사의 결과 알려진 개인
 법인 기타의 단체의 비밀은
 보호되어야 한다.

1. 사업체의 특징

가. 사업체명	다. 조직형태	(1) 개인	(2) 법인	(3) 정부관리
나. 소재지	바. 설립년도	년	아. 주요생산품명	(1) (2) (3)
다. 대표자명	라. 전화번호	사. 사업종류		
자. 가동율	% 좌: 70.5.1~71.4.30 기간중 휴업기간	월 일부리 () 일간	월 일까지	가. 70.5.1~71.4.30 기간중 휴업한 경우 그 일과

2. 분사(점) 및 판매 사업체 현황 주의: 근로자수가 10인 미만일지라도 분사 및 판매 사업체는 전부 기재할 것

가. 분사	주의: 조사 사업체가 분사인 경우 기재치 않겠	조사여부	※
(1) 명칭	(2) 소재지	(3) 대표자명	(4) 전화번호
나. 판매사업체	○표난은 판매 제업체에 한하여 기재할 것이며 난이 부록할 경우 별지에 기재 첨부할 것		
(1) 사업체명칭	(2) 대표자명	(3) 소재지	(4) 사업의 종류
			(5) 주요생산품명
			(6) 근로자 수
			(7) 조업의 경우 가동율
			(8) 휴업의 경우 휴업기간
			(9) 매업의 경우 그 일과
			(10) 조사 여부 확인

주의: 판매 및 제업체중 크가동율이 50%미만이거나 70.5.1~71.4.30 기간중 휴업한 사업이 있는 사업체 및 70.4.30현재의 근로자수에 비하여 30%이상 근로자수가 감소된 사업체는 별지 부표의 조사사항을 필히 기재할 것
 실세가동한 1일평균 투입 연인원×1일 1인 평균 실조업시간×4월 실조업일수
 (이조사에 있어 가동율이라 함은 정상가동시의 1일평균 투입 연인원×1일 1인 평균 조업시간×4월 조업일수 ×100)

3. 근로자 수

구분	총 수	생 산 계 근 로 자												사 무 계					
		계		기술자		기술공		숙련공		반숙련공		전 습 공			기타의 상용 근로자	일용근로자	근로자		
연령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계																			
18세미만																			
18 ~ 29																			
30 ~ 39																			
40 ~ 49																			
50세이상																			

※ 표는 기재하지 않겠

응답자성명	인	조사자성명	인	내용검토확인	인
사업주확인	인	조장확인	인	조사제표달임확인	인

사업체노동실태조사표(부표)

지역번호	사업체번호	산업분류	규모분류
		※	

통계법 제10조(비밀의 보호)
 통계조사의 결과 알려진 개인
 법인 기타의 단체의 비밀은
 보호되어야 한다

1. 사업체의 특징 ※사업체별로 별지에 기재 "에" ○○산업(주)알알공장 영동로공장 이 각각 이에 해당할 경우 별지 기재

가. 사업체명	사업의	주요생산	(1)
나. 소재지	종류	품명	(2) (3)

2. 사업 실태

가. 형태	나. 원 인	다. 권 령	라. 산업 대책 전망
() (1) 휴업	() (1) 원료부족에 의한 생산부진	() (1) 경기회복의 전망있다	(1) 원보유시설이 타산 업에 전환 할수 있 다면
() (2) 폐업	() (2) 제장량고갈	() (2) 회복분능이타산업에 로의 전환전망도있다	그 산업 ()
() (3) 고용량 감소	() (3) 과잉생산으로 인한 수요의 상대적 감소	() (3) 회복분능이나 현시설 모체 타산업에도 전환 할 계획이다	생산품명 ()
() (4) 조업시간 단축	() (4) 소비자위험변동에 따른 수요감소	() (4) 기타의전망: 기계 ()	※
	() (5) 기타의 국내 수요 감소		
	() (6) 수출 수요 감소		
	() (7) 기타: 기계 ()		

가. 고용량 감소 규모	정상가동시의 근로자수 (A)	70.4.30의 실가동근로자수(B)	71.4.30의 실가동근로자수(C)	(A) - (B)	(A) - (C)
--------------	-----------------	---------------------	---------------------	-----------	-----------

3. 직종별 근로자 수요전망

직종별	구분	직종분류	보 기 증가 / 감소					
			총 수	기술자	기술공	기능공	전 습 공	기 타
		※						
		※						
		※						
		※						
		※						

주의: ※난을 기재하지 않겠. 직종명은 통상명칭을 사용하며 외래어로 표기되는 직종명은 설명을 곁들여 기재할 것

응답자성명	인	조사자성명	인	내용검토확인	인
사업주확인	인	조장확인	인	조사제표달임확인	인

※ 통계법 제10조 (비밀의보호)

통계조사 결과 알려진 개인
법인 기타 단체의 비밀은 보호
되어야 한다

지정 통계 제 19 호

노동이동조사표

1971년 월 분

조사실시기관 노동청

지역 및 사업체번호	산업분류	규모분류
~		

합 계		4. 전월말현재 근로자 수	5. 당월 입직자 수	6. 당월 퇴직자 수	7. 당월말현재 근로자 수
8. 상용근로자	계				
	남				
	여				
9. 임시 및 일용근로자					

1. 사업체명칭	
2. 소재지	
3. 조직형태	1. 정부관리기업체 2. 민영법인체 3. 개인업체

10. 입 직 자 수	상 용 근 로 자	11. 입 직 경 로						12. 전 직 경 력						13. 년 령 계 급							
		계	남	여	공공직업 안정소경유	학교소개	연교자	광고	기타	미취업자	광업 종사자	제조업 종사자	상업 종사자	운수업 종사자	서비스업 종사자	기타	17세 이하	18~19	20~39	40~59	60 이상
		남																			
		여																			
임시 및 일용근로자																					

14. 이 직 자 수	상 용 근 로 자	15. 이 직 이 유							16. 근 속 년 수				17. 년 령 계 급								
		계	남	여	고용계약 만료	사업경영상 해고	귀책사유 고	사망상병	의원퇴직	정년퇴직	휴직	기타	1년미만	1~3년 미만	3~5년 미만	5년이상	17세이하	18~19	20~39	40~59	60 이상
		남																			
		여																			
임시 및 일용근로자																					

사업체대표자성명	1971.	①	조사원성명	①	확인판성명	①
----------	-------	---	-------	---	-------	---

조사사항의 정의 및 기입요령

1. 상용근로자

여기서 상용근로자라 함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기간을 정함이 없이 또는 일개월을 넘는 기간을 정해서 고용된 자로서 월말현재 재직하고 있는자
 - 나. 임시 또는 일용근로자로써 전 2개월에 있어 각월에 각각 18일 이상 또는 전 6개월간을 통산하여 60일이상 당해 사업체에 고용된 자
 - 다. 중역 또는 이사라도 매일 출근하여 일정한 직무를 수행하며 일반고용자와 같은 급여규칙 또는 같은 기준의 보수를 매일 받고 있으면 여기에 해당된다
- 사업체의 대표자 (통상사장) 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단 지사장, 지점장, 공장장 등은 사업체를 대표하고 있다 하더라도 상용근로자가 된다

2. 임시 및 일용근로자

임시 및 일용근로자라 함은 일일고용되는 자 또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고용되는 자를 말한다

3. 입
직

신규채용, 복직, 기타 노동의 대상으로 임금을 받을것을 목적으로 조사 기준기간(해월의 1일부터 말일까지)중에 고용됨을 말하며 상용근로자와 임시 및 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 또 동일기업체내의 다른 사업체로부터의 전직(전입)도입적으로 본다

- 가. 공공직업안정소경유 - 공공직업안정소를 통하여 입직된 자의 수를 기입한다
- 나. 학 교 소 개 - 학교측의 소개알선으로 입직된 자
- 다. 연 교 자 - 사업체내에 있는 친족, 친척이나 지인들의 직접 간접의 소개로 입직된자
- 라. 광 고 - 신문광고나 문전, 가두참지 등에 의한 문서의 제출로 입직된자
- 마. 기 타 - 사실직업안정소 소개 및 상기 각항에 해당하지 않는자

4. 전
직
경
력

- 가. 미 취 업 자 - 당해 사업체에 취업하기 이전에 한번도 직업을 갖지 않았던 자를 말한다
- 나. 기 타 - 상기 각항에 해당되지 않는자

5. 년
령

각기 해당되는 란의 근로자수를 적는다

6. 이
유

- 가. 고용계약의 만료 - 기간을 정한 고용계약으로 고용된자가 그 기간이 만료되어 이직케 된 경우의 근로자수를 기입한다
- 나. 사업경영상의 해고 - 사업의 축소 합리화 사업경영상의 이유등 사업체의 사정에 의하여 해고혹은 정년퇴직을 사유하며 형식적으로 임의퇴직의 형식을 취하였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업경영상의 해고로 볼 경우는 여기에 해당한다
- 다. 사 망 또는 상 병 - 사망 또는 상병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그 직무에 종사할 수 없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 라. 귀책사유로인한해고 - 본인의 과실 무계결근등 본인의 과오로 인하여 해고당한 경우를 말한다
- 마. 의 원 퇴 직 - 근로자측의 사정에 의하여 자진 사퇴하는 경우
- 바. 정 년 퇴 직 - 사정에 의하여 정년이 되어 퇴직하는 경우
- 사. 휴 직 - 근로자 일신상의 사정에 의하거나 또는 고용주측에서 주로 다음과 같은 원인의 발생에 의하여 전부 또는 일부 근로자에게 임금 지급이 중단되고 쉬게하거나 사업체가 휴업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 1) 생산방식의 변동
- 2) 계절적 또는 일시적 고용의 감축
- 3) 판매부진
- 4) 노동력적인 생산시설의 도입
- 5) 공장운영의 일시적 정지
- 6) 원료부족 기타

또한 임금지급이 중단된 장기휴가도 여기에 포함한다

7. 근 로 년 수

당해 사업체에 고용된 년월부터 이직시까지 계속근무한 기간을 말한다

회사명칭의 변경 또는 합병등에 의하여 사용자가 변경되어 형식적으로 해고 또는 재고용의 수속을 하였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계속하였을 경우에는 전후년수를 통산하여 근속년수로 한다

직종별임금조사표

지역번호	사업체 고유번호	산업분류	규모분류

지정 통계 제 20 호
 조사기준기간: 1971. 4. 1~30
 (임금계산기간이 이와 상회할경우 이기간에
 가장 근사한 기간의 월임금 지급기간)
 조사실시기관: 노. 동. 청

통계법 제10조 (비밀의보호)

통계조사의 결과 알려진 개인 법인 기타
 의 단체의 비밀은 보호되어야 한다.

1. 사업체명:	3. 상용근로자수:
2. 사업체소재지:	4. 근로자추출율: % 조사근로자수:

일련번호	①성명	②성별	③학력	④연령	⑤직종번호 (직종명)	⑥근로자종류	⑦근속연수	⑧경력수	⑨근로일수	⑩근로시간	⑪ 월 급여액			⑫ 특 별 급여액
											⑪ 소 계	정액급여 (A)	초과급여 (B)	
1		1.2	1.2.3.4		한국표준직업 분류상의 해당 번호를기입하 되매한것은 직종명을그대 로기입	①기술자 ②기술공 ③기능공 ④건설공 ⑤생산제기타 ⑥사무계	현사업 체에서 의근속 연수	현직종 에서중 사한정 년수	71.4월 중출근 일수	71.4월 중연근 로시간 휴식시 간계의	(A)+(B)	기본급 근속급 능률급 가족수당 직무수당 물가수당 등포함	시간외근무수 당 연장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당속직수당 등포함	70.1.1~ 70.12.31 까지지급 한상여금 특별보상 등을기입
2		1.2	1.2.3.4			1.2.3.4.5.6								
3		1.2	1.2.3.4			1.2.3.4.5.6								
4		1.2	1.2.3.4			1.2.3.4.5.6								
5		1.2	1.2.3.4			1.2.3.4.5.6								
6		1.2	1.2.3.4			1.2.3.4.5.6								
7		1.2	1.2.3.4			1.2.3.4.5.6								
8		1.2	1.2.3.4			1.2.3.4.5.6								
9		1.2	1.2.3.4			1.2.3.4.5.6								
10		1.2	1.2.3.4			1.2.3.4.5.6								
11		1.2	1.2.3.4			1.2.3.4.5.6								
12		1.2	1.2.3.4			1.2.3.4.5.6								
13		1.2	1.2.3.4			1.2.3.4.5.6								
14		1.2	1.2.3.4			1.2.3.4.5.6								
15		1.2	1.2.3.4			1.2.3.4.5.6								
16		1.2	1.2.3.4			1.2.3.4.5.6								
17		1.2	1.2.3.4			1.2.3.4.5.6								
18		1.2	1.2.3.4			1.2.3.4.5.6								
19		1.2	1.2.3.4			1.2.3.4.5.6								
20		1.2	1.2.3.4			1.2.3.4.5.6								
21		1.2	1.2.3.4			1.2.3.4.5.6								
22		1.2	1.2.3.4			1.2.3.4.5.6								
23		1.2	1.2.3.4			1.2.3.4.5.6								
24		1.2	1.2.3.4			1.2.3.4.5.6								
25		1.2	1.2.3.4			1.2.3.4.5.6								
26		1.2	1.2.3.4			1.2.3.4.5.6								
27		1.2	1.2.3.4			1.2.3.4.5.6								
28		1.2	1.2.3.4			1.2.3.4.5.6								
29		1.2	1.2.3.4			1.2.3.4.5.6								
30		1.2	1.2.3.4			1.2.3.4.5.6								
31		1.2	1.2.3.4			1.2.3.4.5.6								
32		1.2	1.2.3.4			1.2.3.4.5.6								
33		1.2	1.2.3.4			1.2.3.4.5.6								
34		1.2	1.2.3.4			1.2.3.4.5.6								
35		1.2	1.2.3.4			1.2.3.4.5.6								
36		1.2	1.2.3.4			1.2.3.4.5.6								
37		1.2	1.2.3.4			1.2.3.4.5.6								
38		1.2	1.2.3.4			1.2.3.4.5.6								
39		1.2	1.2.3.4			1.2.3.4.5.6								
40		1.2	1.2.3.4			1.2.3.4.5.6								
41		1.2	1.2.3.4			1.2.3.4.5.6								
42		1.2	1.2.3.4			1.2.3.4.5.6								
43		1.2	1.2.3.4			1.2.3.3.5.6								
44		1.2	1.2.3.4			1.2.3.4.5.6								
45		1.2	1.2.3.4			1.2.3.4.5.6								
46		1.2	1.2.3.4			1.2.3.4.5.6								
47		1.2	1.2.3.4			1.2.3.4.5.6								
48		1.2	1.2.3.4			1.2.3.4.5.6								
49		1.2	1.2.3.4			1.2.3.4.5.6								
50		1.2	1.2.3.4			1.2.3.4.5.6								

응답자성명	①	조사자성명	②	내용검토	※
사업주확인	③	조장확인	④	확인	※

※ 란은 기재하지 말것 (매증 매)

제 1 차 총 어업조사

조사표

이 조사는 지정통계로 승인된 어업센서스중 해면어업에 한하여 조사하는 것이며 통계법에 의거 모든 자료는 통계목적 이외의 사용을 금지하며, 개인, 법인 및 단체의 비밀은 보호됩니다.

1970년 12월 1일 조사

※ 분류	경영종류	경영규모	수원어업종류	최성기의 총생산액	해상작업종사일자수	어획액	선정업	수입원별 수입원명	가수원 수
지표									

수 산 청

가주주(세대주)성명, 사업소또는대표자명

시 구 동 읍 면
도 시 군 구 읍 면 동

계	개인	공동	회사
경영종류	개인경영가주 및 고용자가주	공동경영가주 및 고용자가주	회사경영
수원어업종류	수원어업종류	수원어업종류	수원어업종류
총생산액	총생산액	총생산액	총생산액
해상작업종사일자수	해상작업종사일자수	해상작업종사일자수	해상작업종사일자수
어획액	어획액	어획액	어획액
선정업	선정업	선정업	선정업
수입원명	수입원명	수입원명	수입원명
가수원 수	가수원 수	가수원 수	가수원 수

지 도 시 구 동 읍 면 동
읍 면 동 읍 면 동

비

인구 및 주택 조사 조사구 번호
어업조사 조사구 번호

주 소 리 지
소수어업

조사원 성명

지정통계 제22호 어업센서스

* 수상청에서 기입

조사표 기입상의 주의

조사항목(I, II, III, IV) 중 경영조직별로 O표된 항목에 대해서만 조사한다.

조사항목	I	II	III	IV
개인 경영	O	O	O	O
공동경영(대표자)	O	O	X	X
회사 경영	O	O	X	X
고용자가주	O	X	O	O

주: ① 개인 경영과 고용자가주: 조사원이 조사
② 공동경영과 회사경영: 지도원이 조사
③ 조사표 뒷면의 주의사항 참고할 것

I] 조사대상의 구분

가. 경영조직

지난 1년간에 경영한 어업은 (해당번호 하나에 O표)

개인단독으로 경영하였다.	1
공동 경영으로 하였다.	2
회사 경영으로 하였다.	3
다른 사람의 어업이 아닌 양식 사업체에 해상에서 어업종사자로서 고용이었던 것이다.	4

주: ① 공동경영: 두 사람이상의 어선주들의 생산수단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공동으로 운영되리하여 그 수입의 분배를 공동으로 하는 것이며 그 대표자에 한하여 조사한다.
② 회사경영: 상법에 의한 주식 회사, 합명유한회사 등의 사업체

II] 어업경영

가. 어업의 종류

어업의 종류	분류 번호
원양 트롤	01
보선척선어망	02
원양함치연승	03
기타원양어업	04
포경	05
트롤	06
세우 트롤	07
1수인대형기선척선어망	08
2수인대형기선척선어망	09
1수인중형기선척선어망	10
2수인중형기선척선어망	11
기타척선어망	12
기선척선어망	13
기타척선어망	14
안강망	15
기타부망	16
물치유자망	17
고등어유자망	18
삼치유자망	19
멸치유자망	20
조기유자망	21
멸태자망	22
기타자망	23
기선권현망	24
척선인망	25
선인망	26
오징어1본조	27
기타1본조	28
멸태연승	29
망어연승	30
망어연승	31
기타연승	32
해초포경	33
함수기	34
기타어업	35
대형정치망	36
소형정치망	37
김양식	38
굴양식	39
백합양식	40
진주양식	41
내수면어업	42

주: ① 35번 기타어업은 1~34까지 외에 어업(어류양식포함)을 기입한다.
② 33번 해초포경: 자연산해초 포대에 김, 굴, 백합, 진주양식을 제외한 해조류 양식과 패류 양식을 포함한다.

나. 경영규모

(1) 지난 1년간에 사용한 어선은 (숫자로 기입)

(가) 동력선	(나) 무동력선
선명	선명
톤수	톤수
계	계
척	척

주: ① 사용한 어선은 자기소유이든 빌린 것이든 상관없이 어업경영에 참가한 모든 어선을 조사한다.
② 총톤수가 원정부터 기입하고 10척 이상인 경우는 예는 별표를 사용 첨부한다.
③ 동력 및 선고에 상관없이 실제 사용한 어선의 톤수를 기입한다.
④ 어선과 어망을 자가 제공하여 어업에 참가한 경우 어선 제공자인 사용어선에 기입한다.

(2) 12월 1일 현재 총 면적 양식 면적은 (숫자로 기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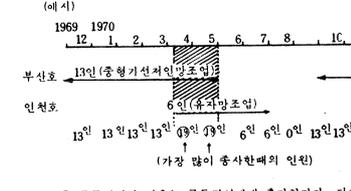
종류	방법	면적	
		m ²	참고
1. 김양식	망통		평
	부통		평
	기타		평
	소계		평
2. 굴양식	기타		평
	소계		평
3. 백합양식			평
4. 진주양식			평

주: ① "가"항 어업의 종류중 38, 39, 40, 41번에 O표 또는 ◎표있는 것은 전부 조사한다.
② 양식 면적은 실제로 양식시설을 할 면적을 물에 m²로 기재하며 m²로 알지 못한 때에는 힘고민에 평, 정, (대)을 기재한다.
③ 김양식의 부통에는 서신형 부통과 염포를 포함시킨다.

다. 최성기의 종사자수

지난 1년간에 가장 많이 해상작업에 종사한 때의 인원수는 (숫자로 기입)

총수	가족종사자(출자자포함)	고용종사자
인	인	인



주: ① 공동경영인 경우는 공동경영체에 출자자가 당해 공동 경영체에 해상에서 종사한 자는 가족 종사자에 기입한다.
② 법인 회사인 경우 해상 종사자 전원을 고용 종사자로 기입한다.

라. 종사일수

지난 1년간에 사업체 전체를 통하여 해상작업에 종사한 일수는 (해당번호에 O표)

29일 이하	30~59일	60~99일	100~149일	150~199일	200~249일	250일 이상
1	2	3	4	5	6	7

주: 종사 일수는 1일에 종사한 사람의 수와 조합한 어선 척수에 상관없이 1일로 계산한다.

마. 투자금액

(1) 지난 1년간에 대체한 어선 및 기관과 신조한 어선은 (동력 무동력에 O표하고 숫자로 기입)

선명	동력	무동력	본수	대체선조		기관내배		신규선조	
				척	톤	척	톤	척	톤
계									

주: ① 대체선조: 노후어선을 대체키 위하여 어선을 건조 또는 구입한 것.
② 기관내배: 어선의 기관을 대체한 것(무동력선에 기관을 설치한 것도 포함)
③ 신규선조: 새로운 어업을 시작하거나 사업을 확대하기 위하여 어선을 새로 건조 또는 구입한 것.

(2) 지난 1년간에 대체 또는 새로 구입한 어망은 (숫자로 기입)

어망의 종류	대체		신규	
	척	면적	척	면적
트롤				
척선어망				
선망				
부망				
자망				
인망				
조연승				
정지망				
기타어망				
계				

주: ① 대체: 노후된 시설을 전부 대체한 것.
② 신규: 새로운 양식을 시작하거나 시설을 확대하기 위하여 어망을 새로 구입한 것.

(3) 지난 1년간에 대체 또는 새로 시설한 양식 시설은 (숫자로 기입)

종류	대체		신규	
	척	면적	척	면적
김양식				
굴양식				
백합양식				
진주양식				

주: ① 대체: 노후된 시설을 전부 대체한 것.
② 신규: 새로운 양식을 시작하거나 시설을 확대하기 위하여 새로 시작한 것.

바. 차입금액

어업 또는 양식업의 경영을 위하여 차입한 금액은 (숫자로 기입)

차입기관	12월 1일 현재 잔액은		지난 1년간의 차입한 총금액은	
	천만	백만	천만	백만
1. 수협				
2. 농협				
3. 자치단체				
4. 은행				
5. 개인				
6. 기타				
계				

주: ① 12월 1일 현재 잔액은 빌린 기간에 상관없이 12월 1일 현재 남아있는 차입 금액을 기입한다.
② 지난 1년간 차입금액은 지난 1년간에 받은 금액에 상관없이 지난 1년간에 실제로 빌린 금액은 전부 기입한다.

사. 어획금액

지난 1년간에 총어획 금액은 (숫자로 기입)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원

주: ① 어획하여 판매되지 아니한 것(선배 부식용, 자가 가공, 자가 소비량용 포함시킨다)도 판매된 것으로 보고 계산한다.
② 해조류등 전체품으로서 판매되는 것은 전체를 판매 금액을 어획금액으로 한다.

(서식 1호)

분류기호 : 수 신 : 참 조 : 제 목 : 천해양식 시설면적 조사표 (197 년도) 발신 ④						
구 분	총 계		기 시 설		신 설	
	양식장수	양식면적 ^{m²}	양식장수	양식면적 ^{m²}	양식장수	양식면적 ^{m²}
총 계						
어 류	소 계					
	방 어					
	기 타					
감 각 류	소 계					
	대 라					
	기 타					
연 체 동 물	소 계					
	굴					
	백 합					
	반 지 락					
	꼬 락					
	홍 합					
	진 주 패					
	기 타					
해 조 류	소 계					
	김					
	미 역					
	기 타					

7202. D
1969. 12. 승인

190mm×268mm
신문용지50g/m²

(서식 2호)

분류기호 : 수 신 : 참 조 : 제 목 : 내수면양식시설면적조사표(197 년도) 발신 ④						
구 분	총 계		기 시 설		신 설	
	양식장수	양식면적 ^{m²}	양식장수	양식면적 ^{m²}	양식장수	양식면적 ^{m²}
총 계						
어 류	소 계					
	잉 어					
	붕 어					
	은 어					
	웅 어					
	가 물 치					
	미 꾸 터					
	기 타					
기 타 류	소 계					
	기 타					
	기 타					

7202. D
1969. 12. 승인

190mm×286mm
신문용지50g/m²

원양참치연승어업판매조사표 (월분)

지정통계 제 24 호 (서식 3호~2)

보고년월일 197 년 월 일

분류기호

발 신 (회사명)

수 신 : 수산청장

(대표자)

참 조 : 어정국장 (조사통계과장)

(인)

단위 : %

신 명 : 분수 197 년 월 일 출항 197 년 월 일 입항		항 해 일 수 : 조 업 일 수 : 일간		기 입 요 령							
F.A.O 테핵구 번호		어획양육량 : 판매위탁지 :		1. 본표 조업 해역만은 해양별로 해당란에 (○)표로 표시한다.							
어획양육량 :		판매위탁지 :		2. 이 조사표는 항해시마다 선별로 양육 판매량 금액, 현지경비 한국 송금액을 판명한후 작성한다.							
판매상항		어획량 (2) %		기 지 양 육 판 매 량		국 내 양 육 량		폐 기 량			
구 분	조 업 해 역	부 양	대 서 양	대 평 양	인 도 양	수 량 (3) %	금 액 (4) US \$	수 출 국 (5) %	수 량 (6) %	금 액 (7) 원	폐 기 량 = (2) - (3) - (6)
어종별 (1)											
날개다랭이	Albacore										
황다랭이	Yellowfin										
눈다랭이	Bigeye										
참다랭이	Bluefin										
인도다랭이	Southern Bluefin										
늑새치	Blue marlin										
청새치	Striped marlin										
황새치	Broad Bill										
백새치	White marlin										
돛새치	Sail fish										
가다랭이	Ship jack										
상어류	Shark										
기타	Other										
총 계											

- 기 입 요 령
1. 본표 조업 해역만은 해양별로 해당란에 (○)표로 표시한다.
 2. 이 조사표는 항해시마다 선별로 양육 판매량 금액, 현지경비 한국 송금액을 판명한후 작성한다.
 3. 이 조사표는 선박별로 항해 종료후 2개월 이내에 본사 또는 현지 주재원이 작성하여 일괄본사, 원양협회 경유 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어획 판매금액은 F.O.B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기입한다.
 5. 어획량은 해외양육량, 국내양육량, 그리고 폐기량, 전부를 포함한다.
 6. 환 산 율
 - (1) 1 L/B=0.454kg
예 : 10 L/B=10×0.454=4.54kg
 - (2) 1 S/T=2,000L/B=907kg
예 : 5 S/T=5×907=4,535kg
 - (3) 1 L/T=2,240 L/B=1,016kg
예 : 3 L /T=3×1,016=3,048kg

2 조 업 결 비

1) 현지 경비 (US\$)	2) 한국의원은행 송금액 (US\$)	3) 톤 당 단 가 (US\$)
\$	\$	\$

지정통계 제 24 호

제 목 : 어업생산고조사
실시기관 : 수 산 청

지정통계 제24호
(서식 제5호~2)

제 목 : 일반해면어업어획량조사보고 (월분) 단위 : kg

어업별	어종별	어 류															
		기타조기류 (16)	강달이 (17)	성대류 (18)	갈치 (19)	도루묵 (20)	농어 (21)	농성어 (22)	눈볼대 (23)	갯장어 (24)	붕장어 (25)	매복어류 (26)	양태 (27)	불락 (28)	양미리 (29)	송어류 (30)	
누	계																
합	계																
트	계																
세	계																
우	계																
트	계																
1수인대	계																
2수인대	계																
1수인중	계																
2수인중	계																
기	계																
선	계																
방	계																
부	계																
대	계																
소	계																
기	계																
공	계																
고	계																
삼	계																
별	계																
조	계																
명	계																
기	계																
인	계																
기	계																
지	계																
선	계																
조	계																
오	계																
기	계																
명	계																
상	계																
장	계																
기	계																
포	계																
패	계																
조	계																
기	계																
타	계																
어	계																
업	계																
정	계																
치	계																
대	계																
소	계																
향	계																
1kg당	년평균가액 (원)																

7203-3-8D

1970. 12. 28. 승인

380mm×268mm 신문용지 50g/m²

지정통계 제24호
(서식 제5호~3)

제 목 : 일반해면어업어획량조사보고 (월분) 단위 : kg

어업별	어종별	어 류															
		뱅어류 (31)	복어류 (32)	멸치류 (33)	정어리 (34)	전어 (35)	청어 (36)	고등어류 (37)	전갱어류 (38)	삼치류 (39)	꽁치 (40)	학꽁치 (41)	방어 (42)	준치 (43)	다랑어류 (44)	송어류 (45)	
누	계																
합	계																
트	계																
세	계																
우	계																
트	계																
1수인대	계																
2수인대	계																
1수인중	계																
2수인중	계																
기	계																
선	계																
방	계																
부	계																
대	계																
소	계																
기	계																
공	계																
고	계																
삼	계																
별	계																
조	계																
명	계																
기	계																
인	계																
기	계																
지	계																
선	계																
조	계																
오	계																
기	계																
명	계																
상	계																
장	계																
기	계																
포	계																
패	계																
조	계																
기	계																
타	계																
어	계																
업	계																
정	계																
치	계																
대	계																
소	계																
향	계																
1kg당	년평균가액 (원)																

7203-3-8D

1970. 12. 28. 승인

380mm×268mm 신문용지 50g/m²

82 어업생산고조사(속)

지정통계 제24호
(서식 제5호~4)

제 목 : 일반해면어업어획량조사보고 (월분) 단위 : kg

어 종 별	어 류					잡 작 류									
	정새리상어 (46)	곰 상 어 (47)	기타상어류 (48)	가오리류 (49)	기타어류 (50)	소 계 (51)	대 하 (52)	중 하 (53)	철모새우 (54)	보리새우 (55)	갯 새 우 (56)	기타새우류 (57)	꽃 계 (58)	대 계 (59)	기 타 계 (60)
누 합	계 ①														
저	트 새 우 트 물 ②														
	1수인대형기선저인망 ③														
인	2수인대형기선저인망 ④														
	1수인중형기선저인망 ⑤														
망	2수인중형기선저인망 ⑥														
	기 타 저 인 망 ⑦														
선망부	기 선 선 망 ⑧														
	기 타 선 선 망 ⑨														
망	대 형 안 강 망 ⑩														
	소 형 안 강 망 ⑪														
자	기 타 부 망 ⑫														
	고 등 어 유 망 ⑬														
망	조 삼 치 유 망 ⑭														
	조 명 기 태 자 망 ⑮														
인	기 타 자 망 ⑯														
	기 선 권 현 망 ⑰														
망	기 타 인 망 ⑱														
	기 선 인 망 ⑲														
조	오 정 어 일 본 조 ⑳														
	기 타 일 본 조 ㉑														
연	명 태 어 연 승 ㉒														
	장 어 연 승 ㉓														
승	기 타 연 승 ㉔														
	포 채 조 ㉕														
기타	조 수 기 ㉖														
	어업 ㉗														
정	대 형 정 치 망 ㉘														
	소 형 정 치 망 ㉙														
1kg당	단위평균가격 (원) ㉚														

7203-3-8D

1970. 12. 28. 승인

380mm x 268mm 실판용지 50g/m²

지정통계 제24호
(서식 제5호~5)

제 목 : 일반해면어업어획량조사보고 (월분) 단위 : kg

어 종 별	갑 자 류	연 체 동 물														
		기타갑자류 (61)	소 계 (62)	오징어류 (63)	살오징어류 (64)	문 어 (65)	쫄꼬미 (66)	전복류 (67)	소라고둥 (68)	굴 류 (69)	반지락 (70)	백합류 (71)	피조개 (72)	총 합 (73)	꼬막류 (74)	키조개 (75)
누 합	계 ①															
저	트 새 우 트 물 ②															
	1수인대형기선저인망 ③															
인	2수인대형기선저인망 ④															
	1수인중형기선저인망 ⑤															
망	2수인중형기선저인망 ⑥															
	기 타 저 인 망 ⑦															
선망부	기 선 선 망 ⑧															
	기 타 선 선 망 ⑨															
망	대 형 안 강 망 ⑩															
	소 형 안 강 망 ⑪															
자	기 타 부 망 ⑫															
	고 등 어 유 망 ⑬															
망	조 삼 치 유 망 ⑭															
	조 명 기 태 자 망 ⑮															
인	기 타 자 망 ⑯															
	기 선 권 현 망 ⑰															
망	기 타 인 망 ⑱															
	기 선 인 망 ⑲															
조	오 정 어 일 본 조 ⑳															
	기 타 일 본 조 ㉑															
연	명 태 어 연 승 ㉒															
	장 어 연 승 ㉓															
승	기 타 연 승 ㉔															
	포 채 조 ㉕															
기타	조 수 기 ㉖															
	어업 ㉗															
정	대 형 정 치 망 ㉘															
	소 형 정 치 망 ㉙															
1kg당	단위평균가격 (원) ㉚															

7203-3-8D

1970. 12. 28. 승인

380mm x 268mm 실판용지 50g/m²

지정통계 제24호
(서식 제5호~6)

제 목 : 일반해면어업어획량조사보고 (월분) 단위 : kg

이종별	연체동물 (76)	기 타 수 산 동 물			해 조 류										비 고		
		소 계 (77)	해 삼 (78)	성 계 (79)	기 수 산 동 물 (80)	소 계 (81)	다시마류 (82)	미 역 (83)	은행조류 (84)	김 (85)	달 (86)	꽃 (87)	우무가사리 (88)	기타해조류 (89)			
누 합	계 ①																
계	계 ②																
	계 ③																
트	계 ④																
	계 ⑤																
1수인대형기선지인망	계 ⑥																
	계 ⑦																
2수인대형기선지인망	계 ⑧																
	계 ⑨																
1수인중형기선지인망	계 ⑩																
	계 ⑪																
2수인중형기선지인망	계 ⑫																
	계 ⑬																
기타저인망	계 ⑭																
	계 ⑮																
기타저인망	계 ⑯																
	계 ⑰																
기타저인망	계 ⑱																
	계 ⑲																
기타저인망	계 ⑳																
	계 ㉑																
기타저인망	계 ㉒																
	계 ㉓																
기타저인망	계 ㉔																
	계 ㉕																
기타저인망	계 ㉖																
	계 ㉗																
기타저인망	계 ㉘																
	계 ㉙																
기타저인망	계 ㉚																
	계 ㉛																
기타저인망	계 ㉜																
	계 ㉝																
기타저인망	계 ㉞																
	계 ㉟																
기타저인망	계 ㊱																
	계 ㊲																
기타저인망	계 ㊳																
	계 ㊴																
기타저인망	계 ㊵																
	계 ㊶																
기타저인망	계 ㊷																
	계 ㊸																
기타저인망	계 ㊹																
	계 ㊺																
기타저인망	계 ㊻																
	계 ㊼																
기타저인망	계 ㊽																
	계 ㊾																
기타저인망	계 ㊿																
	계 ㊿																

7203-3-8D

1970. 12. 28. 승인

380mm × 268mm 신문용지 50g/m²

지정통계 제24호
(서식6호)

분류기호 :
수 신 :
참 조 : 19
제 목 : 포경어업어획고조사보고 (월 분) 발신 ㉞

구 분	당 월			누 계		
	두 수	수 량	금 액	두 수	수 량	금 액
총 계	마리	%	천원	마리	%	천원
대 형 포 경	계					
	참 고 배					
	돌 고 배					
	밍 크					
연 안 포 경	기 타 고 배					
	계					
기 타 고 배	밍 크					
	기 타 고 배					

7204-4-18D

1969. 12. 승인

190mm × 268mm 신문용지 50g/m²

지정통계 제24호
(서식 제7호)

분류기호 : 197
수 신 :
참 조 : 발 신 ㉞
제 목 : 천해양식업생산량조사보고 (월분)

구 분	수 확 량		1kg 당 년 평균가격	비 고
	당 월	누 계		
총 계	kg	kg		
어 소 계				1. 미역 천조에 있어서 번식을 목적으로 투석하는 경우 천해양식으로 조사한다
	방 어			
류 기 타				2. 마른김 1속은 생김2000g을 골의 박신중량은 각부 중량의 15%로 환산 계산한다
	소 계			
갑 소 계				3. 부산시장 도지사가 수산청장에게 보고하는 수확량 단위는 kg으로 한다
	새 우			
각 새				
	꽃			
류 기 타				
	소 계			
연 소				
	클			
배 합				
	반 지			
포				
	탄			
동				
	활			
물				
	진 주			
문				
	이			
해 소				
	계			
미				
	길			
조				
	역			
류				
	우 무 가 사 리			
기 타				
	기 타			

7202 2. 15D

1969. 12. 10. 승인

190mm × 268mm 신문용지 50g/m²

지정통계제24호
(서식제8호)

분류기호 : 197
 수신 :
 참조 : 발신
 제목 : **내수면어업어획량조사보고 (월분)**

어종별	어획량		1kg당년 평균가액	비고
	당월	누계		
총계				1. 서울특별시, 부산시, 도지사가 수산청장에게 보고하는 어획량 단위는 kg로 한다
어				
소계				
잉어				
붕어				
은어				
동어				
소가리				
병어				
가물치				
미꾸리				
뱀장어				
연어류				
송어류				
기타				
갑각류				
연체동물				

7202. 2. 15 D
1969. 12. 10 승인

190mm x 268mm 신문용지 50g/m²

지정통계제24호
(서식제9호)

분류기호 :
 수신 : 19
 참조 : 발신
 제목 : **내수면양식어업생산량조사보고**

구분	수량		생년평균가액
	당월	누계	
총계 ①			
어			
잉어 ②			
뱀장어 ③			
송어류 ④			
초어 ⑤			
금붕어 ⑥			
판마리수 ⑦			
기타 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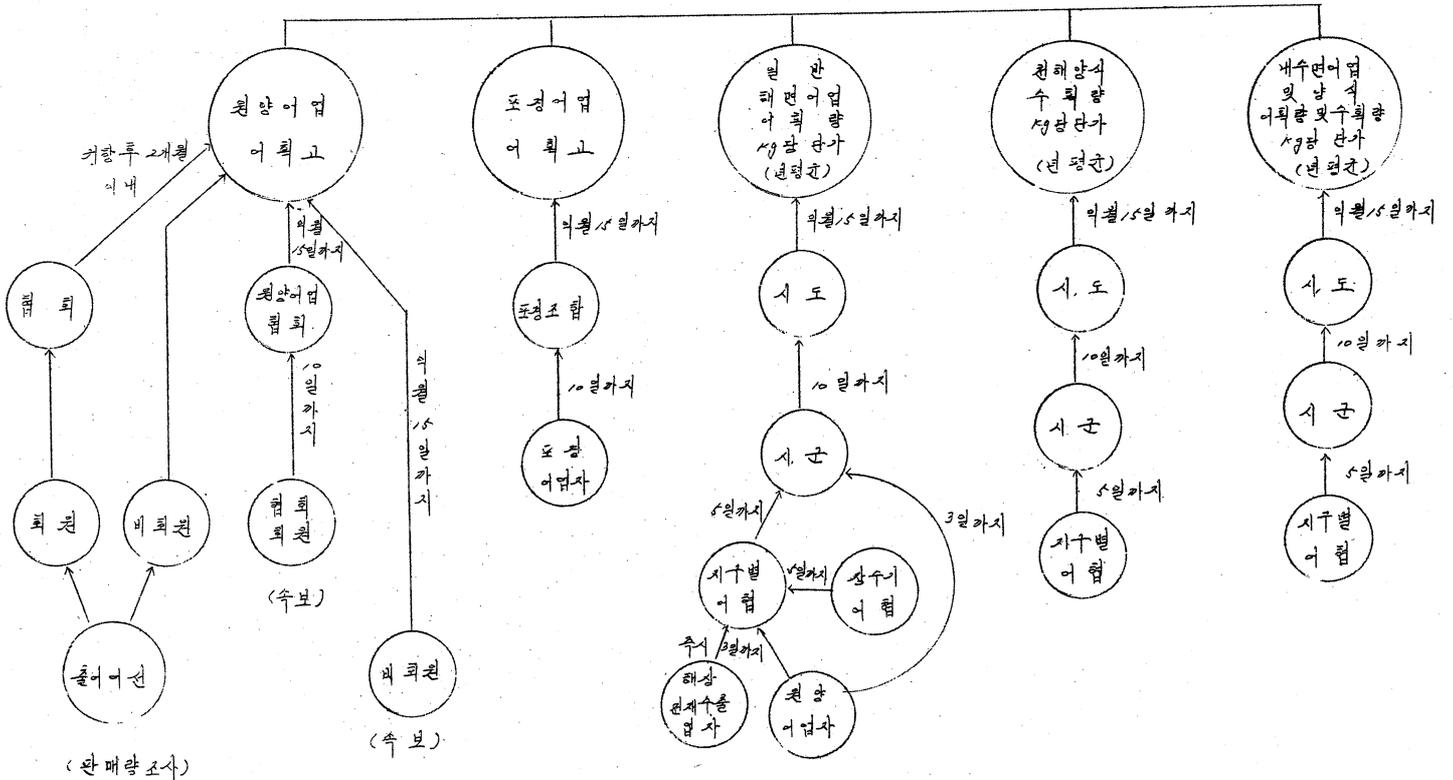
1. 서울특별시, 부산시, 도지사가 수산청장에게 보고하는 수확량 단위는 Kg으로 한다

7202-2-14D
1970. 12. 8 승인

190mm x 268mm
신문용지 50g/m²

어업생산고조사보고 체계도

수산청(경제공도) (월보)



통계원의 구성에 따라 이 조사표에 기재되는 내용은 통계목적에만 사용하며 그비밀은 절대 보장됩니다.

지정통계 제23호
72년어업기본통계조사
조사표
수산청

가 구 별 1

제1차출어업조사 조사구 번호

주 소

시 도

구 시 군

읍 면

리

번

길

호

제출구분 가출출업조사 일원번호 조사구번호	어업경영차가구	어업수입 가구	어업수입 가구
	출업수입 가구	어업수입 가구	

분류지표

시도구시군

가구형태

양식

전천업

주원수입원

가구원

전년도
조사구
번호

시도구시군

조사원명

1

1. 가구의 형태

어업경영차구	동력선을 사용했습니까?	1
어업경영차구	부동력선을 사용 했습니까?	2
어업경영차구	이상을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3
어업경영차구	(어업경영차로서 고용한이만 한 가구)	4

주: 1번은 지난 1년중에 동력선(엔진)을 사용하여 어업을 한 가구에 표시한다. 이때 2,3,4번의 영한 사항이 있어도 1번에만 표시한다.

2번은 동력선용, 전선사용하지 않고 부동력선 3번은 전선 사용만 가구
4번은 직접가이업종, 경영한 자가 한사람도 있고 어업에 고용한이 한자가 있는 가구

2. 양식에 표시한 형태

어업경영차구	간	양	식	1
어업경영차구	간	양	식	2

주: 1항 "간양식"은 어업경영차구에 표시된 가구중에서 "간양식" 양식을 운영하거나 운영 예정에 표시하고 주원력에 표시한다.

3. 어가구의 성격

(1) 점검항목 : 지난 1년간에 가구원 어업 이외에는 수입이 없다

어업이 주원 수입이었다	1
어업이 주원 수입이었다	2
어업이 주원 수입이었다	3

주: 1. 어업이외에는 "주원" 수입이 없는 가구
2. 어업수입이 다른직업 수입보다 적은가
3. 어업수입이 다른직업 수입보다 적은가

(2) 주원 수입원

가구의 수입원인	표
어업	1
농업	2
축산	3
수공업	4
서비스업	5
기타	6

주: 1. "농업"에는 양육, 양봉, 양잠을 포함시켜고, 임업은 제외한다.
2. "기타"는 임업, 산림, 광업, 생산사업, 운수업, 기타를 포함한다.
3. "서비스업"은 "학수, 의료(의사, 간호사), 교육, 문화, 오락, 기타"를 포함한다.
4. "어업"은 어업을 제외하고, 임업, 광업, 운수업, 생산사업에 포함되지 않는 다른 직업

4. 가 구 원

12월 1일 현재 가구원에 살고있는 가구원내에 대해서 해당번호 하위에 표시

① 가구원 이름	② 성 별	③ 연령 (12월 1일 현재 연령)	④ 12월 1일 현재 직업		⑤ 어업종류 (어업종류) 어업	⑥ 어업종류 (어업종류) 어업	⑦ 최종학력
			남	여			
1)	1	2	3	4	5	6	7
2)	1	2	3	4	5	6	7
3)	1	2	3	4	5	6	7
4)	1	2	3	4	5	6	7
5)	1	2	3	4	5	6	7
6)	1	2	3	4	5	6	7
7)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9)	1	2	3	4	5	6	7
10)	1	2	3	4	5	6	7

주: ① 가구원: 가구주+부양가족(일원자, 요양자, 출생자 포함하며 현재 같이 살고있는 자도 미수도 포함)
② 어업종류: 가, 출생자로 표시하여 어업에 종사 했으면 "어업"이다. 아니면 "어업이무"
③ 출생자: 출생자(일원자, 요양자, 출생자 포함하며 현재 같이 살고있는 자도 미수도 포함)
나. 어업에 종사한 일수가 타산에 종사한 일수보다 많으면 "어업이무"
다. 아니면 "어업이무"

5. 어업경영차구에 한해서 조사

(1) 72년 12월 1일 현재 사용하는 어선은? 가. 무등록선

선명	분수	선종	선원	선명

(2) 지난 1년 동안 변동된 어선은? 가. 무등록선

구분	선명	분수
신규등록선		
해제된어선		
해제된어선		

주: 1. 건조선(일원)을 알지 못한 때는 "알지못함"이라 한다.
2. 선형은 조사원이 건조선명에 의해서 기재한다.

주: 1. 건조선(일원)을 알지 못한 때는 "알지못함"이라 한다.
2. 선형은 조사원이 건조선명에 의해서 기재한다.

상주인구 조사에 관한 인사말씀

친애하는 시민 여러분!

서울특별시에서는 금년 10월 1일을 기하여 일제히 상주인구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상주인구조사는 매년 실시하는 정기 조사로서 서울의 인구변동 추세를 정확히 파악하여 보다 밝고 새로운 도시를 건설을 위한 기초 자료를 얻는 가장 중요한 기본 통계 조사입니다.

따라서 이 조사를 통하여 서울의 건설, 문화, 보건, 교육, 행정등의 제반 시책을 수립하고 목표선정의 구체적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서울시민의 성별, 연령, 교육정도, 출생지별등을 알고져 하는 것입니다.

시민여러분께서는 이 상주인구조사에 한사람도 빠짐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조사사항에 대하여는 진실하고 정확하여야만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깊이 이해하시고 귀비율 방문하는 조사원의 질문에 사실대로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조사되는 내용은 통계 이외의 다른 목적에는 절대로 사용될 수 없으며 개인의 비밀은 누설되지 않도록 통계법에 규정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시정에 시민여러분의 끊임없는 성원과 협조를 바랍니다.

1971년 9월 일

서울특별시 장

1971. 10. 1

상주인구조사표

우리시구 우리기구

정확하게 알려주자

서울특별시

1971년 상주인구조사
지정통계 제 7 호
조사표

조사인명
성명
인

서울특별시	구	동	가	번지 호	통 반	가구번호 호	조사표매수 매출매	가		구		원	수	응	담	자	성	명		
								계	남	여										
이	름	가구의 외의 관계	성별	생년월일	학교 학	경력	도	출	생	지	부	재	자	구	부	자	구	부	자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조사표 기입 요령

가구주제서는 이조사표를 기입하시기 전에
아래사항을 읽으시고 빠짐없이 기재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 10월 1일 현재 같이 살고 있는 동거인이
3개월이 되었거나 앞으로 3개월 이상 동거
할 사람은 특히 누락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
여 주십시오.

1. 여행이나 일시 부재자.
집을 떠난지 3개월이 안되었을 경우는 점
에서 기재합니다.

2. 기숙사 하숙생
기숙사에서 통학하는 학생은 기숙사에서
조사하고 하숙하고 있는 학생은 하숙하고
있는 집에서 조사하되 지체하고 있을 경
우에는 별도의 가구로 기재합니다.

3. 병원 요양소 등의 입원환자.
입원환자가 3개월이 안되었을 경우는 점
에서 기재합니다.

4. 영입장소의 고용인.
고용주와 같이 통거하고 있는 고용인은 고
용주의 가구에 포함하여 기재합니다.

5. 부재자 상주대상자도 기재합니다.
부재자 상주대상자만?
가. 국군으로서 영내에 거주하는자.
나. 일반병은 영외 거주자라도 영내 거주
자로 조사한다.
다. 고도소수집자, 소년원보호자, 경찰서
유치인.

**6. 화력란은 만 6세(1965. 9. 30. 이후 출생자)
이상만 기입하고 6세 미만은 사선()으
로 기재 합니다.**

7. 생년월일은 만으로 기재 합니다.

8. 출생지는 호적과 관계없이 기재 합니다.

**9. 10월 1일 현재 갖는 여타의 이름이 없
을 경우에는 "미정"이라 기재 합니다.**

상주인구조사표

조사구번호 제 호
매 중 번번

(지정통계 제7호)

구 동 통 반

일련번호														총계				
가구구성명																		
성 별	연령 계 급	총 수		계														
		남	여	()	()	()	()	()	()	()	()	()	()	()	()	()	()	()
성 남	0	1970. 10. 1 이 후	남	여														
	1	1969. 10. 1 1970. 9. 30	남	여														
	2	1968. 10. 1 1969. 9. 30	남	여														
	3	1967. 10. 1 1968. 9. 30	남	여														
	4	1966. 10. 1 1967. 9. 30	남	여														
	5	1965. 10. 1 1966. 9. 30	남	여														
	6	1964. 10. 1 1965. 9. 30	남	여														
	7	1963. 10. 1 1964. 9. 30	남	여														
	8	1962. 10. 1 1963. 9. 30	남	여														
	9	1961. 10. 1 1962. 9. 30	남	여														
	10	1960. 10. 1 1961. 9. 30	남	여														
	11	1959. 10. 1 1960. 9. 30	남	여														
	12	1958. 10. 1 1959. 9. 30	남	여														
	13	1957. 10. 1 1958. 9. 30	남	여														
	14	1956. 10. 1 1957. 9. 30	남	여														
	15	1955. 10. 1 1956. 9. 30	남	여														
	16	1954. 10. 1 1955. 9. 30	남	여														
	17	1953. 10. 1 1954. 9. 30	남	여														
	18	1952. 10. 1 1953. 9. 30	남	여														
	19	1951. 10. 1 1952. 9. 30	남	여														
성 여	20	1950. 10. 1 1951. 9. 30	남	여														
	21~ 24	1946. 10. 1 1950. 9. 30	남	여														
	25~ 29	1941. 10. 1 1945. 9. 30	남	여														
	30~ 34	1936. 10. 1 1941. 9. 30	남	여														
	35~ 39	1931. 10. 1 1936. 9. 30	남	여														
	40~ 44	1926. 10. 1 1931. 9. 30	남	여														
	45~ 49	1921. 10. 1 1926. 9. 30	남	여														
	50~ 54	1916. 10. 1 1921. 9. 30	남	여														
	55~ 59	1911. 10. 1 1916. 9. 30	남	여														
	60~ 64	1906. 10. 1 1911. 9. 30	남	여														
	65~ 69	1901. 10. 1 1906. 9. 30	남	여														
	70~ 74	1896. 10. 1 1901. 9. 30	남	여														
	75~ 79	1891. 10. 1 1896. 9. 30	남	여														
	80~ 84	1886. 10. 1 1891. 9. 30	남	여														
	85~ 이상	1886. 10. 1 이 전	남	여														

상주인구조사 실시요강

1. 조 사 개 요

가. 본 조사는 인구의 변동상황을 지역적으로 조사파악하고 인구의 연령 구조, 산업별 취업실태 및 실업자를 정확히 파악하여 제반 행정시책의 기본자료를 작성함을 목적으로 매년 10월 1일 0시를 기준으로 일제히 실시하는 것이오니 시민 여러분 및 각 조사요원의 각별한 협조 있어시기 바랍니다.

나. 본 조사는 통계법 제2조 제1항의 지정통계로서 통계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기획원 고시 제19호로 지정번호 제7호의 지정통계로 고시되었으며 통계법 제3조, 제6조 및 부산시 상주인구조사 시행조례에 의하여 부산시 행정구역 전반에 걸쳐 실시하나 일반인이 자유로히 출입할 수 없는 다음 지역은 ※표에 의거 조사한다.
(상주인구조사 실시요령서 10항 “가”의 5 참조)

- 1) 국군의 주둔지 및 기타 관련시설 (기지, 요세지, 의료기관, 학교 등)
- 2) 경찰서의 유치장
- 3) 교도소, 소년원

※ 다음은 부재중인 상시 거주자 (부재자)로서 상주 개념에 불구하고 본가의 상주인으로 조사한다.

- 1) 군인으로 본가를 떠나 있는 자 (예. 영내거주자, 단신인 영외거주자)
- 2) 교도소 수감자와 소년원 보호자 및 경찰서 유치인
- 3) 공무로 해외에 거주 또는 체류중인 자 및 그 가족 (파월군인 포함)

2. 조 사 표 기 입 방 법

조사표의 각 난에 해당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로 가구주 성명은 한자로 각각 기입한다.

가. 가구 번호란

반별 가구별 조사순으로 일련번호를 쓴다.

나. 가구주 성명란

조사가구가 보통가구 일때는 사실상 생계를 주관하는 자의 성명을 기입하고 집단 가구일 때는 대표자 또는 관리자 (이들이 없을 때에는 조사원에 지정한 자)를 가구주로 하여 그 성명을 기입한다.

다. 총수, 성별 및 연령, 계급별 인구

가구주를 포함한 가구원의 총수를 남, 여 별로 먼저 파악한 후 연령별로 해당란에 각각 기입하여 총수와 일치 시킨다.

단, 부재자는 총수 “계”란에만 ()로서 의서한다.

라. 연령은 호적과 관계없이 실제로 출생한 연령별로 조사한다.

상주인구조사 집계표

(매 중 번번)

(지정통계 제7호)

구 동

직인

반 통 동		평 평 평												총 계
① 가 구 수														
②	총 수		계											
			남 여											
성	0	1970. 10. 1 이 후	남 여											
	1	1969. 10. 1 1970. 9. 30	남 여											
별	2	1968. 10. 1 1969. 9. 30	남 여											
	3	1967. 10. 1 1968. 9. 30	남 여											
년	4	1966. 10. 1 1967. 9. 30	남 여											
	5	1965. 10. 1 1966. 9. 30	남 여											
평	6	1964. 10. 1 1965. 9. 30	남 여											
	7	1963. 10. 1 1964. 9. 30	남 여											
계	8	1962. 10. 1 1963. 9. 30	남 여											
	9	1961. 10. 1 1962. 9. 30	남 여											
단	10	1960. 10. 1 1961. 9. 30	남 여											
	11	1959. 10. 1 1960. 9. 30	남 여											
인	12	1958. 10. 1 1959. 9. 30	남 여											
	13	1957. 10. 1 1958. 9. 30	남 여											
구	14	1956. 10. 1 1957. 9. 30	남 여											
	15	1955. 10. 1 1956. 9. 30	남 여											
별	16	1954. 10. 1 1955. 9. 30	남 여											
	17	1953. 10. 1 1954. 9. 30	남 여											
인	18	1952. 10. 1 1953. 9. 30	남 여											
	19	1951. 10. 1 1952. 9. 30	남 여											
구	20	1950. 10. 1 1951. 9. 30	남 여											
	21~24	1946. 10. 1 1950. 9. 30	남 여											
인	25~29	1941. 10. 1 1945. 9. 30	남 여											
	30~34	1936. 10. 1 1941. 9. 30	남 여											
구	35~39	1931. 10. 1 1936. 9. 30	남 여											
	40~44	1926. 10. 1 1931. 9. 30	남 여											
인	45~49	1921. 10. 1 1926. 9. 30	남 여											
	50~54	1916. 10. 1 1921. 9. 30	남 여											
구	55~59	1911. 10. 1 1916. 9. 30	남 여											
	60~64	1906. 10. 1 1911. 9. 30	남 여											
인	65~69	1901. 10. 1 1906. 9. 30	남 여											
	70~74	1896. 10. 1 1901. 9. 30	남 여											
구	75~79	1891. 10. 1 1896. 9. 30	남 여											
	80~84	1886. 10. 1 1891. 9. 30	남 여											
인	85~	1886. 10. 1 이 전	남 여											

비
지정통계 제21호의 1

조사대상재산의 범위

(1) 국유재산법상의 국유재산

란, 국유재산법중 아제항목은 조사대상 제외한다.

가. 법제3조 제1항 제1호 「부동산과 그 동산」 중 토지, 임야물

나. 법제3조 제1항 제4.5.6호

지상권, 지역권, 광업권,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

목적권, 지적권, 상표권, 신용신안권,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

주식과 출자도 인한 권리 및 국가에 귀속된 이차행사권과 사할권

(단, 위에 적은 권리중 조사대상 한정으로 국에 대하여 권리가 발생한 것

은 조사대상에 포함시킨다.)

다. 모래재산중 문화재(유·무형 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 등)

라. 유해재산이라도 경제적으로 건우하기 힘들고 적관화정가가 곤란한 예술품,

서적, 광물종 등

리. 국립부속유재산중 별도 정하는 「1968년 국부통계조사를 위한 정부자산 조

사 요령서」 참조) 범위부적용 재산

(2) 지방재정법상의 국유재산

란, 제의항목은 국유재산의 제외항목과 동일하다.

조사표 기입상의 일반적 유의사항

(1) 모든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로 기입한다.

(2) 해당이 없는 난에는 사선 (/) 을 긋는다.

(3) 모든 문자와 부호는 흑색 또는 청색 잉크나 풀필로 기입한다.

(4) □ 는 기입하지 아니한다.

(5) 기입을 시작하기전에 반드시 「1968년 국부통계조사를 위한 정부자산조사요령서」 를 읽는다.

정 부 자 산 조 사 표 I-A

1968년 국부통계조사를 위한

—1968년 12월 31일 현재—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표지용))

국유재산법상 1. 국유재산	지방재정법상 2. 공유재산
관리책임	
보관책임	
분임보관책임	

조사표 기입반사에서 예하 관서의 재산을 일반 기입한

경우에는 반드시 기입된 예하 관서의 명칭을 기입한다.

조사대상관사형의 직위 및 성명 _____ ①

조사표 작성자의 직위 및 성명 _____ ②

조사표 작성일년 월 일 _____ ③

조사표 총 _____ 개 첨부

한 국 은 행

계수일자	월	일	④
장리번호			
신사	월	일	⑤
신사	월	일	⑥
신사	월	일	⑦
신사	월	일	⑧
신사	월	일	⑨
신사	월	일	⑩
신사	월	일	⑪
신사	월	일	⑫
신사	월	일	⑬
신사	월	일	⑭
신사	월	일	⑮
신사	월	일	⑯
신사	월	일	⑰
신사	월	일	⑱
신사	월	일	⑲
신사	월	일	⑳
신사	월	일	㉑
신사	월	일	㉒
신사	월	일	㉓
신사	월	일	㉔
신사	월	일	㉕
신사	월	일	㉖
신사	월	일	㉗
신사	월	일	㉘
신사	월	일	㉙
신사	월	일	㉚
신사	월	일	㉛
신사	월	일	㉜
신사	월	일	㉝
신사	월	일	㉞
신사	월	일	㉟
신사	월	일	㊱
신사	월	일	㊲
신사	월	일	㊳
신사	월	일	㊴
신사	월	일	㊵
신사	월	일	㊶
신사	월	일	㊷
신사	월	일	㊸
신사	월	일	㊹
신사	월	일	㊺
신사	월	일	㊻
신사	월	일	㊼
신사	월	일	㊽
신사	월	일	㊾
신사	월	일	㊿

(비)

지정통계 제1종종의 1

통 1. 팔 리 팔 산	지 팔 팔 팔 팔 팔 팔	※
조사표 기업 관서의	조사표 기업 관서의	※
조사표 기업 관서의	조사표 기업 관서의	※
조사표 기업 관서의	조사표 기업 관서의	※

조사표 기업 관서의
조사표 기업 관서의
조사표 기업 관서의
조사표 기업 관서의

조사표 기업 관서의	조사표 기업 관서의	조사표 기업 관서의	조사표 기업 관서의
조사표 기업 관서의	조사표 기업 관서의	조사표 기업 관서의	조사표 기업 관서의
조사표 기업 관서의	조사표 기업 관서의	조사표 기업 관서의	조사표 기업 관서의
조사표 기업 관서의	조사표 기업 관서의	조사표 기업 관서의	조사표 기업 관서의

1968년 국부통계조사물 위한
—1968년 12월 31일 현재—
통 1. 팔 리 팔 산 조사 표 II
(통 1. 팔 리 팔 산)

품 목	1968년 12월 31일 현재				1968년 말 현재				비 고
	단 위	수 량	금 액	외 계 명	단 위	수 량	금 액	외 계 명	
간 기 기 계	※	1234	천원	1234	천원	1234	천원	1234	※
공 리 및 복 용 기 계	※	1234	천원	1234	천원	1234	천원	1234	※
도 록 기 계	※	1234	천원	1234	천원	1234	천원	1234	※
시 합 및 복 용 기 계	※	1234	천원	1234	천원	1234	천원	1234	※
소 하 역 운 반 기 계	※	1234	천원	1234	천원	1234	천원	1234	※
신 업 기 계	※	1234	천원	1234	천원	1234	천원	1234	※
신 업 운 기 계	※	1234	천원	1234	천원	1234	천원	1234	※
의 료 및 복 용 기 계	※	1234	천원	1234	천원	1234	천원	1234	※
의 료 기 계	※	1234	천원	1234	천원	1234	천원	1234	※
의 료 운 기 계	※	1234	천원	1234	천원	1234	천원	1234	※
의 료 운 기 기 계	※	1234	천원	1234	천원	1234	천원	1234	※
의 료 운 기 기 기 계	※	1234	천원	1234	천원	1234	천원	1234	※
의 료 운 기 기 기 기 계	※	1234	천원	1234	천원	1234	천원	1234	※
의 료 운 기 기 기 기 기 계	※	1234	천원	1234	천원	1234	천원	1234	※
의 료 운 기 기 기 기 기 기 계	※	1234	천원	1234	천원	1234	천원	1234	※
의 료 운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계	※	1234	천원	1234	천원	1234	천원	1234	※

품 목	단 위	수 량	금 액	외 계 명	비 고
간 기 기 계	천원	1234	천원	1234	※
공 리 및 복 용 기 계	천원	1234	천원	1234	※
도 록 기 계	천원	1234	천원	1234	※
시 합 및 복 용 기 계	천원	1234	천원	1234	※
소 하 역 운 반 기 계	천원	1234	천원	1234	※
신 업 기 계	천원	1234	천원	1234	※
신 업 운 기 계	천원	1234	천원	1234	※
의 료 및 복 용 기 계	천원	1234	천원	1234	※
의 료 기 계	천원	1234	천원	1234	※
의 료 운 기 계	천원	1234	천원	1234	※
의 료 운 기 기 계	천원	1234	천원	1234	※
의 료 운 기 기 기 계	천원	1234	천원	1234	※
의 료 운 기 기 기 기 계	천원	1234	천원	1234	※
의 료 운 기 기 기 기 기 계	천원	1234	천원	1234	※
의 료 운 기 기 기 기 기 기 계	천원	1234	천원	1234	※

통 1. 팔 리 팔 산

기 입 요 영

1. 조사의 기준시점
1989년 12월 31일
2. 조사대상
1989년 12월 31일 현재의 모든 국가 기관 및 지방 자치단체.
3. 조사대상 예산의 범위
조사대상 예산의 소유재산 중 국유 및 법주에 속하는 재산으로서
가. 공적재산의 범위
나. 행정중의 예산에 포함되는 조사대상 예산의 범위
다. 행정중 이외의 예산에 포함되는 조사대상 예산의 범위
A. 민영화(주·부정관청제, 기업화, 민유자본 등)
B. 민영화(주·부정관청제, 기업화, 민유자본 등)
C. 민영화(주·부정관청제, 기업화, 민유자본 등)
D. 민영화(주·부정관청제, 기업화, 민유자본 등)
4. 조사대상 예산의 범위
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다.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범위와 동일하다.
5. 조사대상 예산의 범위 및 고관하고 있는 모든 재산에 대한 조사대상 예산의 범위
나.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범위
다.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범위와 동일하다.
6. 예산의 범위
조사대상 예산(20%)으로 분류한다.
7. 조사대상 예산의 일반회계 예산
가. 모든 조서는 「국가예산조치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작성한다.
나. 모든 조서는 「국가예산조치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작성한다.
다. 예산에 없는 예산을 예산()을 작성한다.
라. 모든 조서의 부호를 정확 또는 형식적으로 작성한다.
마. 모든 조서별 예산을 작성하지 않는다.

8. 항목별 기입 요령

1. 항목	2. 항목
-------	-------

- 가. 항목별 기입 요령
- ① 해당항목에 O표한다.
 - ② 불충분한 항목의 분류 및 지정명칭상의 불충분 모두 판 및 불충분한 항목으로 인정되면 O표하지 않고 불충분한 항목 지정명칭상의 불충분한 항목의 조사표를 작성한다.
 - ③ 정확한 지정명칭을 기입한다.
 - ④ 조사표 기입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채임 또는 부채시, 객 부채, 도량할 기입한다.
 - ⑤ 부채명 및 지정명칭(명칭)을 동일 조사표의 중부 기입할 수 있다.
 - ⑥ 조사표 기입인의 소재지가 해외일 경우에는 국명을 기입한다.
 - ⑦ 조사표 기입인의 소재지가 해외일 경우에는 국명, 도시, 도로명, 지번을 기입한다.
 - ⑧ 조사표 기입인의 소재지가 해외일 경우에는 국명, 도시, 도로명, 지번을 기입한다.
 - ⑨ 조사표 기입인의 소재지가 해외일 경우에는 국명, 도시, 도로명, 지번을 기입한다.
 - ⑩ 조사표 기입인의 소재지가 해외일 경우에는 국명, 도시, 도로명, 지번을 기입한다.
- 나. 부채임 또는 지정명칭의 범위
- ① 정확한 지정명칭을 기입한다.
 - ② 조사표 기입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채임 또는 부채시, 객 부채, 도량할 기입한다.
 - ③ 부채명 및 지정명칭(명칭)을 동일 조사표의 중부 기입할 수 있다.
 - ④ 조사표 기입인의 소재지가 해외일 경우에는 국명, 도시, 도로명, 지번을 기입한다.
 - ⑤ 조사표 기입인의 소재지가 해외일 경우에는 국명, 도시, 도로명, 지번을 기입한다.
 - ⑥ 조사표 기입인의 소재지가 해외일 경우에는 국명, 도시, 도로명, 지번을 기입한다.
 - ⑦ 조사표 기입인의 소재지가 해외일 경우에는 국명, 도시, 도로명, 지번을 기입한다.
 - ⑧ 조사표 기입인의 소재지가 해외일 경우에는 국명, 도시, 도로명, 지번을 기입한다.
 - ⑨ 조사표 기입인의 소재지가 해외일 경우에는 국명, 도시, 도로명, 지번을 기입한다.
 - ⑩ 조사표 기입인의 소재지가 해외일 경우에는 국명, 도시, 도로명, 지번을 기입한다.
- 다. 조사표 기입인의 범위
- ① 조사표 기입인의 범위
 - ② 조사표 기입인의 범위
 - ③ 조사표 기입인의 범위
 - ④ 조사표 기입인의 범위
 - ⑤ 조사표 기입인의 범위
 - ⑥ 조사표 기입인의 범위
 - ⑦ 조사표 기입인의 범위
 - ⑧ 조사표 기입인의 범위
 - ⑨ 조사표 기입인의 범위
 - ⑩ 조사표 기입인의 범위

9. 문의 및 연락처

1. 문의 및 연락처
가. 한국은행 조사팀(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3가 110번지 전화 ☎ 9151-09 655)
2. 한국은행 조사팀(부산광역시 동구 동대문로 3가 110번지 전화 ☎ 9151-09 655)
3. 한국은행 조사팀(대구광역시 동구 동대문로 3가 110번지 전화 ☎ 9151-09 655)
4. 한국은행 조사팀(인천광역시 동구 동대문로 3가 110번지 전화 ☎ 9151-09 655)
5. 한국은행 조사팀(대전광역시 동구 동대문로 3가 110번지 전화 ☎ 9151-09 655)
6. 한국은행 조사팀(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예산로 110번지 전화 ☎ 9151-09 655)
7. 한국은행 조사팀(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괴산로 110번지 전화 ☎ 9151-09 655)
8. 한국은행 조사팀(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천안로 110번지 전화 ☎ 9151-09 655)
9. 한국은행 조사팀(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보은로 110번지 전화 ☎ 9151-09 655)
10. 한국은행 조사팀(충청남도 연기군 연기읍 연기로 110번지 전화 ☎ 9151-09 655)
11. 한국은행 조사팀(충청남도 연기군 연기읍 연기로 110번지 전화 ☎ 9151-09 655)
12. 한국은행 조사팀(충청남도 연기군 연기읍 연기로 110번지 전화 ☎ 9151-09 655)
13. 한국은행 조사팀(충청남도 연기군 연기읍 연기로 110번지 전화 ☎ 9151-09 655)
14. 한국은행 조사팀(충청남도 연기군 연기읍 연기로 110번지 전화 ☎ 9151-09 655)
15. 한국은행 조사팀(충청남도 연기군 연기읍 연기로 110번지 전화 ☎ 9151-09 655)
16. 한국은행 조사팀(충청남도 연기군 연기읍 연기로 110번지 전화 ☎ 9151-09 655)
17. 한국은행 조사팀(충청남도 연기군 연기읍 연기로 110번지 전화 ☎ 9151-09 655)
18. 한국은행 조사팀(충청남도 연기군 연기읍 연기로 110번지 전화 ☎ 9151-09 655)
19. 한국은행 조사팀(충청남도 연기군 연기읍 연기로 110번지 전화 ☎ 9151-09 655)
20. 한국은행 조사팀(충청남도 연기군 연기읍 연기로 110번지 전화 ☎ 9151-09 655)

기 입 소 영

1. 조사의 기준시점
1998년 12월 31일
2. 조사대상
1998년 12월 31일 현재의 중용기업, 공공조합 및 영조물법인.
조사대상재산의 범위
3. 조사대상재산의 범위
조사대상채 소유재산중 국부의 영구에 속하는 재산.
4. 조사사항
조사대상채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에 대한 조사표상의 실물내용.
5. 조사방법 및 책임
조사대상채가 직접 기업하는 자(법인기업) 방법으로 기업할 모든 내용에 대하여는 조사대상채가 책임을 진다.
6. 재산의 분류
국부노출 부분에 외한다.
7. 조사표 기업상의 일반적 유의사항
가. 도는 주자는 「라미라」수자 (1, 2, 3, 4, ……)로 기업한다.
나. 도는 공역은 사자로입하고 면적 미만은 0으로 기업한다.
다. 해당이 없는 칸에는 사인(×)을 쓴다.
라. 모든 문자와 부호는 흑색 또는 청색인크나 볼펜으로 기업한다.
마. □ 칸은 기업하지 아니한다.

8. 항목별 기업요령

- 가. 법인의 명칭 ① 법인의 정식명칭을 정확히 기재한다.
나. 사업체의 명칭 ① 사업체명 1개만 기재한다.
② 사업체가 수개 있을 경우는 사업체별로 조사표를 사용한다.
다. 영 조 명 ① 사업체의 영문(영문, 제호명, 사명도 등)을 정확하게 기재한다.
- 라. A. 조사대상채의 대표자 성명 ① 대표자의 성명, 년월일로만 등록번호에 대신한다.
B. 조사표 기업자의 성명 ① 실제 조사표를 기업할자의 성명을 기입 한다한다.
C. 조사표 작성일도 연월일로 기입한다. ① 조사대상채에서 조사표의 기입을 완료한 날 월 일을 기입한다.
가. 중분류, 소분류, 구조 및 용도, 재목 ① 재목재산을 「1998년 국부통계조사를 위한 정부자산조사 요령서」 중의 국부자산 분류에 따라 분류 하기가 극히 곤란한 항목에 대하여는 재산의 내용을 상세히 기재한다.
② 국부자산분류에 따라 분류 하기가 극히 곤란한 항목에 대하여는 재산의 내용을 상세히 기재한다.
- 마. 내용 번호 ① 「1998년 국부통계조사를 위한 정부자산 조사요령서」의 내용번호를 기입한다.
- 사. 취득일자 신종·종교의 구분 ① 재산의 취득연도에 동종신식 신종 또는 종교인구를 구분하여 해당연도에 ○표하고 종교일 경우에는 신종으로 부의 취득시 적외 의 사용(경차) 연수를 기입하고 이같은 경우에는 조사표 기입자가 수정하여 기입한다.
- 아. 취득일도 ① 취득을 취득한 년도를 기입한다.
- 가. 취득시 가격 ① 재산의 취득당시의 취득비용을 세한단위로 기입한다.
취. 단위, 수량 ① 재산의 단위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단위 및 수량을 기입한다.
② 건물에 대하여는 단위(㎡) 수량을 반드시 기입한다.
- 취. 재산의 소재지 ① 재산의 실제소재지(주소)를 시도·구·시·군 단위로 기입한다.
② 신박, 차량 등 이동하는 재산은소재지, 동종채를 기입하여 미상 일 경우에는 사업체의 주소로 기입한다.
③ 재산의 소재지가 국외일 경우에는 국명을 기입한다.

- 나. 수선의 수계 ① 취득이후 부속된 수선비의 총액을 세한단위로 기입한다.
② 배수선(자본의 저축 해당분) 증축인 경우에는 수선에 자비가 별개의 동종채에서 취득한 것으로 취급하여 단(종)을 바꾸어 기입한다. (이 경우 취득년도는 수선일 연도, 취득시 가격은 입찰년도 의 수선비총액, 재산의 분류는 수선된 재산의 종류로 기입한다.)
- 가. 최근 자산해당자의 연도 및 평가액 ① 최근의 최신해당자연도 및 평가액의 금액을 세한단위로 기입한다.
취. 대역재산 ① 대역재산을 동종단체(공공 조합, 금융기관 및 영조물법인) 이외의 경우, 법인기업, 비법인기업 및 가세에 대하여는 경우 해당 대역 번호 1개소에 ○표하고 대역채(재산권, 임대차 권)의 수량에 동(영) 제호명, 사업부명(동)을 상세히 기입한다.
- 가. 비 표 ① 기업내용 미비사항을 보충하고 참고 사항을 기입한다.
- 다. 조사표 총 액중 ① 조사표 총 액수에 대한 번호를 총 액중 로도 기입한다.
9. 문의 및 연락처
이 조사에 관한 문의 및 인성사항이 있으면 아래 장소로 한다.
가. 한국은행 조사 제2부 연원분서과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3가 110번) 전화 ☎ 9191-09 ☎ 655, 755, 322)
- 나.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국부조사본부(기획과)
다. 한국은행 국제협력과 기획조사제
10. 조사표가 부속할 경우
가. 조사표가 부속되는 종류, 부속액수, 부속일자, 명칭, 주소 등을 명한다.
11. 원표조사표의 발송
조사표의 기입을 완료한
가. 기업상의 경을 검토한다.
나. 기입자, 대표자의 인을 한다.
다. 배수를 확인하여 원관 다음 한국은행 조사 제2부로 발송한다.

지역번호 조사구번호 법인번호 법인산업분류

지정통계 제2호 2

1968년 12월 31일 현재

조직원비 자본금 자산액 총업액

1968년 국부통계조사용 법인자산조사
법 인 조 사 표

실시기관: 한국산업은행

1. 법인명칭
2. 소재지
3. 설립연월일
4. 자본금
5. 설립목적
6. 결산시기
7. 최근결산시점
8. 자산평가방법
9. 자산의종류
10. 사업내용
11. 관할사업제영부

계정과목	단위	19년 실적	비고	계정과목	단위	19년 실적	비고
100 I 유동자산				221 16. 동구-기구및비용			
101 (1) 현금	과액			222 17. 전선기계정			
102 (2) 비유동자산	과액			223 18. 동시분			
103 (3) 상대출금	과액			224 19. 토지			()명
104 (4) 유가증권	과액			225 20. 기			
105 (5) 채권	과액			226 무형고형자산			
106 (6) 채권	과액			227 (2) 부형고형자산			
107 (7) 채권	과액			228 (3) 부자자산			
108 (8) 채권	과액			300 III 이연계정			
109 (9) 채권	과액			301 (1) 선금비용			
110 (10) 기타의 유동자산	과액			302 (2) 기			
111 유동부채	과액			303 이연계정			
112 내손출금	과액			304 자			
113 유동부채	과액			400 IV 유동부채			
200 III 고정자산	과액			401 (1) 지			
201 (1) 유형고형자산	과액			402 (2) 의			
202 11. 건	과액			403 (3) 단			
203 111. 주	과액			404 (4) 미			
204 112. 비	과액			405 (5) 선			
205 113. 건물부속설비	과액			406 (6) 기			
206 12. 무	과액			407 유			
207 121. 고정자산	과액			500 V 고정			
208 122. 발전설비	과액			501 (1) 사			
209 123. 수리시설	과액			502 (2) 장			
210 124. 기타시설	과액			503 (3) 판			
211 13. 기계및장치	과액			504 (4) 기			
212 14. 선	과액			505 고			
213 141. 강	과액			600 VI 과			
214 142. 부	과액			700 VII 잉			
215 143. 기타	과액			701 (1) 자			
216 15. 차량및운반구	과액			702 (2) 이			
217 151. 자동차	과액			703 임			
218 152. 차량	과액			704 부			
219 153. 항공	과액						
220 154. 기타	과액						

법인지역번호	사업계	조사구번호	법인번호	조사구번호
지역번호	지역번호	지역번호	지역번호	지역번호

지정통계 제2호의 2

비

1968년 국부통계조사용 법인자산조사 제고자산조사표

1968년 12월 31일 현재
통계법에 따라 취입은 신고의 의무가 있으며 신고된 내용은 통계작성 이외에는 절대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실시기관: 한국산업은행

사업분류	표제	형태	자본금	자산액	영업원
------	----	----	-----	-----	-----

자산분류	종류	명	단위	수량	장부가액	평가액	자산의 사용		비고
							취입	취입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1968년 국부통계조사를 위한
개인 기업 자산 조사표

중 소 기 업 은 행

비

(사업체 개황)

— 1968년 12월 31일 현재 —

지정통계 제21호의3

종업원규모	경영형태	산업분류	도 번호	사업체추출형	종 번호	지점번호	집락내사업체번호	집락추출율(A)		사업체추출율(B)	(A)×(B)	
								I	II		I※	II※
※	※											

(1) 사업체명						(2) 대표자성명							
(3) 사업체소재지	시	구	구	동	번	지	전	화	번				
(4) 본사소재지	시	구	구	동	번	지	전	화	번				
(5) 경영형태	1. 단독() 2. 공동() 3. 단체()					(6) 연간생산액(또는 수입액)	억	천	만	백	십	만	천

(7) 토 지 면 적

대 지	평
임 야 지	평
논	평
밭	평
기 타	평
합 계	평

(8) 종 업 원 수

업주 및 가족종업원 (또는 단체의 역원)	피 고 용 자			합 계
	상 시	임 시	계	
명	명	명	명	명

(9) 비 고

1. 업 종 명	1.	2.
2. 주생산품(또는 취급품목)	1.	2.

응답자성명

조사자성명 인

지점심사		본부심사	
조사계	책임자	내용검토	부호검토

조사년월일 1969년 월 일

첨부조사표수 매

일 반 적 유 의 사 항

1. 이 조사표에 기재된 조사내용은 절대로 외부에 누설하지 말것
2. 이 조사표의 조사항목을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할것
3. 수자는 반드시 1, 2, 3.....같은 아라비아 숫자로 기입할것
4. 조사표는 반드시 흑색 또는 청색 볼펜으로 기입할것
5. 금액단위는 반드시 조사표상의 금액단위에 맞추어 기입할것
6. 조사표상 ※표란은 기입치 말것
7. 조사표는 한자로 기입해도 무방함

자 산 액 합 계 표

1. 유형고정자산

자 산 명	시	가
11. 건 물 (111+112+113)		천원
12. 구 축 물 (121+122+123+124)		"
13. 기 계 및 장 치		"
14. 선 박 (141+142+143)		"
15. 차 량 및 운 반 구 (151+152+153+154)		"
16. 공 구 · 기 구 · 비 품		"
17. 전 설 가 계 정		"
18. 동 · 식 물 (181+182)		"
계		"

2. 재 고 자 산

자 산 명	시	가
21. 원 재 료		천원
22. 반 계 품 · 제 공 품		"
23. 완 계 품 · 상 품		"
24. 저 장 품		"
계		"

총 자 산 액

1. 유형고정 자산		천원
2. 재 고 자 산		"
합 계		"

소유관계 부호		1. 정 부		2. 임		3. 계		4. 가	
01. 농	업	11. 서	관	업	19. 가	타	비	금	속
02. 임	업	12. 금	수	광	20. 식	도	품	제	조
03. 수	업	13. 토	사	서	21. 음	도	품	제	조
04. 어	업	14. 임	업	22. 연	조	제	조	업	
05. 임	업	15. 가	타	비	23. 임	유	공	업	
06. 임	업	16. 가	타	비	24. 활	장	신	유	업
07. 임	업	17. 가	타	비	25. 제	목	제	조	업
08. 임	업	18. 가	타	비	26. 것	장	지	조	업
09. 임	업	19. 가	타	비	27. 것	지	유	조	업
10. 임	업	20. 가	타	비	28. 임	유	공	조	업
11. 임	업	21. 가	타	비	29. 임	유	공	조	업
12. 임	업	22. 가	타	비	30. 임	유	공	조	업
13. 임	업	23. 가	타	비	31. 임	유	공	조	업
14. 임	업	24. 가	타	비	32. 임	유	공	조	업
15. 임	업	25. 가	타	비	33. 임	유	공	조	업
16. 임	업	26. 가	타	비	34. 임	유	공	조	업
17. 임	업	27. 가	타	비	35. 임	유	공	조	업
18. 임	업	28. 가	타	비	36. 임	유	공	조	업
19. 임	업	29. 가	타	비	37. 임	유	공	조	업
20. 임	업	30. 가	타	비	38. 임	유	공	조	업

자 산 소 유 명	구조및용도 (A)	세 (B)	수량및단위	부 호 (Code)		소 유 관 계	스 유 관 계	취 득 시 기	신 고 의 구 분	취 득 가 격												
				구 분 자 산 분 류	A B					취 득 년 수	취 득 단 위	취 득 년 수	취 득 단 위	취 득 년 수	취 득 단 위							
																취 득 년 수	취 득 단 위	취 득 년 수	취 득 단 위			
141 강 선									신	코()년												
															1411	0	1	2	신	코()년		
															1411	0	1	2	신	코()년		
															1411	0	1	2	신	코()년		
															1412	0	1	2	신	코()년		
															1422	0	1	2	신	코()년		
															1422	0	1	2	신	코()년		
															1422	0	1	2	신	코()년		
															1422	0	1	2	신	코()년		
															1433	0	1	2	신	코()년		
															1433	0	1	2	신	코()년		
															1433	0	1	2	신	코()년		
															1433	0	1	2	신	코()년		
															1511	0	1	2	신	코()년		
1522	0	1	2	신	코()년																	
1522	0	1	2	신	코()년																	
1522	0	1	2	신	코()년																	
1522	0	1	2	신	코()년																	
1522	0	1	2	신	코()년																	
1522	0	1	2	신	코()년																	
1522	0	1	2	신	코()년																	
1522	0	1	2	신	코()년																	
1533	0	1	2	신	코()년																	

39. 기타 제조업	52. 수도 및 위생 시설	64. 보험업	73. 부동산업	84. 오락서비스업	99. 기타
41. 종합공사업	53. 도매업	65. 부동산업	81. 정부서비스업	85. 개인서비스업	11. 시
42. 직면전문공사업	54. 소매업	66. 운수업	82. 사회복지서비스업	90. 분류불능산업	21. 부
51. 건가	63. 운수업	72. 보관 및 창고업	83. 기타 서비스업	99. 비산업	31. 경
					32. 강
					33. 중
					34. 중
					35. 전
					36. 전
					37. 경
					38. 경
					39. 계
					40. 계

자산 소분명	구조및용도 (A)	세 (B)	수령및단위	부호(Code)			스유관계				취득시기	신묘의 구분	취득가액			신묘가액			시가			
				내용연수	국부자산분류		취득목적	유용	관대	계			여	취득시기	신묘의 구분	취득가액	신묘가액	시가	신묘의 구분	신묘가액	시가	
					A	B																취득목적
164. 기타차량 및 운반구					154		0	1	2	2			신 묘()년									
164. 기타차량 및 운반구					154		0	1	2	2			신 묘()년									
161. 공공기구 및 비품					171		0	1	2	2			신 묘()년									
161. 공공기구 및 비품					161		0	1	2	2			신 묘()년									
161. 공공기구 및 비품					161		0	1	2	2			신 묘()년									
161. 공공기구 및 비품					161		0	1	2	2			신 묘()년									
161. 공공기구 및 비품					161		0	1	2	2			신 묘()년									
161. 공공기구 및 비품					161		0	1	2	2			신 묘()년									
161. 공공기구 및 비품					161		0	1	2	2			신 묘()년									
161. 공공기구 및 비품					161		0	1	2	2			신 묘()년									
161. 공공기구 및 비품					161		0	1	2	2			신 묘()년									
161. 공공기구 및 비품					161		0	1	2	2			신 묘()년									
161. 공공기구 및 비품					161		0	1	2	2			신 묘()년									
161. 공공기구 및 비품					161		0	1	2	2			신 묘()년									
161. 공공기구 및 비품					161		0	1	2	2			신 묘()년									
161. 공공기구 및 비품					161		0	1	2	2			신 묘()년									
161. 공공기구 및 비품					161		0	1	2	2			신 묘()년									
161. 공공기구 및 비품					161		0	1	2	2			신 묘()년									
161. 공공기구 및 비품					161		0	1	2	2			신 묘()년									
161. 공공기구 및 비품					161		0	1	2	2			신 묘()년									
161. 공공기구 및 비품					161		0	1	2	2			신 묘()년									
161. 공공기구 및 비품					161		0	1	2	2			신 묘()년									

지정 통계 제 12 호

학 인	전 부	차 장	조사 원

농촌물가및임료조사보고

(197 년 월 일 조사)

조사조합명 _____

조사원정명 _____

<참고사항> ① 본 조사결과에는 통계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음.

② 본 조사는 매월 15일운 전후하여 조사하며 조사결과를 매월 20일까지 "중앙회 조사부 통계조사과" 로 발송하여야함.

농협중앙회 조사부

도 시 군 읍 면 동 리 번지

군농업협동조합

□ □ 0 2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정로 1가 75번지

농협중앙회 조사부

통계 조사과 귀 중

農村貸金및農業用料金

(19 年 月 日 現在)

農 業 勞 動 貸 金	男 (成人) 1 日		女 (成人) 1 日	
	現金支給額 (A)	給食物評價額 (B)	現金支給額 (A)	給食物評價額 (B)
其他貸金	現金支給額 (A)	給食物評價額 (B)	計 (A+B)	計 (A+B)
木				
其他 (王手)				
農 業 用 料 金	單 位	料 率	料 率	金
稻	白 米 100ℓ			
麥	大 麥 (組) 100ℓ			
	標 麥 (組) 100ℓ			
運賃	每 1 畝 (800坪) 牛馬車運賃料 (4km)			
農 牛 賃 借 料	1 日 (勞務者賃金除外)			

通信欄 (調査上の 問題點이나 또는 그地方 特有의 事情 및 其他 參考될 事項을 記入하십시오.)

지정 통계 일람 표

지정 번호	지정 통계의 명칭	조사실시기관	고시년월일	고시 번호
1	인구 센서스	경제기획원	62. 6. 1	3호
2	주택 센서스	"	"	"
3	인구동태 조사	"	"	"
4	경제활동 인구조사	"	"	"
5	농업 센서스	농림부	"	"
6	광공업 센서스	경제기획원	"	"
7	상주 인구조사	서울시·부산시 각도	62. 6. 13	19호
8	농기계조사	농림부	62.12. 8	6호
9	농산물 생산비조사	"	"	"
10	가계조사	경제기획원	"	"
11	생산동태조사	상공부	64.10.23	16호
12	농촌물가 및 임료금 조사	농협중앙회	65. 7. 22	17호
13	전국 소매물가조사	경제기획원	67. 2. 28	1호
14	상업 센서스	"	67. 5. 29	2호
15	식량작물 생산량 조사	농림부	"	"
16	농업기본 통계조사	"	68. 4. 18	25호
17	광공업 통계조사	경제기획원	"	"

지정 번호	지정 통계의 명칭	조사실시기관	고시년월일	고시 번호
18	사업체 노동실태조사	노동청	68. 4. 18	25호
19	노동이동조사	"	"	"
20	직종별 임금조사	"	"	"
21	국부통계조사	한국은행	68.11.21	51호
21호 의1	정부자산부문조사	"	"	"
21호 의2	법인자산부문조사	한국산업은행	"	"
21호 의3	개인자산부문조사	중소기업은행	"	"
21호 의4	가계자산부문조사	경제기획원	"	"
22	어업센서스	수산청	69. 4. 7	2호
23	광공업동태조사	경제기획원	70. 3. 27	1호
24	어업생산표조사	수산청	70.12. 9	5호
25	어업기본 통계조사	"	71. 7. 9	1호